

#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 第 3 卷

〈1991.4~1993.10〉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 차 례

---

---

▣ 1991年 ..... 1~77

▣ 1992年 ..... 79~273

▣ 1993年 ..... 275~351

---

---



**1991年**



## 1991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4. 2</p> <p>金相浹 대한적십자사 총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千萬離散家族 전체의 불행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폭넓게 풀어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한 赤十字會談 議題 5개항 사업을 실천에 옮길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단된 赤十字會談부터 하루 빨리 열어야 함.</li> <li>○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문제는 雙方間에 이미 장소를 비롯한 모든 것이 합의되어 있어 날짜만 다시 잡으면 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임.</li> <li>○ 平壤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5월 초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ul>
<p>1991. 4. 8</p> <p>盧在鳳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貴側은 지난 2. 18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聲明을 통해 걸프사태와 팀스피리트 軍事訓練을 구실로 삼아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제 4차 회담은 승意한 대로 개최되지 못 하였음.</li> <li>○ 오늘날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南北當局間에 시급히 착수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형편을 고려할 때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를 더 이상 뒤로 미루어 둘 수는 없는 것임.</li> <li>○ 나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5. 22~25에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4. 2</p> <p>祖國平和統一委員會 부위원장 전금철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전금철」 證人參加 希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축 방송보도를 통하여 조용술 목사를 비롯한 베를린 3자 회담에 참가한 인사들에 대한 제3차 공판에서 서울 刑事地方法院이 辯護人側의 신청에 따라 베를린 3자회담에 北側代表로 참가하였던 본인을 證人으로 採擇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li> <li>○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본인을 증인으로 정식 採擇한 만큼 나는 다음 재판때 조용술목사 등 베를린 3자회담 참가자들에 대한 필요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서울에 나가겠다는 것을 通知함.</li> <li>○ 서울에 갈때에는 10명 정도의 전문 관계일꾼들과 취재기자들이 본인과 동행하게 될 것임을 알리면서, 우리 일행에 대한 신변안전과 적절한 편의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li> </ul>
<p>1991. 4. 8</p> <p>祖國平和統一委員會 부위원장 전금철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公判參加 必要措置 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를린 3자회담 참가자들의 無罪를 證言하기 위해 이미 서울에 가기로 결심한 條件에서 여기에 必要한 措置를 즉시 취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li> <li>○ 제 4차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 베를린 3자회담 참가자들에 대한 귀축 檢察機關의 起訴內容을 판문점을 통하여 빨리 보내줄것과, 그들의 辯護를 擔當하고 있는 辯護人團을 판문점에서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li> </ul>
<p>1991. 4. 10</p> <p>祖國平和統一委員會 부위원장 안병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再開 前提條件 提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對話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남당국간 대화와 민간급 통일대화의 병행추진, 북남간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교류와 정치분야의 협력교류 병행추진,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소집, 남조선 당국의 반대화적이며 반통일적인 입장변화가 전제되어야 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4. 12 「全大協」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b>國土巡禮大行進 및 青年學生統一祝典 開催 提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5 서울에서 열릴 汎民族大會에 앞서 8. 3~8. 10 간 남북 해외 청년학생들이 참가하는 國土巡禮大行進과 8. 14 青年學生統一大祝典을 개최할 것을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에 제안함.</li> <li>○ 이를 위해 4. 16 오후 2시 판문점에서 우리측 대표가 축전준비를 위한 편지를 조선학생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며 7. 7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함.</li> </ul>
<p>1991. 4. 16 「全大協」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b>南北海外青年學生統一大祝典 開催提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는 8. 14~15 이틀 동안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및 해외동포 청년학생과 함께 平和統一方案 協議와 조국의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축전을 서울에서 열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한 實務會談을 7. 7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4. 11</p> <p>「職盟」위원장 원동구 대담편지 *방송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한 태도변화 표시로서는 i) 不可侵宣言 채택문제 ii) 유엔가 입문제에 대해 쌍방이 승의할 때까지 協議를 계속하는 문제 iii) 방북구속자 및 통일활동가들의 석방문제 iv) 민간급 통일대화의 길을 여는 문제 v) 國家保安法 撤廢問題 vi) 汎民聯 南側本部의 결성을 위한 활동허용 문제등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勞動者代表 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끊어진 北南勞動者들의 형제적 유대를 잇고 階級的 團結을 도모하며 통일조국의 내일을 함께 개척해 나가려는 염원에서 머지않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될 5·1절 기념행사에 남조선의 全勞協과 勞總 대표들을 초청함.</li> <li>○ 남조선 노동자 대표들의 平壤訪問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으로 北南勞動者 代表들의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4. 30</p> <p>金宇中 대한축구 협회 회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코리아축구단일팀 서울 評價戰 施行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축구단일팀 선발을 위한 제 1차 評價戰일정을 불과 이틀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귀축이 체육행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을 들어 쌍방간에 합의된 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li> <li>○ 남북간에 합의한 사항은 서로 지켜야하며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 단일팀 구성을 위한 평가전은 합의된 일정대로 마땅히 치러져야 함.</li> </ul> <p>*1991. 2. 26 남북쌍방은 서울 평가전을 5. 4~5. 8, 평양 평가전을 5. 8~5. 12에 개최키로 합의</p>
<p>1991. 5. 10</p> <p>金相浹 대한적십</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開催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4. 2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을 늦어</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4. 20</p> <p>「農勤盟」위원장 박수동 대남편지 *방송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農民代表 接觸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근로자동맹과 남조선의 全國農民會 總聯盟 사이에 대표접촉을 시급히 가질 것을 다시금 제의함.</li> <li>○ 쌍방 단체 대표들의 접촉에서는 民族共同의 統一方途를 摸索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과 함께 北南 農民들 사이의 협력을 실현하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임.</li> </ul>
<p>1991. 4. 30</p> <p>北韓蹴球協會 委員長 최용해,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코리아蹴球單一팀 서울評價戰 延期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는 5. 4 서울에서 제6차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대회에 출전할 코리아축구 唯一팀 선수 선발을 위한 제1차 평가전이 진행되게 되어 있음.</li> <li>○ 그런데 평가전을 며칠 앞두고 明知大 학생이 거리에서 타살당하는 참사로 하여, 제1차 평가전 장소로 되어 있는 서울의 분위기는 나날이 예측할 수 없는 不安한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음.</li> <li>○ 이미 쌍방이 합의한대로 오는 5. 8 평양에서 평가전을 먼저하고 희생된 학생의 葬禮式이 끝난 다음 서울에서 평가전을 갖도록 日程을 조절할 것을 제의함.</li> </ul>
<p>1991. 5. 6</p> <p>조선학생위원회, 「全大協」에 편지 *베를린 경유 東亞日報에 電送</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祝典 開催關聯 實務接觸 同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8. 14~15 統一大祝典을 진행하기 위해 實務的 會談을 갖자는 提議에 찬동하며 이를 위해 7. 7 10:00 우리측 대표들을 판문점에 파견할 것임.</li> <li>○ 實務會談에서는 統一大祝典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들과 함께 북남대 학생들 사이에 자주적인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들도 협의되어야 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자사 총재 對北 電通文</p>	<p>도 5월 초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귀측은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회답도 보내오지 않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진실로 人道的 問題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제11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平壤에서 개최키로한 쌍방 합의사항을 이제라도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li> <li>○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측인 귀측이 회담 날짜를 이달중 가까운 시일 안에 잡아 우리측에 알려주기 바람.</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5. 27</p> <p>外交部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 加入 申請 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기어이 유엔에 單獨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條件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유엔무대에서 全朝鮮民族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그로부터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음.</li> <l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南朝鮮 當局者들에 의하여 조성된 이러한 일시적 難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단계에서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수 없게 됐으며 해당한 절차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유엔가입 申請書를 提出할 것임.</li> <li>○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造成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게 되는 조치임.</li> </ul>
<p>1991. 5. 27</p> <p>교육문화일꾼 직 업동맹 위원장 최금순 對南便紙 *방송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 관련 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단체(全教組)는 얼마전 북과 남, 해외동포 教育자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를 소집할 것을 발기하였음.</li> <li>○ 우리는 8·15 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가 반드시 개최되어 北과 南의 教育者들의 역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함께 통일축제의 막을 올리게 될 것을 기대함.</li> <li>○ 이를 위하여 편리한 시기에 판문점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귀단체 대표들과 만날 것을 제의함.</li> </ul>

■ 1991年 5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5. 29</p> <p>朝鮮政治人·學者·言論人 討論會 對南便紙 *방송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政治人·學者·言論人 討論會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北南 政治人·學者·言論人만이라도 먼저 마주 앉아 통일 방도를 모색하고 뜻을 합치면 통일위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취지에서 7월 하순이나 8월 초에 北南 政治人·學者·言論人들의 大討論會를 진행할 것을 제의함.</li> <li>○ 토론회 장소는 평양이나 서울이 적합하다고 보나, 南의 政治人·學者·言論人들이 평양에 오기가 힘들거나 서울 개최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까운 제3국을 택하는 것도 무방할 것임.</li> <li>○ 참가 인원수는 北南에서 각각 50명 정도로 하되 관심이 있는 해외 동포들도 참가하면 좋을 것이며, 정치인·학자·언론인들의 참가비율은 각기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임.</li> </ul>
<p>1991. 6. 1</p> <p>金日成, 日本교 토통신사 사장과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유엔加入 決定은 南北單一議席 加入不能 對應措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對話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方途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의 광범한 統一力量과 보조를 맞추어 대화에 임한다면 北과 南 사이의 대화가 활발히 추진되어 성과를 거둘것임.</li> <li>○ 부시 美大統領은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데 대해서는 환성을 올렸으나 조선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콘크리트 장벽에 대해서는 그런 장벽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남조선 당국자들도 콘크리트 장벽을 위장하여 숨겨놓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분열을 그대로 지속시키자는 것임.</li> <li>○ 北과 南이 單一議席으로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가 실현될 수 없는 條件에서 그에 대응한 조치로서 유엔에 들어가기로 하였음.</li> <li>○ 朝·美 관계개선과 平和協定締結 問題·核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려 한다면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어야 함.</li> <li>○ 지금 세계 언론계는 우리에게 대한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만 떠들고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떠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6. 19</p> <p>金宇中 대한축구 협회 회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코리아축구팀 平壤解團式 관련 連絡官接觸 제의</p> <p>○ 제 6 회 世界靑少年蹴球選手權大會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축구단일팀의 평양해단식 문제와 관련하여 同 解團式에 참가할 우리측 인원의 규모, 滯留日程을 포함한 제반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91. 6. 21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쌍방 연락관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6. 20</p> <p>北韓蹴球協會 위 원장 최용해,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코리아축구팀 平壤解團式 관련 連絡官接觸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축구선수단의 結團式과 解團式 進行節次 문제는 판문점에서 있었던 北南蹴球實務委員會에서 협의·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서울에서 결단식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평양에서 해단식이 진행되면 될 것임.</li> <li>○ 코리아축구선수단의 해단식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실무적 협의를 위하여 구태여 連絡員接觸을 판문점에서 따로 가질 필요가 없으며 만약 일부 절차문제들을 구체화할 것이 있으면 포르투갈에 가 있는 코리아축구선수단에서 협의하면 될 것임.</li> </ul>
<p>1991. 6. 26</p> <p>南北高位級會談 북측 대변인 안병수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再開를 위한 立場轉換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최고당국자가 統一關係長官會議에서 統一獨逸의 吸收統一方式을 연구하고 그러한 統一에 對備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언어도단임.</li> <li>○ 吸收統一·勝共統一을 추구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도 통일을 위한 그 어떤 승제도 배제하는 극히 도발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南朝鮮 當局者들이 끝내 이 길로 나가려 한다면 그들은 고위급회담이 영영 파탄되고 통일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데 대하여 全的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임.</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勝共統一 야망을 버리고 聯邦制統一의 길에 응해야 하며, 이러한 立場轉換은 反共和國是와 國家保安法 撤廢, 방북인사 및 민주인사 석방, 팀스피리트 합동군사</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6. 27</p> <p>統一院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早速再開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4. 8 우리측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촉구한데 대해 아무런 회담조차 보내오지 않은 북한이 이제 와서 돌연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온 겨레의 여망과 기대를 저버린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南北高位級會談은 처음부터 그 개최에 조건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건도 會談中斷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임.</li> <li>○ 회담의 재개를 위한 장애물은 북한측이 말하듯 우리의 대화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대화상대방을 打倒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측의 敵對的 자세에 있음.</li> <li>○ 북한측은 더 이상 적대적 자세를 지양하고 남북의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 대화에 지체없이 呼應해 나옴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7천만 온겨레의 共同繁榮을 추구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연습 중지 등에서 표시되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고위급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통일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기 위하여 남조선당국이 자기의 反統一的, 反對話的인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함.</li> </ul>
<p>1991.6.29~30</p> <p>제 2차 汎民族大會 準備를 위한 會議 (베를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차 汎民族大會 開催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2차 汎民族大會를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2차 범민족대회</li> <li>- 기간 : 1991. 8. 12~18</li> <li>- 참가규모 : 북측과 해외에서 각각 대표 300명, 참관인 700명</li> <li>- 행사내용 : 토론회, 文化祭, 靑年學生統一大祝典, 統一大行進 등</li> <li>- 제 2차 준비회의 : 1991. 7. 18 서울</li> </ul> </li> </ul>
<p>1991. 7. 2</p> <p>朝鮮學生委員會</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學生會談參加 북측대표단 名單發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5 北南海外學生大祝祭와 관련한 7. 7 판문점 북남학생대표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6</p> <p>韓國大學教育協 議會(회장 朴煥 植 연세대총장)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教授 · 學生交流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의 念願인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후 남북한간의 文化的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남북한 학생 · 교수 · 總學長들의 상호교류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우선 남북한 대학 총학장들의 상호 초청 · 방문 및 남북한 학자들간의 人的 · 學術的 교류를 제의함.</li> <li>○ 南北韓 大學交流 방안에는 양측 대학 총학장의 相互訪問과 학술세미나 개최, 文獻交流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li> </ul>
<p>1991. 7. 7</p> <p>道德性 회복과 民族大和合을 위 한 時局宣言</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韓 元老會談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壽煥 추기경, 徐義玄 조계종 총무원장, 朴忠勳 · 劉彰順 · 金貞烈 前국무총리, 高興門 前국회부의장 등 각계원로 31명은 「道德性회복과 민족대화합을 위한 시국선언대회」를 열고, 남북원로들이 정기적으로 마주앉아 통일문제를 논의할 常設機構를 설치하자고 대북 제의</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대변인 발표</p>  <p>1991. 7. 3</p> <p>朝鮮學生委員會 위원장 최현덕 대남편지 *방송공개</p>	<p>간의 실무회담에 북측대표단을 예정대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음. 〈대표단 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首席代表 : 리금철(조선학생위원회 위원)</li> <li>· 代表 : 계봉일 · 박은숙(同위원회 위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8·15 統一大祝典 및 7.7 板門店 學生會談 實現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尹亨燮 教育部 長官)가 새세대들의 教育을 책임진 當局者로 서뿐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8·15 북남 해외청년학생 통일대 축전과 이를 위한 7.7 판문점 실무회담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필 요한 조건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li> </ul>
<p>1991. 7. 10</p> <p>「汎民族」北側本</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제2차 準備會議 대표단 명단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에서 진행되는 '91汎民族大會 제2차 準備會議에 참가하기 위하</li> </ul>

■ 1991年 7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11</p> <p>金相浹  대한직십 자사 총재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準備會談 개최 불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른바 汎民聯 南側本部 結成準備委員會는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단체로서 이러한 단체가 주관하는 남북행사는 허가할 수 없음.</li> <li>○ 남북간의 공동행사는 상대방의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집회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음.</li> <li>○ 올해 광복절을 민족의 慶祝行事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발표(7. 15)가 있을 예정이므로 발표 이후에 남북간의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1991. 7. 12</p> <p>盧泰愚 大統領, 「民主平統」제5기 출범회의 開會辭</p>	<p style="text-align: center;">光復節 慶祝行事 共同開催 및 放送交流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과 北은 한겨레로서 민족적 同質性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야 함.</li> <li>-올 8·15를 기하여 남북의 동포와 젊은이들이 광복절 경축행사 공동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板門店에서 공동경축행사 및 통일문화축전 개최</li> <li>· 白頭山에서 漢拏山까지 통일대행진 실시</li> <li>· 南北의 각계 대표들 서울·평양에서 統一大討論會 개최</li> </ul> </li> <li>-南北 學者·專門家가 民族文化遺産을 공동으로 調査·研究하고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民族文化共同委員會」구성</li> <li>○ 南과 北은 서로에게 절실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일부부터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li> <li>-나이든 이산가족부터 故鄉訪問 및 血肉相逢 주선</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11</p> <p>政務院總理 연형 목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朝鮮 當局은 오는 7. 18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91 서울법민족 대회 제2차 준비회의에 북측과 해외측 대표들이 아무런 장애없이 참가하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南北高位級會談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은 말로만 대화와 통일을 외우면서 불가침 선언과 같은 근본문 제의 토의를 회피하였을 뿐 아니라 끝끝내 T/S훈련을 강행함으로 써 회담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음.</li> <li>○ 그러나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민족의 염원을 고려하여 귀 측의 태도에는 아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귀측에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음.</li> <li>○ 이로부터 우리는 오는 8. 27부터 평양에서 제4차 北南高位級會談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li>○ 나는 귀측이 평양에서 상봉과 會談의 成果를 위하여 지난해 제3차 회담 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제4차 회담을 하기에 앞서 모든 訪北 人士들을 釋放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함.</li> </ul>
<p>1991. 7. 12</p> <p>「汎民聯」北側本 部 의장 윤기복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聯」北側代表團 7. 17 板門店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진실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지난해에 承認 한 문제를 올해에는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태 도를 버리고 우리측 대표들이 7. 18 제2차 汎民族大會를 위한 서 울준비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응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li> <li>○ 우리측 대표단이 예정대로 서울에 나가기 위하여 오는 7.17 오전 10시 판문점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재삼 통지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13</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텔레비전·라디오 방송 우선 상호교류 및 개방 · 송출방식 문제는 남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 공동전환시설 설치 운영</p> <p>○ 남북한간에 政治·軍事的 대결을 止揚하고 韓半島에 긴장의 시대를 종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함.</p> <p>—南北韓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國際社會에서 남북이 韓半島와 國際的 문제에 協調·協力</p> <p>—韓半島에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實效性 있는 불가침 선언 채택 및 休戰體制로의 轉換</p> <p>—새로운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야하며  관련 국가들도 필요한 협조와 共同努力 확인·보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開催 수락</p> <p>○ 귀측이 그동안 중단시켜 왔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조속히 개최 하자는 우리의 요청에 뒤늦게나마 호응해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8. 27 南北高位級會談 開催提議에 同意함.</p> <p>○ 실무적 사전준비를 위해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을 오는 7. 19 판문 점 평화의 집이나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p>
<p>1991. 7. 13</p> <p>「汎民聯」 남측본부 結成準備委員會 발표</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제 2차 準備會議 日字 延期</p> <p>○ 오는 7. 18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汎民族大會 제 2차 실무회담을 무기한 연기기로 결정하였으며 同 내용의 통지문을 베를린 汎民聯 海外本部 事務局에 발송했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14</p> <p>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北側準備委員長 박성철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召集을 위한 實務會談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에서는 우리의 高麗聯邦制  방안과 함께 남조선 당국이 내놓은 통일방도도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며 남조선의 다른 정당들과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 내놓는 제안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함.</li> <li>○ 이러한 견지에서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를 91. 8. 15 서울 또는 평</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15</p> <p>崔浩中 부총리겸 統一院長官 對北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行進」開催 제의</p> <p>○ 금년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統一大行進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할 것과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7. 26~30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p> <p>—期間 : 8. 15~8. 31 (16박 17일)</p> <p>—參加人員 : 남북의 각계각층과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2,000명 정도 (남북 각기 1,000명씩)</p> <p>—推進方式 : 민간행사로 추진하되 쌍방 당국의 주선과 지원·보장 하에 실시</p> <p>—行事 主要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판문점)</li> <li>· 국토종단대행진</li> <li>· 통일문제 대토론회(평양, 서울)</li> <li>· 통일기원제(백두산, 한라산)</li> <li>· 통일문화축전(판문점)</li> </ul> <p>○ 「民族大交流」선언에 따른 방북신청자중 최소한 70세 이상 高齡의 이산가족들만이라도 금년추석(9. 22)을 기하여 自由往來방법으로 고향방문을 실현할 것을 촉구함.</p>
<p>1991. 7. 16</p> <p>政府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團 명단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首席代表 : 鄭元植(국무총리)</li> <li>· 次席代表 : 金宗輝(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li> <li>· 代表 : 宋膺燮(합참본부 제1차장)</li> <li style="padding-left: 2em;">宋漢虎(통일원 차관)</li> <li style="padding-left: 2em;">姜賢旭(경제기획원 차관)</li> <li style="padding-left: 2em;">林東源(외교안보연구원 원장)</li> <li style="padding-left: 2em;">李東馥(대변인, 국무총리 특보)</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16</p> <p>祖國平和統一委員會 부위원장 윤기복 談話</p>	<p>양에서 소집하며 이를 성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 汎民族大會 開催保障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5를 계기로 일련의 共同祝祭를 民間行事로 하자는 남조선 당국의 제의가 제2차 汎民族大會를 위한 베를린준비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汎民族大會와 통일대축전에 남조선 범민련 관계단체들 이외에도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인사들을 광범위 참가시킬 것을 제의함.</li> <li>○ 8·15를 계기로한 共同祝祭의 開催問題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해외측 준비회의를 7. 25 서울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17</p> <p>統一院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北側의 「8·15 共同祝祭」 實務會談 提議 檢討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16 북한측의 「祖平統」부위원장의 담화에서는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구속자 석방 주장 등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북한측이 8·15를 기념하는 共同祝祭를 개최할 것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자고 한 점에 유의하고 이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임.</li> <li>○ 이와 함께 정부는 7. 16, 88개 南北民間交流推進機構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統一大行進」지지 결의를 한 데 대하여 이를 환영하며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19</p> <p>文益煥목사 구원 대책위원장 정준 기·林秀卿 석방 투쟁위원장 여연 구,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민간축제 행사와 준비회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측의 汎民聯과 全大協의 관계자들을 늦어도 준비회의 전까지 모두 석방하고 서울汎民族大會와 청년학생들의 統一大祝典 개최를 어김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함.</li> <li>○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제의한 이산가족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남측이 쌍방 赤十字 實務代表接觸을 제기하는데 성의있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訪北 拘束者 慰問團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5해방 46돌을 계기로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을 위문하기 위해 7. 25~8. 20 사이에 청소년학생위문단과 各界各層을 망라한 위문단을 귀측에 각각 파견하기로 결정했음.</li> </ul> <p style="margin-left: 2em;">〈靑少年學生 慰問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현덕등 20명</li> <li>· 7. 25 서울방문</li> </ul> <p style="margin-left: 2em;">〈各界各層 위문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祖國戰線」여연구 의장등 20명</li> <li>· 8. 10 서울방문</li> </ul> <p style="margin-left: 2em;">- 위문단에 각각 취재기자 10명 동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관련하여 귀측에서 7. 23까지 身邊安全擔保覺書를 판문점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20</p> <p>統一院 代辭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訪北拘束者 慰問團 파견제의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이 임의단체를 내세워 문익환, 임수경에 대한 위문 운운한 것은 우리의 法秩序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문단 파견을 同胞愛的이며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강변한데 대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li> <li>○ 북한측이 제4차 南北高位級會談의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이 실정법을 위반한 在所者를 위문하겠다는 것은 남북간에 和解와 協力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임.</li> </ul>
<p>1991. 7. 20</p> <p>金稔植 統一大行 進 행사준비위원 회 위원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行進 準備會議 개최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7. 16 88개 南北民間交流推進機構 및 사회단체 대표들의 통일대행진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지·결의하고 7. 19 「統一大行進 行事準備委員會」를 정식으로 발족하였음.</li> <li>○ 우리측 行事準備委員會는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민간교류 추진기구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各界各層을 망라한 汎國民的 조직으로 결성되었음.</li> <li>○ 오는 7. 26 10:00 板門店 평화의집에서 준비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며, 준비회의 대표단은 남북 쌍방 각기 당국대표와 민간대표 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함.</li> <li>○ 준비회의에 참석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首席代表 : 한양수(민족통일중앙협의회 사무총장)</li> <li>· 代表 : 조동영(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정석홍(통일원 자문위원), 김금래(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최장훈(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박석균(통일대행진행사준비위원회 대변인), 서영교(동 준비위원회 기획부장)</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20</p> <p>「汎民聯」北側本部 의장 윤기복 對南電通文</p>	<p>통하여 우리측에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交通과 宿食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p> <p style="text-align: center;">汎民族大會 準備會議 代表團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5를 계기로 汎民族大會와 靑年學生統一大祝典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7. 24 10:00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통보함.</li> <li>○ 우리 대표단이 서울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줄 것과 동시에 범민족대회 남측 관계자들과 貴當局代表들이 판문점에서 우리 대표단을 마중해 줄 것을 바랍.</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23</p> <p>張忠植 南北體育會談 수석대표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南北體育會談 개최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달로 다가온 중국오픈탁구대회와 IOC위원장배 탁구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가 當面課題로 제기되고 있음.</li> <li>○ 지난 2. 12 제4차 회담이래 탁구와 축구단일팀 참가로 말미암아 지연되어온 제 5차 체육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야 하겠음.</li> <li>○ 그간 남북체육회담에서 토의되어온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대회 등 주요 國際競技大會 南北單一팀 구성 참가문제와 統一蹴球大會 등 南北體育交流·協力問題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 제5차 회담을 8. 6,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1991. 7. 23</p> <p>金昶植 統一大行進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8·15 慶祝 共同行事 「準備會議」 호응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은 「祖平統」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측 제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준비회의 개최에 不當한 條件들을 제의하였음.</li> <li>○ 귀측은 임의로 정한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하겠다고 했을뿐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실현될 수도 없는 조건들을 내걸기까지 하였으며 우리측의 各界各層단체들로 구</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22</p> <p>祖國平和統一委員會 代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行進 拒否, 汎民族大會 開催保障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7. 20 우리의 제의에 대해선 외면하고 統一大行進 開催問題를 논의하기 위한 준비회의 대표명단을 공개하면서 汎民聯 南側本部 結成準備委員會와 全大協대표들을 여기에서 완전히 배제 하였음.</li> <li>○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우리의 제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온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8·15범민족대회와 靑年學生統一大祝典을 무산시켜 버리기 위한 불순한 기도에서 나온 고의적인 방해책동임.</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統一大行進 제안이라는 것이 서울 범민족대회와 靑年學生統一大祝典을 파탄시키기 위한 謀略脚本임을 시인하고, 이미 준비되고 있는 통일잔치를 성과적으로 치르도록 보장하여야 함.</li> </ul>
<p>1991. 7. 23</p> <p>文益煥목사 구원 대책위원장 정준기·林秀卿 석방 투쟁위원장 여연구,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林秀卿 慰問團」 파견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이미 귀측에 통보한 대로 임수경학생 靑年學生위문단을 7. 25, 10:00 판문점을 거쳐 남조선에 내 보낼 것임.</li> <li>○ 민족 통일대행진을 하려는 귀측의 입장이 진실이라면 우리측 위문단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우리 위문단의 활동을 위해 모든 편의와 조건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27</p> <p>金昶植 統一大行 進 행사준비위원 회 위원장 對北 電通文</p>	<p>성된 행사준비위원회에 대하여 시비한 것은 어불성설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진심으로 8·15 慶祝 共同行事를 개최할 의사가 있다면 이 제라도 준비회의를 7. 26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측 제의에 呼應 해 올 것을 촉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8·15 慶祝 共同行事 「準備會議」 호응 재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에 아무런 회답조차 보내오지 않음으로서 7. 26 준비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li> <li>○ 귀측은 이번 행사를 民族의 大祝典으로 치르겠다고 하면서도 상대측의 特定團體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준비회의 개최에 前提條件을 붙이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li> <li>○ 나는 준비회의를 오는 7. 30, 10:00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27</p> <p>朝鮮學生委員會 위원장 최현덕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訪北拘束者 慰問團」재차 파견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청소년위문단은 지난 7. 25 임수경 학생, 문익환 목사를 찾아가 위문하려 했으나 귀측은 이날 당치않은 구실을 들어 끝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li> <li>○ 귀측은 우리 청소년학생위문단이 7.31, 10:00 판문점을 통과하여 임수경 학생과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인사들을 위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li> </ul>
<p>1991. 7. 29</p> <p>社會科學院 철학 연구소 소장 김 창원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민족 哲學者大會 招請 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귀측(한민족 철학자대회 준비위원회)이 「主體思想과 시대의 변화」라는 제4분과를 특별히 마련하고 여기에서 우리 학자들이 主題發表를 하도록 한데 대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10명의 학자들이 討論會에 참가하게 될 것임을 알림.</li> <li>○ 아울러 이번 哲學者大會의 성격과 의의로 보나 온 민족의 기대에 비추어 보나 대회 명칭은 「汎民族 哲學者大會」로 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귀측의 입장을 시급히 알려줄 것을 희망함.</li> </ul>
<p>1991. 7. 30</p> <p>外交部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非核地帶化 共同宣言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과 南이 조선반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共同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함.</li> <li>-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드는 문제와 관련한 모든 法律的·實踐的 문제들을 협의하고 늦어도 1992년말 전에 法的效力을 가지는 共同宣言 채택</li> </ul>

■ 1991年 7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7. 31</p> <p>南北體育會談 북측대표단장 김형진 對南電通文</p>	<p>—공동선언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이 核武器의 시험과 생산, 소유를 금지하는 문제</li> <li>· 조선반도 非核地帶의 역내에서 핵무기의 배비, 통과와 관련 군사연습을 금지하는 문제</li> <li>· 북과 남에 대한 非核狀態를 검증하는 문제 등</li> </ul> <p>○ 美國과 朝鮮半島 주변의 핵무기 소유국들인 소련과 중국은 조선반도가 비핵지대로 합의, 선포되는 대로 그 지위를 법적으로 담보함.</p> <p>○ 아시아의 非核國家들은 조선반도가 비핵지대로 되는 것을 지지하고 그 지위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는 조선반도에 非核地帶를 창설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임의의 시각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南北體育會談 開催日字 修正提議</p> <p>○ 民族的 團合과 統一에 이바지하는 회담으로 되고 좋은 결실을 마련하자면 남조선에서 시급히 統一民族勢力을 탄압하는 反統一行爲가 중지되고 우리 회담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제5차 北南體育會談을 8·15 汎民族大會 이후인 8.17 10:00 판문점 統一閣 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p>
<p>1991. 7. 31</p> <p>교육문화일꾼 직업동맹 위원장 최금순 대남편지 *방송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教育者大會 豫備會談 開催 提議</p> <p>○ 남조선 당국의 거듭되는 방해로 8·15 「汎民族統一教育者大會」를 개최하기 위한 북남대표들의 실무접촉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p> <p>○ 우리 북남 교육자들이 서로 마주 앉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낼 수 없으며 겨레 앞에 다진 숭고한 統一意志를 실현하기위해 貴 단체(全教組)가 발기한 汎民族 統一教育者大會를 기어이 성사시켜야 할 것임.</p> <p>○ 이러한 건지에서 우리는 汎民族 統一教育者大會 개최를 위한 豫備會談을 오는 8월 초순에 가질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며 豫備會談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귀측이 정하는 대로 따를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8. 1</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 준비관련 實務代表接觸 명단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5부터 개최되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대표 : 宋漢虎(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林東源(同 대표)</li> </ul>
<p>1991. 8. 1</p> <p>外務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間 核·軍事問題 論議 用意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벽한 핵사찰에 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 핵확산방지 문제를 포함한 군사 및 제반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임.</li> </ul>
<p>1991. 8. 2</p> <p>金昶植 統一大行 進 행사준비위원 회 위원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8·15 慶祝行事 「準備會議」 개최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8·15를 전후하여 일부 特定團體가企圖하는 偏向된 정치 집회와 통일대행진 행사를 결부시킴으로써 同族間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행동을 취해온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임.</li> <li>○ 남북간의 人的往來와 交流는 相互不信을 해소하고 민족적 유대를 잇는 지름길이며 統一大業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임.</li> <li>○ 이와같은 견지에서 南과 北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統一大行進과 같은 행사야말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는 8. 10 이전에 준비회의 席上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준비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귀측에 一任함.</li> </ul>
<p>1991. 8. 5</p> <p>제 4차 南北高位 級會談 준비관련 제 1차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4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와 함께 「不可侵 合意書」「3通 合意書」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li> <li>○ 상호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不可侵宣言」을 채택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8. 1</p> <p>文益煥목사 구원 대책위원장 정준 기·林秀卿 석방 투쟁위원장 여연 구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b>訪北拘束者 慰問團 派遣關聯 接觸提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靑少年學生慰問團의 판문점 통과를 거부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오는 8. 10에 나가게 될 우리의 各界層慰問團의 판문점 통과가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li> <li>○ 이와 관련하여 8. 7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쌍방 實務者接觸을 가질 것을 제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자접촉에는 各階層慰問團 成원인 김영남(직맹 부위원장), 청 소년학생위문단 成원인 계봉일(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을 파견</li> <li>-접촉에서는 위문단의 판문점 通過時間, 신변안전보장 문제, 交通, 宿食 등 편의보장문제 협의</li> </ul> </li> </ul>
<p>1991. 8. 2</p> <p>政務院總理 연형 목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b>實務代表接觸 名單通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北南高位級會談 준비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에 우리측 대표로 백남준·최우진 대표들이 나가게 될 것임.</li> </ul>
<p>1991. 8. 5</p> <p>제 4 차 南北高位 級會談준비 제1차 實務代表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b>主要 提議·主張 內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北南 不可侵에 關한 宣言」과 「北南 和解와 協力·交流에 關한 合意書」가 함께 채택되어야 하며, 「조선 반도 비핵지대화에 關한 공동선언」 채택문제도 협의되어야 할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8. 5</p> <p>蘇光熙 한민족 哲學者大會 회장 對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민족 哲學者大會 名稱變更 불가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민족 철학자대회」의 「한민족」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主催側의 뜻이 담겨 있음.</li> <li>○ 이미 이 大會名으로 국내외 세계 각지의 동포 철학자들에게 초청서 한과 원고 청탁이 나가 業務가 진행되고 있으니 주최측의 뜻에 맡겨 주기바람.</li> <li>○ 身邊安全保障問題는 우리 해당 기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며 同각서는 貴側人員이 판문점을 通過할 때 전달될 것임.</li> </ul>
<p>1991. 8. 10</p> <p>제 4차 南北高位 級會談 준비관련 제 2차 實務代表 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基本合意書」 「不可侵合意書」 「3通 合意書」를 제시하고 쌍방 합의서 (안)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함.</li> <li>○ 토의는 i) 쌍방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등을 비교 · 檢討하고 ii) 합의문건의 數와 名稱을 결정하며 iii) 합의서의 문안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함.</li> </ul>
<p>1991. 8. 12</p> <p>姜英勳 대한적십 자사 총재 對北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조속개최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은 大韓赤十字社가 1971. 8. 12 북한적십자회에게 「남북이산 가족찾기운동」을 제창하고 南北赤十字會談의 개최를 제의한지 20년이 되는 날임.</li> <li>○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귀 적십자회에 대하여 中斷狀態에 있는 南北赤十字會談을 하루빨리 재개하는데 조건없이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함.</li> <li>○ 1985. 12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본회담 이후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을 예정대로 평양에서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8. 10</p> <p>제4차 南北高位 級會談준비 제2차 실무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不可侵問題」를 먼저 토의할것을 제의함.</li> <li>○ 合意書 文件의 수와 명칭부터 결정한 후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雙方 總理間 회담에서는 原則的 · 方向的 · 宣言的인 합의서를 우선 채택하고, 실천적인 것은 政治分科委員會와 協力 · 交流分科委員會에서 토의함.</li> </ul>
<p>1991. 8. 12</p> <p>북한올림픽위원 회 위원장 김유 순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南北體育會談 無期延期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은 이번에 에스파니아에서 진행된 國際柔術競技에 참가한 우리 선수를 유혹하여 서울에 끌어들여 놓고 그 무슨 망명이니 뭐니하고 떠들고 있음.</li> <li>○ 북과 남이 진행하는 體育會談의 취지로 보나 唯一팀의 根本精神으로 보나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민족적 처사로, 의도적인 挑發로 된다고 인정하고 體育會談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간주함.</li> <li>○ 귀측이 진실로 우리와 體育會談을 하고 唯一팀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범행을 솔직히 사죄하고 우리 선수를 무조건 돌려 보낼 것을 촉구함.</li> <li>○ 우리의 이 응당한 요구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8. 12</p> <p>서울지역 大學新聞記者 訪北取材 관련 南北大學生 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족대회 행사, 북한대학생들의 生活相과 協동농장, 북한주민생활, 유적지 탐방, 金日成 주석 · 金日成大 總長과의 인터뷰 등을 취재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바람.</li> <li>* 참석대표 : 金琪憲(성균관대신문 편집장), 崔炳燮(前건국대학보사 편집장), 池恩京(한양대학보사 문화부장)</li> </ul>
<p>1991. 8. 13</p> <p>金鍾烈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차 南北體育會談 無期延期에 유감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 8. 17 개최하기로 남북간에 합의되어 있는 제 5차 南北體育會談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 회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문제를 들고나와 회담을 一方的으로 延期시키려고 하는 귀측의 태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함.</li> <li>○ 귀측이 이제라도 그릇된 주장을 버리고 체육인 본연의 순수한 자세로 돌아와 제 5차 南北體育會談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태도표시가 있기를 촉구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8. 12</p> <p>서울지역 大學新聞記者 訪北取材 관련 남북대학생 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할 때까지 8. 17로 예정된 北南體育會談을 부득이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汎民族大會 취재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취재일정은 현지에서 협의하되 취재기간은 10일, 취재인원은 30명이내로 하여주기 바람.</li> <li>*참석대표 : 최경철(김책공대), 리하길(조선학생위원회 편집부장), 강용철(김일성종합대학)</li> </ul>
<p>1991. 8. 12</p> <p>「汎民聯」北側本部 의장 윤기복 對南便紙 *방송공개</p>	<p style="text-align: center;">密入北 「全大協」代表 無事歸還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당국은 우리를 찾아온 全大協 代表들이 서울로 돌아가면 구속 처형할 것이라고 하고 있음.</li> <li>○ 우리는 서울로 돌아가는 대학생들의 신상에 그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된다면 지금 일정에 오른 北南對話의 진전과 앞으로의 북남관계 전반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함.</li> <li>○ 귀당국이 진실로 북남대화의 진전과 北南關係의 改善을 바란다면 전대협 대표들에 대한 拘束令을 즉시 철회하여야 하며 그들이 서울로 무사히 돌아갈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8. 14</p> <p>金昶植 統一大行 進 행사준비위원 회 위원장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行進 霧散 유감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우리측은 「統一大行進」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행사 準備會議 개최에 북한측이 성의있게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였음.</li> <li>○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우리측의 제의에 귀를 기울일 대신 일부 特定不法團體들을 총동하여 편향된 政治集會를 劃策하는데에 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동족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음.</li> <li>○ 우리는 비록 8·15가 지난 이후라도 북한측이 온 거래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統一問題 大討論會」와 같은 행사들이 적당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남북간 民間次元의 接觸과 交流에 격의없는 활로가 트이기를 기대함.</li> </ul>
<p>1991. 8. 16</p> <p>제 4 차 南北高位 級會談 준비관련 제 3 차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합의할 「不可侵宣言」은 7·4 共同聲明과 같이 宣言的이어서는 안되며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li> <li>○ 북측 합의서(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0개 항목을 제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新聞·라디오 및 出版物의 상호 개방과 교류</li> <li>2.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書信去來와 상봉·방문 및 재결합 추진</li> <li>3. 남북간 平和體制 구축</li> <li>4. 서울·평양간 常駐代表部 설치</li> <li>5. 상대방 체제에 대한 破壞·顛覆활동의 중지</li> <li>6. 불가침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li> <li>7. 현 휴전협정의 준수</li> <li>8. 「불가침 합의서」는 쌍방이 이미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문제</li> <li>9. 남북간의 通行·通信·通商 및 경제협력의 구체적 실천조치</li> <li>10. 通行委員會, 通信委員會, 通商 및 經濟協力委員會의 구성·운영</li> </o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8. 14</p> <p>사회과학원 철학 연구소 소장 김 창원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민족 哲學者大會 開催 延期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대회는 海內외의 광범한 철학자들이 모여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합인만큼 그에 상응하게 명칭을 「汎民族 哲學者大會」로 할 것을 다시한번 제기함.</li> <li>○ 「主體思想과 시대의 변화」에 관한 주제토론에서는 기초보고와 논문발표를 우리측이 전부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分科運營計劃을 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함.</li> <li>○ 汎民族大會에 참가하는 우리측 각계대표들의 앞길을 차단하는 귀족당국의 불법부당한 처사를 외면하고 우리가 서울대회에 나가는 것은 파쇼세력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므로 개최일시 (8. 21예정)를 연기하여 주기 바람.</li> </ul>
<p>1991. 8. 16</p> <p>제4차 南北高位 級會談준비 제3차 실무대표접촉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회담에서는 「方向的 · 原則的」 문제를 합의하고 「履行的 · 實踐的」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함.</li> <li>○ 쌍방 합의서(안)중 제목과 내용이 유사한 「不可侵宣言」과 나머지 합의서(안)들의 공통점을 묶은 또 하나의 합의서 등 2개의 문건으로 하여 문안정리에 들어갈 것을 제의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8. 20</p> <p>柳宗夏 제 7차 77그룹 亞洲地域 閣僚會議 정부대 표단 수석대표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77그룹 亞洲地域閣僚會議 대표단 派遣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7차 77그룹아주지역각료회의가 平壤에서 열리게 된것을 祝賀하며 이번 平壤閣僚會議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남북이 협력관계를 열어가는 귀중한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함.</li> <li>○ 大韓民國 代表團과 記者團이 板門店을 往來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 준비위원회측에서 주선하여 주기를 요청하며 대표단의 규모는 대표 15명과 5명 정도의 記者가 동행할 것임.</li> </ul>
<p>1991. 8. 29</p> <p>柳宗夏 제 7차 77그룹 亞洲地域 閣僚會議 정부대 표단 수석대표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政府代表團 板門店 通過 재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지난 8. 20, 77그룹 아주지역각료회의에 참가할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및 기자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왕래할 수 있도록 주선을 요청하는 電話通知文을 발송한 바 있음.</li> <li>○ 금번 平壤會議 개최기일이 가까와 옴에 따라 우리측 대표단의 회의 參加 準備日程을 고려하여 8. 31까지는 貴側의 입장을 알려주기 바람.</li> </ul>
<p>1991. 9. 18</p> <p>建國大·金日成 大 學生代表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학생회는 10. 8~15 방북하여 다음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며 방북규모는 204 명임.</li> <li>— 김일성종합대학과 자매결연</li> <li>— 古代·近代·現代文學 발생지인 철산·곽산·정주 답사와 방언 조사</li> <li>— 統一討論會, 백두산 통일기원제 등 개최</li> </ul>
<p>1991. 9. 20</p> <p>姜英勳 대한적십 자사 총재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개최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 6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을 再開하는데 호응해 나설 것을 촉구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9. 18                      金日成大·建國大                      學生代表 接觸                      (板門店 中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남측 대학생들의 방북 학술답사에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실질문제 토의는 차기접촉시 논의할 것을 요구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9. 24</p> <p>建國大·金日成大 學生代表 제 2 차 접촉 (판문점 증감위원회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訪北團 構成 : 120명 (학생 110명, 대학원생 6명, 지도교수 4명)</li> <li>○ 滯留期間 : 10. 8~15</li> <li>○ 訪問地 : 평양, 개성, 묘향산, 백두산</li> <li>○ 開催行事 : 김일성대와 자매결연, 백두산 統一祈願祭, 김일성대와 共同으로 文化·체육행사, 통일작품 창작방법 토론</li> <li>○ 김일성대 조선어학부 학술답사단 남한방문 : 11. 8~15</li> </ul>
<p>1991. 9. 24</p> <p>盧泰愚 大統領 제46차 유엔총회 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平和統一 3個 實踐方案 提示</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武力使用을 포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가야 함.</li> </ul> </li> <li>2. 軍事的 信賴構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軍備減縮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서로 軍事情報를 교환하고 機動訓練과 部隊移動을 사전에 통보하며,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常駐監視團을 상호 파견하는 등 군사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li> <li>- 核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에 조건없이 응해야 함.</li> <li>-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信賴構築 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戰力의 감축뿐만 아니라 韓半島 核問題에 대해서도 南北韓間의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li> </ul> </li> <li>3. 사람과 物資·情報의 자유로운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자유로운 通行·通信과 通商을 보장해야 함.</li> </ul> </li> </ol>
<p>1991. 9. 25</p> <p>統一院 朴相贊 交流協力局長</p>	<p style="text-align: center;">建國大 學術답사단 訪北 不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建國大·金日成大 國문학과 대표간의 합의내용은 당초 정부에서 승인한 학술교류목적과는 달리 政治性 行事 위주로 되어있어 방북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9. 24</p> <p>金日成大·建國大 학생대표 제 2차 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北南學生交流 3원칙을 제시함.</p> <p>－自主交流 : 두 대학 학생교류는 제3자의 개입과 간섭없이 자주적 으로 교류</p> <p>－統一交流 : 민족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류</p> <p>－自由交流 : 사회적, 법률적 구속없이 자유롭게 교류</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訪北團 構成 : 120명 (학생 110명, 대학원생 6명, 지도교수 4명) 滯留期間 : 10. 8~15까지(7박 8일) 訪問地 : 평양, 개성, 묘향산, 백두산 開催行事 : 김일성대와 자매결연, 백두산 통일기원제, 김일성대와 공동으로 문화·체육행사, 統一作品 創作方法 토론</p> <p>－ 김일성대 조선어학부학생 학술답사단 남측방문 : 11. 8~15</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記者會見	<p>승인할 수 없음.</p> <p>- 「제3자의 개입배제, 사회적·법률적 제한 거부」는 당국의 주선과 허가를 배제하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임.</p> <p>- 南北學生交流를 불법단체인 「汎靑學聯」의 관할하에 실시하자고 함의함으로써 學生交流의 순수성을 왜곡시키고 있음.</p> <p>- 당초 방북계획은 문학 및 방언 연구를 위한 학술답사였으나 「통일방도토론회」등으로 재조정됨으로써 정치적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9. 30</p> <p>조선학생위원장 최현덕·金日成大 학생위원장 김수 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b>建國大 學術踏査班 訪北實現 要求</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 청년학생들이 學術踏査班 교환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을 완전히 합의한 것은 우리민족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수 없음.</li> <li>○ 귀 당국이 모처럼 마련된 북남청년학생들의 自主交流, 統一交流를 협조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막아나서는 것은 부당한 태도임.</li> <li>○ 귀하(통일원장관)가 統一問題에 대한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의 訪北踏査를 예정대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무조건 취해줄 것을 기대함.</li> </ul>
<p>1991. 10. 2</p> <p>政務院總理 연형 목 제46차 유엔 총회 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b>地域政府 權限強化 聯邦制統一 협의표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급회담을 잘 진척시켜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놓아야하며 이회담이 결실을 맺게 되면 最高位級會談이 가능할 것임.</li> <li>○ 잠정적으로 聯邦共和國의 地域政府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聯邦制統一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음.</li> <li>○ 조국통일 방도에 대한 全民族的 합의를 위해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의 소집을 제의함.</li> <li>○ 불가침선언의 채택은 軍事的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군축실현을 위해서는 外國軍과의 合同軍事演習 禁止,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4년 동안 북남이 각 10만명 이하로 段階的 武力縮小, 모든 민간 군사조직·민</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0. 14</p> <p>金鍾烈 대한올림 픽위원회 위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차 南北體育會談 開催 재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5차 南北體育會談이 합의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고 8개월의 시일이 경과하도록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겨레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족의 희망을 깨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li> <li>○ 바르셀로나올림픽경기대회 南北單一팀 構成·참가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제 5차 남북체육회담 개최가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임.</li> <li>○ 제5차 南北體育會談을 오는 11. 5 板門店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ul>
<p>1991.10.22~25</p> <p>제 4차 南北高位 級 會談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和定着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休戰體制를 平和體制로 전환,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軍備減縮을 추진, 사람·물자·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구체적 實踐努力을 경주해야 함.</li> <li>○ 북측은 對南革命路線을 포기하고 핵개발중단,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것임.</li> <li>○ 남북합의서에 대한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해 기존 3개 합의서를 하나로 묶은 포괄적인 單一合意書를 제시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10.22~25</p> <p>제 4 차 南北高位 級 會談 (평양)</p>	<p>간무력 해체, 새로운 군사기술장비 도입·개발 중지, 군축의 이행 검증이 되어야 함.</p> <p>○ 미국 대통령의 단거리핵무기 제거제안을 환영하며 응당 남한으로부터 터도 핵무기 철거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실현이 평화를 위한 전환적인 대책을 마련 하는데서 가장 급선무이므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초안)을 緊急提案으로 제시함.</p> <p style="text-align: center;">朝鮮半島 非核地帶化에 관한 宣言(초안)</p> <p>제 1 조 핵무기의 시험·생산·반입·소유·사용금지 제 2 조 핵무기 배비금지, 핵무기 적재 비행기 함선의 영공·영해 통 과, 착륙·기항 금지 제 3 조 핵무기 전개, 저장 및 핵우산 제공협약 체결 금지 제 4 조 핵무기와 핵장비 동원이나 핵전쟁을 가상한 군사연습금지 제 5 조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철수 및 핵기지 철폐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제 6 조 미국 핵무기의 완전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위해 공동노력 제 7 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외적 조치강구</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和解·不可侵과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案)</p> <p style="text-align: center;">〈前 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 共同聲明의 統一 3原則 재확인</li> <li>○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족화해 방향으로 대화추진</li> <li>○ 긴장상태 완화와 交流協力を 통한 신뢰구축</li> <li>○ 통일시까지 남북관계가 暫定的 特殊關係임을 인정</li> <li>○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공동의 노력경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基本事項〉</p> <p>제 1조 상대방 체제존중, 비방중상 중지, 내부문제 불간섭</p> <p>제 2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交流實施</p> <p>제 3조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 相逢, 訪問 실시 및 再結合 推進</p> <p>제 4조 상대방에 대한 침략, 파괴, 顛覆活動 禁止, 불가침의 영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각기 관할지역</p> <p>제 5조 상호간의 의견대립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p> <p>제 6조 軍備競爭止揚,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호 군사정보 교환 및 軍人士間의 상호방문과 교류실현</li> <li>② 기동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단 초청·교환</li> <li>③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li> <li>④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li> <li>⑤ 군사력의 불균형 시정 및 군비축소 협의</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제 8조 同宣言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 설치</p> <p>제 9조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교환일부터 효력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핵무기가 남측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非核地帶化는 남측지역 핵무기의 완전철거로부터 시작되어야하며, 남측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철거가 확인되면 어느때든 국제협약에 따르는 北南 同時査察에 응할 것임.</li> <li>○ 쌍방제안중 공통적이거나 유사한 것을 합의문건으로 작성하되 「불가침문제」와 「북남 화해와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하나의 문건으로 통합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不可侵과 和解 및 協力, 交流에 관한 合意書(초안)</b></p> <p style="text-align: center;">1. 不可侵</p> <p>제 1조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 및 침략금지</p> <p>제 2조 의견상이와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p> <p>제 3조 불가침 경계선은 1953. 7. 27 군사정전협정 규정 준용</p> <p>제 4조 군비경쟁중지 및 군축실현</p> <p>제 5조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p> <p>제 6조 同선언 발효후 2개월 내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p> <p>제 7조 不可侵의 존중을 위한 대외적 조치강구</p> <p style="text-align: center;">2. 北南 和解</p> <p>제 8조 상대방의 사상, 제도 인정 존중</p> <p>제 9조 상대방의 내부문제 불간섭</p> <p>제10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 中止</p> <p>제11조 상대방에 대한 파괴 전복행위 금지</p> <p>제12조 各界人士·동포들의 자유로운 래왕 접촉 실현</p> <p>제13조 同宣言 발효후 2개월 내에 북남정치분과위 구성·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3. 北南 協力, 交流</p> <p>제14조 民族經濟의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한 경제협력, 교류 실현</p> <p>제15조 과학·기술·교육·보건·체육·보도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⑥ 현장검증과 상호 감시체제 교환운영</p> <p>⑦ 본합의서 발효후 6개월 내에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p> <p>제 7조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노력 및 평화체제 마련시까지 現정전협정 준수</p> <p>제 8조 경제, 교통, 체신, 학술, 교육, 문화, 예술, 보도, 체육, 보건, 기술, 종교, 환경보전 등 여러분야에서의 交流協力 지원 보장</p> <p>제 9조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상 및 경제협력 지원보장</p> <p>① 육로·해로·항로 개설 및 통과지점 지정, 長湍과 板門店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京義線 철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연결</p> <p>② 상대측지역 방문 주민은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준수</p> <p>③ 자기측지역 방문 주민에 대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p> <p>④ 판문점에 우편물교환소 설치 및 전기통신교류 연결·발전</p> <p>⑤ 우편·전기통신에 대한 비밀보장 및 군사적 목적 이용금지</p> <p>⑥ 우편·전기통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국제적 협약에 따라 해결</p> <p>⑦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은 품목별, 사업별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 을 얻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시행</p> <p>⑧ 상호간의 물자교역 관세면제 및 청산계정 결제원칙 적용</p> <p>⑨ 자본의 이동보장 및 자기측에 투자된 자본 보호조치 강구</p> <p>⑩ 본합의서 발효후 6개월 내에 南北通行委員會, 南北通信委員會, 南北通商 및 經濟協力委員會 구성·운영</p> <p>제10조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및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해 공 동 노력</p> <p>제11조 서울과 평양에 常駐連絡代表部 설치</p> <p>제12조 政治軍事分科委員會와 交流協力分科委員會 설치</p> <p>제13조 본합의서는 兩者, 多者間의 조약에 무영향</p> <p>제14조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가능</p> <p>제15조 발효절차를 거쳐 文本 교환일부터 효력발생</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와 경험교환, 협력</p> <p>제16조 끊어진 철도·도로 연결, 해로·항로 개설 및 채신망 연결</p> <p>제17조 인도적 분야에서 상호 협력, 교류 실현 및 이산가족·친척들의 고통해소 대책강구</p> <p>제18조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및 대외 공동진출</p> <p>제19조 同선언 발효후 2개월 내에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 구성·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4. 修正 및 發效</p> <p>제20조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보완 가능</p> <p>제21조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일부터 효력발생</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共同 發表文</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합의서 채택은 단일문건 형식</li> <li>2. 名稱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li> <li>3. 構成體系 : 서문,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li> <li>4.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합의서의 내용과 문안조정을 위한 대표접촉 개최</li> <li>5. 1991. 12. 10~13 서울에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li> </ol>
<p>1991.10.29~30</p> <p>祖國統一 祈願 南北佛教徒合同 會議(LA관음사)</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상호 교환방문을 통한 共同法會 개최, 佛教 遺蹟地 발굴 공동 참여, 공동관심사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등을 제외함.</li> <li>* 參加者 : 서의현(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전운덕(同 부회장), 박해운(同 부회장), 송월주(남북불교문화연구원 원장)</li> </ul>
<p>1991. 10. 30</p> <p>「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실행 위원회 對北書翰</p>	<p>서울 여성세미나 日程 등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제안한 서울여성세미나 관련 예비접촉은 관례상 민간인 차원의 접촉이 불가능하므로 동 세미나 일정등을 서신으로 알림.</li> <li>○ 세미나 개최 내용 주제 :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장소 : 서울 라마다 올림피아호텔 기간 : 1991. 11. 18~23 참가규모 : 100명 내외</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b>共同 發表文</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單一文件으로 된 合意書 採擇</li> <li>2. 名稱 : 「북남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 交流에 관한 합의서」</li> <li>3. 構成體系 : 서문, 북남화해, 북남불가침, 북남협력교류, 수정 및 발효</li> <li>4.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에서 합의서의 내용과 문안조정을 위한 대표 접촉 개최</li> <li>5. 1991. 12. 10~13 서울에서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 개최</li> </ol>
1991. 10. 28	<b>서울여성세미나 관련 豫備接觸 제의</b>
「女盟」 상무위원 여연구 對南 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들의 역할」에 관한 제2차 토론회 참가문제는 일본부인회를 통하여 초청수락 편지를 보낸바 있음.</li> <li>○ 제2차 토론회의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10. 31, 10 : 00 판문점 통일각에서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1991.10.29~30	<b>主要 提議 · 主張 內容</b>
조국통일기원 남 북불교도 합동회 의(LA 觀音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간 불교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주둔 미군·핵무기가 철수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li> <li>*참가자 : 박태호(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홍화두(동 고문), 심상련(동 서기장), 이동철(동 평양시위원회 위원장)</li> </ul>
1991. 10. 30	<b>柔道選手 이창수 送還要求</b>
북한올림픽위원 회 위원장 김유 순 對南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로셀로나 올림픽경기대회에 唯一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에 출전할 의사가 있다면 北의 柔術選手를 유인, 납치해 간데 대해 사죄하고 우리측으로 인도하여야 할 것임.</li> <li>○ 우리의 요구에 시급히 긍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北南體育會談이 조속히 순조롭게 열리기를 기대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1. 7</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接觸 受諾</p> <p>○ 高位級會談 합의서 文案調整을 위한 대표접촉 일자를 11. 11로한 북측제외에 동의하며 우리측 대표명단을 통보함. -참가대표 : 宋漢虎, 林東源, 李東馥</p>
<p>1991. 11. 8</p> <p>盧泰愚 大統領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의 非核化와 平和構築을 위한 宣言</p> <p>1. 우리는 핵에너지를 平和的 目的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p> <p>2. 우리는 핵무기의 擴散防止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國際原子力機構와 체결한 核安全措置協定을 준수하며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철저히 국제사찰을 받도록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p> <p>3.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殺傷武器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化學·生物武器의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p>
<p>1991. 11. 9</p> <p>서울 여성세미나 남북실무접촉 (관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개최 일자 : 1991. 11. 25~30</p> <p>○ 대표단 구성 : 대표 5명, 수행원·기자 10명</p> <p>○ 참관지 : 삼성전자, 용인민속촌, 이화여대</p> <p>*참석대표 : 이우정(민주당 최고위원), 이효재(여성단체연합회장), 윤정옥(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1. 1</p> <p>「女盟」상무위원 여연구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여성세미나 開催時期 延期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로서는 제2차 서울토론회 참가를 위한 준비문제로 12. 7~12 진행하여 주기를 희망함.</li> <li>○ 우리측의 대표단 구성에는 대표 6~7명 외에 3~4명의 隨員과 5~6명의 記者를 포함하여주고 在日 女性 대표로는 總聯代表 2명, 民團代表 2명, 韓統聯 代表 1명을 참가시켜 주기 바람.</li> </ul>
<p>1991. 11. 9</p> <p>서울 여성세미나 南北實務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開催日字 : 91. 11. 25~30</li> <li>○ 代表團 構成 : 대표 5명, 수행원·기자 10명</li> <li>○ 參觀地 : 삼성전자, 용인민속촌, 이화여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참석대표 : 여연구(「女盟」상무위원), 정순명(「조평통」참사), 김선옥(해외동포영접부 부부장)</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1. 11</p> <p>제 5차 南北高位 級會談 준비관련 제 1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적 조항은 반드시 포함하며, 中間題目 內容體系順으로 토의해 나가되 雙方立場의 주요 차이점을 해소한 후 문안정리에 들어감.</li> <li>○ 제 4차 본회담시 제시한 우리측 합의서안을 中間題目에 맞게 조항을 再分類하고 條文數를 15개에서 26개로 늘렸으며, 남북고위급회담 산하 協議機構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두었음.</li> <li>○ 북측은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국제사찰을 무조건 수용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전면 제거하는 등 盧泰愚 大統領의 「韓半島의 非核化 宣言」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li> </ul>
<p>1991. 11. 15</p> <p>제 5차 南北高位 級會談 준비관련 제 2차 대표접촉 (板門店평화회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언적 합의만 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의 보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불신과 대결의 관계에 묶여 있을 수 밖에 없음.</li> <li>○ 제1차 대표접촉시 쌍방 합의서(안)의 差異點중 중간제목별 분류방법과 관련하여 「南北和解」분야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근본 토대가 되는 조항들을 포함시켜야 함.</li> <li>○ 효율적인 會議運轉을 위해 쌍방이 차이점을 보완, 문제조항중심으로 내용조정과 中間題目別 조항분류를 마무리한 후 文案整理에 들어가도록 함.</li> </ul>
<p>1991. 11. 20</p> <p>제 5차 南北高位 級會談 준비관련 제 3차 대표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입장을 감안한 새로운 合意書(안)을 제시함. -서문에서 「쌍방이 각기 國際聯合 會員國으로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수락한 사실에 유의하며」를 削除하고 「나라와</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1. 11</p> <p>제 5 차 南北高位 級會談準備 관련 제1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 독수리훈련은 대규모 기습공격 훈련이며 反對話 · 反統一 · 反平和的인 것으로써 즉각 중단되어야 함</li> <li>○ 제 4 차 회담시 제시했던 합의서(안)의 序文에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위에 놓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라는 내용을 추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ul>
<p>1991. 11. 15</p> <p>제 5 차 南北高位 級會談準備 관련 제2차 대표접촉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1 차 접촉시 제시된 합의서(안)中 일부 내용을 조정한 새로운 합의서(안)을 제시함.</li> <li>- 「和解」부분에 &lt;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gt;조항(제6조)을 新設</li> <li>- 「分科委員會」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테두리안에 설치(종전안 2개월 이내 설치)</li> <li>- 軍事分科委員會 설치</li> <li>- 「불가침 존중을 위한 대외적 조치강구」조항을 삭제</li> <li>- 「협력, 교류」부분중 「철도 · 도로연결, 海路 · 航路 개설, 체신망 연결」조항(종전안 제16조)을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조 : 철도 · 도로 연결, 海路 · 航路 개설</li> <li>· 제17조 : 체신망 연결</li> </ul> </li> </ul>
<p>1991. 11. 20</p> <p>제 5 차 南北高位 級會談準備 관련 제3차 대표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li> <li>- 제 1 조 「상대방의 思想과 制度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대신에 「相對方에 존재하는 制度를 認定하고 존중한다」로 수정(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판문점 통일각)</p> <p>1991. 11. 26</p> <p>제 5 차 南北高位 級會談 준비관련 제 4 차 대표접촉 (板門店평화의집)</p> <p>1991.12.10~13</p> <p>제 5 차 南北高位 級 會談 (서울)</p>	<p>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며」를 추가</p> <p>-제1조를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로 수정 (북측은 「체제」를 「제도」로 표기해도 무방)</p> <p>-제5조(언론, 출판물의 상호개방)를 和解분야에서 交流·協力분야 제16조로 수정 분류</p> <p>-제11조(紛爭의 平和的 解決)조항에서 「當局間的」를 삭제</p> <p>-제13조 ⑤항 (기습공격능력 우선제거 및 군축추진) 중 「大量殺 傷武器를 포함한」을 「대량 살상무기와」로 修正</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2차례의 합의서안의 交換을 통해 북측의 立場과 主張을 반영한 새 로운 합의서 안을 제시함.</p> <p>-「이산가족문제 해결」조항 등 6개항 조정안 제시</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4차례 대표접촉에서 意見差異를 좁히지 못한 것은 북측이 相互體制 를 존중·인정한다고 하면서도 「當事者解決原則」을 거부하는 이중 적 태도와 원칙적·선언적 합의만을 강조,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 천적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는데 있음.</p> <p>○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과 대표접촉과정에서 제시된 북측의견을 고려 한 合意書 修正案을 제시함.</p> <p>-「常設連絡事務所 서울·평양설치」를 「판문점에 상설 연락사무처 를 설치하고, 앞으로 서울·평양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 다」로 수정</p> <p>-不可侵 境界線을 「陸上에서는 停戰協定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海上에서는 정전협정 발효 이후 쌍방이 관할해운 구역」으 로 수정</p> <p>-불가침 이행 보장조치 7개항의 세부항목을 軍事的 信賴構築, 군 비축소 現場檢證, 직통전화 설치, 군사분과위원회 구성·운영등</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판문점 통일각)	<p>측은 「체제」로 표현해도 무방)</p> <p>-제 6조 (平和體制 轉換)를 「北과 南은 停戰狀態를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한다」로 修正</p> <p>○ 남측안 제16조(TV·출판물 상호개방)는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常駐連絡代表部 설치문제와 타조약과의 관계조항은 「두개국가 인정」이 되므로 불필요함.</p>
1991. 11. 26	主要 提議 · 主張 內容
제 5차 南北高位 級會談準備 관련 제4차 대표접촉 (板門店평화의집)	<p>○ 남측안 제7조 「常設連絡事務處 設置」문제와 관련하여 판문점 자기 측 지역에 자기 연락사무소를 둘 용의가 있음.</p> <p>○ 序文 일부를 수정한 새로운 合意書 안을 제시함.</p>
1991.12.10~13	主要 提議 · 主張 內容
제 5차 南北高位 級 會談 (서울)	<p>○ 제4차 대표접촉시 제시한 합의서안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합의서 (안)을 제시함.</p> <p>-和解部門에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신설 (제6조)</p> <p>-不可侵部門 제10조 불가침 경계선 조항에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 해온 지역」을 추가 하고 「北南軍事共同委員會 設置」를 제13조에 신설</p> <p>-協力交流部門 제17조에 「신문·라디오·TV 및 출판·보도분야 협력, 교류」를 명시하고, 「北南經濟協力共同委員會」설치 조항을 제23조로 신설</p> <p>-「각계인사 자유왕래·접촉」은 交流, 協力部門 제18조로 수정</p> <p>○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를 합의서 타결후 구성될 北南軍事共同委員會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1992년 한 해 만이라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할 것과 임수경·문익환을 금년말 이전에 석방시킬 것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5개 독립조항으로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側은 核武器擴散禁止條約에 가입한 이상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여야 하며, 盧泰愚 大統領의 「韓半島의 非核化와 平和構築을 위한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li> <li>○ 전문과 5개항으로 구성된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緊急提案으로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쌍방간 핵재처리시설 폐기에 관한 합의서가 이루어지면 비핵화를 위한 示範措置로 상대방이 선정하는 자기측 지역의 군사·민간시설에 대한 同時査察 실시</li> <li>- 시범사찰 대상으로 우리측은 북한의 順天비행장과 영변의 핵시설, 북한측은 우리측의 群山비행장이나 그밖에 선정하는 군사 및 민간시설</li> </ul> </li> <li>○ 시범사찰은 1992. 1. 31 이전에 실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찰 내용과 방법은 빠른 시일 안에 協議·決定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p> <p>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여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남 북 화 해</p> <p>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문제를 제쳐놓고 우리에게 대해 일방적인 핵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며,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와 이에 기초한 북남의 同時査察이 되어야 함.</li> <li>○ 盧泰愚 大統領의 「非核化 宣言」을 일보 전진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로인해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협의의 길이 열렸으므로 제4차 회담시 제의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초안을 협의 채택할 것을 제의함.</li> </ul>
	<p>合意 事項</p> <p>北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 交流에 관한 合意書</p> <p>북과 남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北南 和解</p> <p>제 1 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제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p> <p>제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p> <p>제 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p> <p>제 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p> <p>제 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p> <p>제 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장 남북 불가침</p> <p>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p> <p>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p> <p>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p> <p>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p> <p>제 13 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제 3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제 4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조 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북남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 6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조 북과 남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북남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북남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장 北南 不可侵
	제 9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북과 남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북과 남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북과 남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북과 남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제 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장 南北 交流·協力</p> <p>제 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民族內部交流로서의 物資交流, 合作投資 등 經濟交流와 協力을 실시한다.</p> <p>제 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p>제 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p> <p>제 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p> <p>제 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p> <p>제 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p> <p>제 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p>제 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제 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제14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남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北南協力, 交流</p> <p>제15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p>제16조 북과 남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p>제17조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한다.</p> <p>제18조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p> <p>제19조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p> <p>제20조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p> <p>제21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p>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북남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제23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남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2. 17</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修正 및 發效</p> <p>제 24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 25 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 發表文</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li> <li>2. 남과 북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하였다.</li> <li>3. 남과 북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2월 18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 協議 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을 12월 23일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li> <li>○ 동 접촉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월 1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책임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제 4 장 修正 및 發效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共同 發表文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北과 南은 1991년 12월 13일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署名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각기 發效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하였다.</li> <li>2.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核武器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안에 판문점에서 代表接觸을 가지기로 하였다.</li> <li>3. 제6차 본회담은 1992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사이에 平壤에서 하기로 하였다.</li> </ol>
<p>1991. 12. 18 政務院總理 연형 묵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地帶化 協議 代表接觸 修正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비핵지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合意에 따라 첫 代表接觸을 12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提議함.</li> <li>○ 대표접촉에 따른 실무절차 문제는 관례대로 하면 될 것이므로 責任連絡員 接觸은 불필요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1. 12. 26</p> <p>核問題 협의관련 제 1 차 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은 늦어도 92. 1. 15까지 핵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발효시켜야 할 것임.</li> <li>○ 우리측의 「비핵화 공동선언」안을 수락하여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말아야 함.</li> <li>○ 92. 1. 31까지 시범사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함.</li> </ul>
<p>1991. 12. 28</p> <p>核問題 협의관련 제 2 차 代表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1 차 접촉시 북측이 제시한 案을 수용한 「非核化 共同宣言」修正案을 제시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문, 핵에너지 平和目的 利用 및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불보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등 3개항</li> </ul>
<p>1991. 12. 31</p> <p>核問題 협의관련 제 3 차 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韓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合意 · 假署名</p> <p>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核戰爭危險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平和와 安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宣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아니한다.</li> <li>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平和的 目的에만 이용한다.</li> <li>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保有하지 아니한다.</li> <li>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檢證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節次와 方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li> <li>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후 1 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構成·運營한다.</li> </o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1. 12. 26  核問題 협의관련 제1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안전협정 체결과 핵사찰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그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li> <li>○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불보유등 남측안을 적극 수용한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새로이 제시함.</li> </ul>
1991. 12. 28  核問題 협의관련 제2차 대표접촉 (板門店평화의집)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접촉에서 제시한 남측제안을 수용한 「共同宣言」修正案을 제시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문, 핵에너지 平和目的 利用,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不保有,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등 3개항</li> </ul>
1991. 12. 31  核問題 협의관련 제3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	<p style="text-align: center;">「朝鮮半島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合意 · 假署名</p> <p>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核戰爭危險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과남은 핵무기를 시험 · 제조 · 생산 · 접수 · 보유 · 저장 · 배비 · 사용을 하지 않는다.</li> <li>2. 북과 남은 핵에너지만을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li> <li>3. 북과 남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保有하지 아니한다.</li> <li>4.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檢證하기 위하여 相對側이 選定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査察을 실시한다.</li> <li>5. 북과 남은 이 共同宣言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北南核統制共同委員會를 構成 · 運營한다.</li> </o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文本을 교환한 날부터 效力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共同 發表文</b></p> <p>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세차례 進行되었다.</p> <p>쌍방대표들은 한반도의 非核化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祖國의 平和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條件과 環境을 마련하려는 공동의 사명감으로부터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文案整理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 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남과 북은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도록 한다.</li> <li>2. 남과 북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雙方總理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한다.</li> <li>3.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li> </o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6. 이 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節次를 거쳐 그 문 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 發表文</p> <p>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 일까지 진행되었다.</p> <p>쌍방대표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核戰爭의 위험을 제거하 고 祖國의 平和와 平和統一에 유리한 條件과 環境을 마련하려는 공동 의 사명감으로부터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文案整理를 끝내고 이에 假署名하였다.</p> <p>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北과 南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각기 發效에 필요한 節次를 밟아 1992년 2월 19일 제6차 北南高位級會談에서 發效되도록 한다.</li> <li>2. 北과 南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총리가 署名한 共同宣言文을 판문점에서 교환 한다.</li> <li>3. 北과 南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li> </ol>



**1992年**



## 1992年 主要 提議・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 7</p> <p>國防部 代辯人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92팀스피리트 訓練 中止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에 호응함과 동시에 최단시간내에 핵안전협정 서명, 비준과 국제핵사찰 조기수용 및 남북상호사찰에 동의해 음에 따라 남북관계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한 능동적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92 T/S 훈련을 중지키로 결정 하였음.</li> <li>○ 만약 북한이 남·북한 합의사항을 政略的으로 이용하고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T/S 훈련을 재개할 수 있으며 '93이후의 훈련문제는 검토된 바 없음.</li> <li>○ 국제핵사찰 일정은 북한과 IAEA 간에 합의되겠지만, 우리는 북한이 금년 2월 제 6차 고위급회담 개최 이전까지는 최소한 핵안전협정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강력 기대함.</li> </ul>
<p>1992. 1. 10</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化 共同宣言」 文本交換 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총리서명 문본의 교환을 위해 高位級會談 代表 1명, 隨行員 1명을 1992년 1월 14일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파견할 것이며 우리측은 林東源 代表를 파견할 것임.</li> </ul>
<p>1992. 1. 14</p> <p>南北高位級會談 대표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化 共同宣言」 文本交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 총리가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본을 상호 교환하고 1. 21 최종 교환기로 함.</li> </ul>
<p>1992. 1. 15</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3개 분과) 구성·운영 방안의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을 1. 23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 7</p> <p>外交部 대변인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核安全協定 署名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성숙된 형편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핵담보협정에 서명할 것임.</li> <li>○ 이어 가장 빠른 시일안에 법적절차를 밟아 비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는 시기에 사찰을 받을 것임.</li> </ul>
<p>1992. 1. 7</p> <p>政務院總理 연형 목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化 共同宣言」 文本交換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總理 署名 文本을 교환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4일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고위급 회담 대표 1명, 수원 1명을 派遣할 計劃임을 통지함.</li> </ul>
<p>1992. 1. 14</p> <p>南北高位級會談 代表接觸(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化 共同宣言」 文本交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 총리가 서명한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文本을 상호 교환하고 1. 21 최종 교환기로 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 21</p> <p>南北高位級會談 代表接觸(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化 共同宣言」文本 最終交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 총리가 교환서명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본을 상호 최종 교환함.</li> </ul>
<p>1992. 1. 23</p> <p>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 構成·運 營 協議 제 1차 대표접촉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하되 교류·협력분과 위는 제1분과 非經濟部門, 제2분과 經濟部門으로 구분</li> <li>-기능은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임무의 이행·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협의</li> <li>-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평양 또는 판문점, 기타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월1회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인원의 배석하에 雙方委員長이 공동진행</li> <li>-합의사항은 쌍방 총리의 서명으로 효력 발생</li> </ul> </li> <li>○ 남북 쌍방은 합의한대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비핵화공동선언 발효후 1개월 안에 발족시켜 제 6차 본회담 직후 활동이 본격화 되어야하며,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문제도 병행 토의할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 21</p> <p>南北高位級會談 대표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非核化 共同宣言」文本 最終交換</p> <p>○ 쌍방 총리가 교환서명한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본을 상호 최종 교환함.</p>
<p>1992. 1. 21</p> <p>政務院總理 연형 묵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接觸에 동의</p> <p>○ 1992. 1. 15 남측 제의에 동의하며 우리측 대표로 최우진·김영철 북남고위급회담 대표 및 수원 4명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 나갈 것임을 통지함.</p>
<p>1992. 1. 23</p> <p>南北高位級會談 분과위 구성·운영 협의 제1차 대표접촉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함.</p> <p>－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高位級會談 代表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隨員은 5~6명으로 함.</p> <p>－ 기능은 북남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하여 附屬合意書를 채택하며, 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마련함.</p> <p>－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통일각과 평화의 집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장소를 옮길 수도 있음.</p> <p>－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공개도 가능</p> <p>－ 분과위원회의 최종합의는 쌍방 高位級會談 團長이 서명하는 것으로 하며,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p> <p>○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는 제 6차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후 대표접촉을 통해 1개월 내에 구성함.</p> <p>○ 北南連絡事務所 설치·운영문제는 政治分科委員會가 구성되면 토의할 사안이며 공동위원회와 같이 3개월 이내에 구성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 29</p> <p>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 構成·運 營 協議 제 2 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질충안을 제시함.</li> <li>-合意書 形式 : 단일 합의서</li> <li>-構成 :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른 分科委員會와 동일하게 7명으로 구성토록 조정, 委員長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小委員會」로 명칭 변경</li> <li>-機能 : 단일문건일 경우 각 분과위를 포괄하는 공통기능 3개항을 명시하고 그밖에 고위급회담에서 위임된 사항 협의</li> <li>-運營 : 분과위원회는 월 1 회 개최하되, 합의에 따라 수시개최도 가능, 장소는 판문점 또는 합의하는 장소</li> <li>-本會談과의 關係 : 분과위원회에서 협의결과를 高位級會談에 보고</li> <li>-效力發生 : 합의사항은 고위급회담에서 총리 서명으로 발효하되 합의에 따라 서명, 교환하는 방법도 가능</li> </ul>
<p>1992. 2. 1</p> <p>金仁浩 經濟企劃 院 대의경제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實務接觸 修正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만강지역 개발회의 북측대표단 참가문제 협의를 위한 實務接觸日字를 2. 8로 修正 提議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 29</p> <p>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 구성·운영 협의 제2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고위급회담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합의서 修正案을 提示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分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교체시 5일전 通보</li> <li>- 會議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수시개최도 가능</li> <li>- 分과위원회 회의 운영은 쌍방 委員長이 共同으로 진행</li> </ul> </li> <li>○ 北南核統制共同委員會 구성문제는 이번 대표접촉이 分과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도록 總理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적합치 않으며 示範査察이든 全面査察이든 核統制共同委員會가 구성된 후에 협의 해결할 문제임.</li> </ul>
<p>1992. 1. 30</p> <p>조선기독교도연맹 서기장 고기준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KNCC 總會參加 관련 實務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NCC 제41차 총회에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 參加問題와 관련하여 實務問題 協議를 위해 2. 6,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1992. 1. 31</p> <p>국제기구협조총국장 한태혁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UNDP주관 서울會議 參加關聯 實務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개발계획 주관 서울에서 열리는 豆滿江開發을 위한 計劃委員會 제1차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 6, 15: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실장 對北電通文</p> <p>1992. 2. 1</p> <p>權浩景 KNCC 總務 對北電通文</p> <p>1992. 2. 7</p> <p>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 構成·運 營 協議 제 3차 대표집축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b>實務接觸 修正提議</b></p> <p>○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41차 총회에 北側 代表團 참가와 관련한 實務接觸 日字를 2. 10로 수정 제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b>「分科委 構成·運營 合意書」假署名</b></p> <p>○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 합의 한후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 제1일 회의에서 署名·發效시키기로 하고 가서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b>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b></p> <p>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 회담 테두리 안에서 南北政治分科委員會, 南北軍事分科委員會,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를 다음과 같이 構成·運營하기로 합의하였다.</p> <p>제 1조 各 分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南北高位級會談 대표로 한다.</p> <p>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 이를 통보한다.</p> <p>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수 있다.</p> <p>제 2조 各 分科委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p> <p>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p> <p>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履行對策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2. 7</p> <p>南北高位級會談 분과위 구성·운영 협의 제3차 代表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分科委 構成·運營 合意書에 假署名</p> <p>○ 北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合意書 內容에  합의,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 제1일 회의에서 서명·발효기로 하고  합의 內容에  가서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p> <p>北과 南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남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北南政治分科委員會, 北南軍事分科委員會, 北南協力, 交流分科委員會를 다음과 같이 構成·運營하기로  합의하였다.</p> <p>제 1 조 各 分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① 各 分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委員 6명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은 북남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p> <p>②  쌍방은 各 分과위원회 委員長과  委員들을  交替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p> <p>③  隨員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제 2 조 各 分科委員會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①  各 分과위원회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p> <p>②  各 分과위원회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履行對策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附屬合意書を 작성한다.</p> <p>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南北連絡事務所の設置・運営에 관한 合意書」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p> <p>제 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板門店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p> <p>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雙方 委員長이 공동으로 운영한다.</p> <p>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非公開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公開로 할 수도 있다.</p> <p>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相對側 地域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身邊安全保障,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p> <p>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각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南北高位級會談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총리가 合意文件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雙方總理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雙方 總理가 合意文件을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南北高位級會談에 報告하여야 한다.</p> <p>제 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附屬合意書를 작성한다.</p> <p>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분의 북남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北南連絡事務所의 設置·運營에 관한 合意書」는 북남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p> <p>제 3조 各 分科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각 분과위원회 會議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隨時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과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p> <p>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雙方 委員長이 공동으로 운영한다.</p> <p>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非公開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公開로 할 수도 있다.</p> <p>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내왕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담보, 편의제공과 회의기록등 실무절차는 관계대로 한다.</p> <p>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各分科委員會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4조 各 分科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北南高位級會談에 報告하여야 한다.</p> <p>제 5조 各 分科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북남고위급회담에서 雙方 總理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文件은 쌍방 총리가 署名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文本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合意文件을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北南高位級會談에 報告하여야 한다.</p> <p>제 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2. 8</p> <p>豆滿江地域 開發 會議 북측 참가 관련 實務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제 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參加人員 : 5명 미만(記者 동행 불허)          出入經路 : 판문점으로 입경, UNDP 측과 동행 제3국으로 출국          身邊安全保障覺書, 참가자 명단교환 : 1992. 2. 21, 판문점          往來節次 및 便宜提供 : 관례          滯留日程 : 1992. 2. 26~3. 2(숙소 : 서울 신라호텔)</p>
<p>1992. 2. 8</p> <p>南北高位級會談 金勇煥 책임연락 관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高位級會談 준비관련 接觸提議</p> <p>○ 접촉일시 : 1992. 2. 10          접촉장소 : 판문점 평화의 집</p>
<p>1992. 2. 10</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交替 通報</p> <p>○ 新任 : 韓甲洙(경제기획원 차관), 孔魯明(外務部 외교안보연구원장)          解任 : 宋漢虎(통일원 차관), 姜賢旭(경제기획원 차관)</p>
<p>1992. 2. 10</p> <p>KNCC · 조선기 독교도연맹 대표 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KNCC 總會 北韓側 代表團 參加合意</p> <p>○ 合意事項          - 북측대표단 구성 : 10명(목사, 신학원 교수·학생, 기록·통신요원)          신변안전보장각서·명단 교환 : 1992. 2. 13, 판문점          通過場所 : 板門店          왕래절차 및 편의제공 문제 : 관례          체류일정 : 1992. 2. 15~19(숙소 : 서울 신라호텔)</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2. 8</p> <p>豆滿江地域 開發 會議 북측 참가 관련 實務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參加人員 : 5명 미만(기자 동행 불허)</li> <li>出入經路 : 판문점으로 入京, UNDP 측과 동행 제3국으로 出國</li> <li>身邊安全保障覺書, 참가자 명단교환 : 1992. 2. 21, 판문점</li> <li>往來節次 및 편의제공 : 관례</li> <li>滯留日程 : 1992. 2. 26~3. 2 (숙소 : 서울 신라호텔)</li> </ul>
<p>1992. 2. 10</p> <p>南北高位級會談 북측 책임연락관 최봉춘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차 南北高位級會談 관련 實務接觸 수정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 준비와 관련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일자를 1992. 2. 11 평화의 집으로 수정 제의함.</li> </ul>
<p>1992. 2. 10</p> <p>조선기독교도 연맹 · KNCC 대표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KNCC 總會 北韓側 代表團 參加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合意事項</li> <li>-대표단 구성 : 10명(목사, 신학원 교수·학생, 기록·통신요원)</li> <li>신변안전보장각서, 명단교환 : 1992. 2. 13, 판문점</li> <li>통과장소 : 판문점</li> <li>왕래절차 및 편의제공 : 관례</li> <li>체류일정 : 1992. 2. 15~19(숙소 : 서울 신라호텔)</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2. 2. 11 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 접촉 (板門店평화회집)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高位級會談 준비관련 實務協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6차 고위급회담 行事 運營問題, 합의서 발송절차·통지문제 등을 협의하고 차기접촉(2. 13)에서 계속 논의기로 함.</li> </ul>
1992. 2. 13 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 접촉 (판문점 통일각)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高位級會談 준비관련 實務協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側 代表團 名單과 北側의 身邊安全保障覺書를 교환한 후 체류일 정·회담 운영 및 합의서 發效文本 형식 등을 협의하고 차기접촉에서 계속 논의기로 함.</li> </ul>
1992. 2. 14 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 접촉 (板門店평화회집)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高位級會談 준비관련 最終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문본 통보절차, 핵통제공동위 관련 대표접촉 문제, 제 2일 회의 순서 등 모든 실무문제에서 최종 합의하였음.</li> </ul>
1992.2.18~21 제 6차 南北高位 級 會談 (평양)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重要하고 시급한 과제는 核戰爭威脅을 제거하는 일이므로 북측은 核安全措施協定の 비준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최대한일 안에 국제핵사찰을 받아야 할 것임.</li> <li>○ 남북 쌍방이 합의서의 실천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이며, 분과위 구성 운영 이전이</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2. 2. 11  南北高位級會談 책임연락관 접촉 (板門店평화의집)	제 6차 高位級會談 준비관련 實務協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 행사 운영문제, 합의서 발송절차·통지문제 등을 협의하고 차기접촉에서 계속 논의기로 함.</li> </ul>		
1992. 2. 13  南北高位級會談 책임연락관 접촉 (판문점 통일각)	제 6차 高位級會談 준비관련 實務協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대표단 명단과 북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고 체류일정, 회담운영 및 합의서 발효문본 형식 등에 관해서는 차기접촉에서 계속 협의기로 함.</li> </ul>		
1992. 2. 14  南北高位級會談 책임연락관 접촉 (板門店평화의집)	제 6차 高位級會談 준비관련 最終合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문본 통보절차, 핵통제공동위 관련 대표접촉문제, 제2일회의 순서 등 실무문제에서 최종 합의하였음.</li> </ul>		
1992. 2. 14  朝鮮基督教徒聯 盟 서기장 고기 준 對南電通文	KNCC 總會參加 留保 通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의 서울 방문에 있어, 남한 당국은 촬영기자의 동행과 서울~평양 사이의 通信保障을 해주지 않는 등 사실상 우리 대표단의 서울방문을 방해하므로 우리는 KNCC 총회참가를 보류하고자 함.</li> </ul>		
1992.2.18~21  제 6차 南北高 位級 會談 (평양)	主要 提議·主張 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간의 합의문 해석과 실천방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은 7·4 共同聲明의 조국통일 3대 원칙임.</li> <li>- 自主的 立場은 북남합의서를 이행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근본임.</li> <li>- 平和統一의 전제를 마련하는데 先次的 힘을 넣는 것이 중요함.</li> <li>- 民族大團結의 견지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입장과 자세를</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라도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고향방문만이라도 우선 실현시킬것을 제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b>合意書 發效(2. 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li> <li>○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li> <li>○ 「3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合意 事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을 1992. 3. 6 상호통보</li> <li>○ 남북정치분과위 제1차 회의개최 : '92. 3. 9 판문점 평화의 집</li> <li>○ 남북군사분과위 제1차 회의개최 : '92. 3. 13 판문점 통일각</li> <li>○ 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개최 : '92. 3. 18 판문점 평화의 집</li> <li>○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문제 협의 대표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대표접촉 : 1992. 2. 19 평양</li> <li>- 제2차 대표접촉 : 1992. 2. 27 판문점 통일각</li> </ul> </li> <li>○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 1992. 5. 5~8 서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主要 提議·主張 內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핵통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 위원장 포함 7명, 실무위원회 설치</li> <li>(기능) · 쌍방 핵시설, 핵물질에 대한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단의 구성, 운영</li> <li>· 사찰대상의 선정</li> <li>· 사찰절차, 방법, 사찰장비 규정</li> <li>·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li> </ul> </li> <li>(운영)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li> <li>(사찰규정) 제1차 핵통제공동위 회의후 1개월 이내 마련</li> <li>(시범사찰) 합의서 발효 1개월이내 2개 시설·장소 사찰</li> </ul> </li> </ul>
<p>1992. 2. 1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영 협의 제1차 代表接觸 (평양)</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2. 1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1차 대표접촉 (평양)</p>	<p>가져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과 남이 시급히 공동보조를 취할 문제는 對日關係에서 제기되는 정신대 문제와 일본의 핵무장화 문제이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협의하고 쌍방 당국이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의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書 發效(2.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li> <li>○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li> <li>○ 「3개」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분과위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을 1992. 3. 6 相互 通報</li> <li>○ 북남정치분과위 제1차 회의개최 : '92. 3. 9 판문점 평화의집</li> <li>○ 북남군사분과위 제1차 회의개최 : '92. 3. 13 판문점 통일각</li> <li>○ 북남협력교류분과위 제1차 회의개최 : '92. 3. 18 판문점 평화의집</li> <li>○ 북남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문제 협의 代表接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대표접촉 : 1992. 2. 19 평양</li> <li>- 제2차 대표접촉 : 1992. 2. 27 판문점 통일각</li> </ul> </li> <li>○ 제7차 북남고위급회의 개최 : 1992. 5. 5~8 서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에서는 「핵무기 부재선언」이 발표되었지만 미국의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li> <li>○ 남조선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철저히 검증될때 비로소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이행되게 될 것임.</li> <li>○ 시범사찰은 일시에 모든 의혹을 풀자는 것이며 북남땅에는 술한 핵무기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을 일시에 해소하여야 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2. 27</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2차 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의 합의서(안)은 사찰규정 마련의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위원회 설치, 전문가 배석, 임시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li> <li>○ 제1차 핵통제공동위 會議 개최후 1개월 이내에 사찰규정을 마련하고 合意書 發效後 1개월 이내에 상호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함.</li> </ul>
<p>1992. 3. 3</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3차 代表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非核化 共同宣言」 이행합의서 문제는 비핵화공동선언 1, 2, 3항이 의무조항이므로 이를 규정에 따라 검증하면 되는 것이며 별도의 합의서는 불필요함.</li> <li>○ 북측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外部 核威脅 共同阻止 및 국제적 보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내외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示範査察을 실시하여야 함.</li> <li>○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위원회 조항 삭제, 수행원 조항(북측제시)수용</li> <li>-전문가 의견청취 조항 삭제, 정기회의 주기를 2개월로 조정</li> <li>-사찰규정 채택후 20일 안에 사찰실시 부분 추가</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2. 27</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 2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접촉시 남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은 駐韓美軍의 核武器·核基地를 사찰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핵문제 해결의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있음.</li> <li>○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문제, 非核化에 대한 주변 핵무기 보유국들의 국제적 담보문제등이 배제되어 있음.</li> <li>○ 北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초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構成 : 위원장 포함 5명(2명은 현역 장령, 군관 포함)</li> <li>—機能 : 「비핵화 공동선언」이행합의서 채택, 쌍방 核施設·핵물질·핵무기·핵기지에 대한 정보교환, 사찰단 구성·운영, 사찰절차·방법·사찰장비등 규정, 사찰결과 시정조치, 외부의 핵위협 공동저지,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담보 등</li> <li>—運營 : 정기 회의</li> <li>—査察實施 : 「비핵화 공동선언」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 채택후 20일 이내</li> </ul> </li> </ul>
<p>1992. 3. 3</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 3차 대표접촉 (板門店평화회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 공동선언」은 非核化의 原則, 方向, 目標를 提示한 것으로 同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 채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li> <li>○ 외부 핵위협에 대한 공동저지 및 국제적 보장문제는 비핵화공동선언의 본질문제임.</li> <li>○ 남측이 핵사찰 대상으로 核施設·核物質만 명시하고 핵무기·핵기지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駐韓美軍 核武器에 대한 사찰을 회피하려는 의도임.</li> <li>○ 시범사찰보다는 전면사찰을 실시해야 하며 사찰규정은 대표접촉에 서가 아니라 核統制共同委員會가 構成·運營된후 협의, 결정해야 할 문제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3. 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4차 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의 제 4 조(사찰규정 마련 時限)에서 사찰 실시의 전제조건으 로 제시하고 있는 「非核化共同宣言 이행을 위한 合意書」 채택을 삭제한다면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기능에 포함시 킬 수 있음.</li> <li>○ 북측안의 「외부 핵위협에 대한 공동저지 및 국제적 담보」는 비핵 화 공동선언의 테두리 밖의 문제임.</li> <li>○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후 1개월 이내에 査察規程을 마련하고 20일 안에 사찰을 해야 함.</li> </ul>
<p>1992. 3. 4</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代表 交替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 朴庸玉(국방부 군비통제관)</li> <li>해임 韓甲洙(경제기획원 차관)</li> </ul>
<p>1992. 3. 6</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3개」分科委員會 委員 名單 通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政治分科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li> <li>· 위 원 : 閔炳錫(대통령비서실 비서관) 金達述(통일원 자문위원) 崔圭鶴(총리실 심의관) 姜根鐸(외무부 심의관) 辛光玉(법무부 심의관) 申 丁(국방부 소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軍事分科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朴庸玉(남북고위급회담 대표)</li> <li>· 위 원 : 金熙相(대통령비서실 비서관) 任台淳(통일원 자문위원) 李榮浩(국방부 대령) 金永鎮(국방부 대령)</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3. 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 4차 대표접촉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非核化 共同宣言」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核統制共同委員會의 기본 임무에 속하는 포괄적인 것이므로 구체적 이행대책인 합의서가 필요함.</li> <li>○ 남측안 제2조 ①항 및 ③항은 「核施設·核物質(핵무기·핵기지도함)」로 표기되어야 함.</li> <li>○ 우리측안 제4조에 「사찰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채택하고 20일 안에 사찰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提示함.</li> </ul>
<p>1992. 3. 6</p> <p>政務院總理 연형 묵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3개」分科委員會 委員 名單 通報</p>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政治分科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백남준(북남고위급회담 대표)</li> <li>· 위원 : 김완수(외교부 순회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상호(조국전선 서기국 부국장)</li> <li>최성익(조평통 서기국장)</li> <li>정영춘(조평통 서기국 참사)</li> <li>심태진(정무원 사무국 상급심위원)</li> <li>조성대(조선중앙방송위원회 처장)</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軍事分科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김영철(북남고위급회담 대표)</li> <li>· 위원 : 박웅수(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성진(대좌)</li> <li>리길청(대좌)</li> </ul> </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趙商勳(외무부 심의관) 蔡俊錫(국방부 판단관)</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林東源(남북고위급회담 대표)</li> <li>· 위 원 : 金仁浩(경제기획원 실장) 宋榮大(통일원 자문위원) 朴雲緒(대통령비서실 비서관) 柳得煥(상공부 차관보) 辛鉉雄(문화부 국장) 朴秀蒼(총리실 심의관)</li> </ul>
<p>1992. 3. 6</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5차 대표접촉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査察規程 마련 時限 명시가 合意書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時限을 두지 않을 경우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공전될 우려가 있음.</li> <li>○ 만약 북측이 사찰규정 마련시한을 명시할 수 없다면 「한달내 시범 사찰 실시」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함.</li> </ul>
<p>1992. 3. 9</p> <p>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1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政治分科委員會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南北和解 分野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和解를 위한 원칙 제시</li> <li>- 남북화해 분야의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li> </ul> </li> <li>○ 南北連絡事務所 설치 문제는 시급히 협의·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이에 대한 우리측 합의서(안)을 제시함.</li> <li>○ 핵사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화해·협력에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남북대화가 영향을 받을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김민현(대좌) 박립수(대좌) 원동연(조평통 서기국 부장)</p> <p style="text-align: center;"><b>北南協力, 交流分科委員會</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김정우(북남고위급회담 대표)</li> <li>· 위원 : 김채성(정무원 사무국 부장) 손종철(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이순(문화예술부 국장) 류창석(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정덕기(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승국(노동청년사 부주필)</li> </ul>
1992. 3. 6	<b>主要 提議 · 主張 內容</b>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 · 운영 협의 제 5차 代表接觸 (板門店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의 사찰규정 마련 시한 明示條項을 삭제하고 차후 구성 · 운영 되는 핵통제공동위원회에 넘겨서 協議토록 함.</li> </ul>
1992. 3. 9	<b>主要 提議 · 主張 內容</b>
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1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和解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한후 「北南政治 共同委員會」 「北南連絡事務所」 설치 ·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하여야 함.</li> <li>○ 북남 기본합의서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관련하여 附屬合意書 (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法律的, 制度的 장치 제거</li> <li>- 외세의 온갖 내정간섭 행위에 가담 · 협력 금지</li> </ul> </li> <li>○ 북남 화해분야의 이행기구인 북남정치공동위원회를 내오는 것이 순</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3. 1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6차 代表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別途의 合意書 採擇」, 「외부 핵위협 저지」, 「국제적 담보 요구」등 불필요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査察規程 時限 明示」, 「示範査察」을 지연시키고 있음.</li> <li>○ 「사찰규정마련 시한 명시」문제는 합의서의 본질적 문제이므로 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li> </ul>
<p>1992. 3. 13</p> <p>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1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불가침 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附屬合意書를 作成해야 함.</li> <li>○ 남북불가침 분야 관련대책으로는 「武力 不使用」, 「분쟁의 평화적 해결」등 불가침 분야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軍事分科委員會 협의 과정에서는 i) 當事者 해결원칙 ii) 和解·不可侵·교류협력의 균형추진 iii) 實踐性 保障 原則을 준수해야 함.</li> <li>○ 이와함께 우리측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과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ul>
<p>1992. 3. 1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7차</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査察規程마련 時限 明示」문제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共同發表文」에 이를 포함하기로 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3. 1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 6차 대표집축 (관문점 통일자)</p>	<p>리라고 인정하면서 합의서(안)을 제시함.</p> <p>－위원장은 부장(장관)급으로 하며 정치공동위 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p> <p>○ 北南 連絡事務所 設置·運營에 관한 合意書(안)을 제시함.</p> <p>－현 적십자연락사무소를 대체하여 정당·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전반적 연락업무를 수행</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核査察規程 마련 時限」을 명시하자는 남측 주장은 北南核統制共 同委員會가 구성·운영된 후 협의할 문제이며, 이미 합의된 사항만 으로 合意書를 채택하면 될 것임.</p>
<p>1992. 3. 13</p> <p>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1차 회의 (관문점 통일자)</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북남군사분과위원회 회의는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自主的 立場을 견 지하며 북남간 상호불가침을 합의한 조건에서 낚은 대결관념을 탈 피해야 함.</p> <p>○ 북남불가침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附屬合意書」(안)과 「북 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p>
<p>1992. 3. 1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구성·운 영 협의 제7차</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査察規程마련 時限明示」 문제는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 영합의서(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共同發表文」에 이를 포함시키 기로 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代表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합의서」(안)에 假署名                      -合意文件 交換 日時 및 場所                      · 1차 : 1992. 3. 17,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2차 : 1992. 3. 19,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합의서 발효 일자 : 1992. 3. 19</p> <p style="text-align: center;"><b>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b></p> <p>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p> <p>제 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p> <p>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측에 이를 통보한다.</p> <p>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제 2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p> <p>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대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사항</p> <p>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교환에 관한 사항</p> <p>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p> <p>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p> <p>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대표접촉 (板門店평화의집)</p>	<p>○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에 假署名 - 合意文件 교환 일시 및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1992. 3. 17,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li> <li>· 2차 : 1992. 3. 19,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li> </ul> <p>- 합의서 발효 : 1992. 3. 19</p> <p style="text-align: center;"><b>北南核統制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b></p> <p>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p> <p>제 1 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부장(차관)급으로 한다.</li> <li>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 이를 통보한다.</li> <li>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li> </ol> <p>제 2 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li> <li>②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교환에 관한 사항</li> <li>③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li> <li>④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협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li> <li>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li> </o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p> <p>제 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p> <p>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p> <p>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제 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제 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 發表文</p> <p>1. 1992년 3월 17일과 1992년 3월 19일, 2차례에 걸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교환</p> <p>2. 1992년 3월 18일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원 명단 교환</p> <p>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 1 차 회의를 1992년 3월 19일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p> <p>⑦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p> <p>제 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p>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과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p> <p>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래왕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p> <p>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p> <p>제 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제 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제 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共同 發表文</b></p> <p>1. 1992년 3월 17일과 1992년 3월 19일, 2차례에 걸쳐 北南核統制共同委員會 구성·운영에 관한 合意書 교환</p> <p>2. 1992년 3월 18일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원 명단교환</p> <p>3.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4.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 1 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p>
<p>1992. 3. 18 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 委員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孔魯明(남북고위급회담 대표)</li> <li>• 부위원장 : 潘基文(외무부장관 특별보좌관)</li> <li>• 위원 : 鄭大圭(통일원 자문위원)                        卞鍾圭(대통령비서실 비서관)                        李富植(국방부 준장)                        李昇九(과학기술처 심의관)                        洪錫範(총리실 심의관)</li> </ul>
<p>1992. 3. 18 南北交流協力分</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交流 · 協力 사업을 능률적으로 협의 · 추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3. 17</p> <p>政務院總理 연형 목 對南便紙</p>	<p>4. 北과 南은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조선반도의 非核化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는 1AEA와 해결되고 있다고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側은 北의 核問題가 풀리지 않으면 北南合意書 履行을 유보하겠다고 공언할 뿐만 아니라, 이 입장을 分科委員會 문제토의에 반영하면서 회의진전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음.</li> <li>○ 우리의 核問題는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 밑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으며, 北南 사이에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곧 발족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合意書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근거가 없음.</li> <li>○ 남측의 지금과 같은 태도로 보아 附屬合意書들과 共同委員會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들을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 前에 만들어내고 예정대로 회담을 개최할 수 있겠는지 염려됨.</li> <li>○ 남측은 북의 핵문제를 걸고 北南合意書 이행을 유보하려는 부당한 입장을 철회하고 分科委員會 회의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임.</li> </ul>
<p>1992. 3. 18</p> <p>政務院總理 연형 목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員會 委員 名單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委員長 :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li> <li>副委員長 : 박광원(조선인민군 소장)</li> <li>委員 : 김경춘(원자력공업부 국장)</li> <li style="padding-left: 2em;">장장천(외교부 순회대사)</li> <li style="padding-left: 2em;">김수길(외교부 순회대사)</li> <li style="padding-left: 2em;">최영관(조선인민군 대좌)</li> <li style="padding-left: 2em;">김만길(조평통 서기국 참사)</li> </ul>
<p>1992. 3. 18</p> <p>南北交流協力分</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답에 임하는 자세로서 i) 民族 自主의인 입장에 설 것(외세의</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科委員會 제 1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	4가지 원칙으로 i) 호혜적 입장에서 교류와 협력 실시 ii) 統一指向的 交流·協力 추진 iii)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탕위에서 교류·협력 실시 iv) 件別合意 即時實踐 등을 제시함. ○ 남북 기본합의서 제15조~제21조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이산가족, 通行·通信,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 등 4개 분야로 하며 그와 관련한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함.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재회와 기타 인도적 문제 해결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북사이의 통행·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북사이의 경제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북사이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 인도, 통행·통신,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등 4개 부문 공동위 구성과 관련 단일 합의서 형식으로 「남북 부문별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 ○ 이산가족 문제의 절박성을 고려하여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기 이전의 示範事業으로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우선적으로 실현시킬 것을 제의함. -구성 및 규모 : 고령이산가족, 취재기자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400~500명 정도 -방문시기 : 단오절(6. 5) 전후 5박 6일 -방문지 : 이산가족들의 고향  1992. 3. 19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1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	主要 提議·主張 內容 ○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의 최우선과제는 南北間「共同發表文」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을 조속히 채택하고, 6월 초순까지는 제1차 相互査察을 개시해야 함. ○ 사찰규정 마련 이전이라도 핵관련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상대방의 일정한 핵시설과 장소를 우선교환 방문할 것을 제의함. ○ 「남북상호 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과 정보교환양식, 사찰계획서 작성요령을 제시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科委員會 제 1 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	<p>존 배경) ii)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 설 것 iii)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정신을 발양할 것등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分科委員會에서 해결해야 할 기본문제에 대한 견해로는 北南協力, 交流 이행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북남합의서에 충실해야 하며 제7차 高位級會談 전에 합의되도록 하고 北南協力, 交流共同委員會는 經濟部門과 社會文化 部門으로 나누어 구성하되 각 共同委 委員數는 각기 9명으로 할 것을 제의함.</li> <li>○ 北南協力, 交流부문의 「附屬合意書」(안)과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ul>
1992. 3. 19	主要 提議 · 主張 內容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1 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기능 수행원칙으로 i) 자주적 입장에서 외세 배경 ii) 완전무결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전면적 동시 사찰 iii) 非核化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핵위협을 종국적 청산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해 공동대처 하여야 함.</li> <li>○ 남측의 사찰규정(안)에는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사찰실시에 있어 「동수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남측의 미군핵무기 존재에 대한 의혹을 풀수 없게 하고 있음.</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3. 21</p> <p>南北交流協力分 科 委員會 林東 源위원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分科委員會「委員接觸」名單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의 쌍방 합의에 따라 同 위원회 위원접촉에 참가할 우리측 명단을 통보함.</li> <li>- 위원 : 金仁浩, 宋榮大, 辛鉉雄</li> </ul>
<p>1992. 3. 25</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1차 회의 제1차 委員 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이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은 구체적·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합리성, 현실성, 정당성이 있는 案인데 비해 북측 부속합의서(안)은 宣言的, 原則的 內容만을 나열함으로써 기본합의서에 위배되고 있음.</li> <li>○ 北側案에는 이산가족 문제 解決對策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해결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討議方式은 조항별, 분야별로 할 것을 제의함.</li> </ul>
<p>1992. 3. 27</p> <p>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2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提示한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 채택이나 포괄적 단일 共同委員會를 構成하자고 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것임.</li> <li>○ 南北政治分科委의 임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제7조까지의 조항을 이행,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후 합의된 내용을 附屬合意書로 작성하는데 있음.</li> <li>○ 남북화해 분야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합의서 제1조~제6조까지 각 조항별 과제 및 「南北法律共同委員會 構成·運轉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li>○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합의서 채택을 부속합의서 채택과 연계시키는 것은 분과위 구성·운영 합의서 위반으로서 부당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3. 21</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 北側委員長 김정우 對南 電通文</p>	<p>○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초안) 과 同합의서 附錄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초안)을 제시함.</p> <p style="text-align: center;">分科委員會 「委員接觸」名單通報</p> <p>○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쌍방이 합의한데 따라 同위원회 위원접촉에 참가하는 우리측 명단을 통보함. - 위원 : 손종철, 김채성, 김승국</p>
<p>1992. 3. 25</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 제1차 회의 제1차 위원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南側案은 北南合意書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共同委員會에서 해야 할 실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음.</p> <p>○ 토의순서는 「北南合意書」조항순에 따라 15조부터 하되 이산가족문제 논의는 해당조항 순서가 될때 협의하면 될 것임.</p> <p>○ 북남협력, 교류분과위 제1차 회의시 내놓았던 부속합의서(안)을 일부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함.</p>
<p>1992. 3. 27</p> <p>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2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附屬合意書를 채택한 이후에 「北南政治共同委」 「北南連絡事務所」 설치, 운영 合意書를 채택하여야 하며 남측 제시 「法律共同委」는 「政治共同委」를 구성하면 필요치 않을 것임.</p> <p>○ 「정치공동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중단 없이 사업을 처리할 수 있으며, 고위급회담 외적기구로 되어야 할 것임.</p> <p>○ 北南連絡事務所는 자기측 지역에 설치하되 그 안에 세부적 기구는 둘 필요가 없으며, 연락사무소가 설치·운영되면 현재 赤十字 連絡事務所는 폐지해야 함.</p> <p>○ 남측의 위원접촉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先 附屬合意書</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3. 31</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2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基本合意書 合意에 따라 南北連絡事務所를 기일안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 問題 論議를 위해  위원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함.</li> <li>○ 부속합의서는 原則的·指針的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실천적 성격의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合意·發效시키는 대로 실천에 들어 가야 함.</li> <li>○ 남북불가침분야 이행대책의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附屬合意書를 작성토록 하며 북한측이 포괄적 단일 附屬合意書 작성을 주장하는 것은 分科委 構成·運營 合意書 제2조 제2항의 文句 解釋上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li> <li>○ 「軍事共同委員會」는 협의기구인 동시에 實踐機構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南北高位級會談 테두리 내의 기구로서 南北基本合意書 발효후 3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키로 한 합의에 따라 기한내에 發足되어야 함.</li> <li>○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武力使用·武力侵略 등 주요 용어의 정의 문제,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긴급조치 및 事後處理 문제 등 協議課題를 提示함.</li> <li>○ 偶發的 武力衝突防止를 위한 시급한 실천조치로서 南北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設置·運營問題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야 함.</li> <li>○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設置·運營 合意書」(안)의 실무적 토의를 위해  위원접촉을 제의함.</li> </ul>
<p>1992. 4. 1</p> <p>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2차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의 발생근원을 駐韓美軍 核武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격 주장이며 핵문제의 해결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li> <li>○ 제 1차 회의시 내놓은 北側의 履行合意書는 합의를 의한 합의를</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3. 31</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2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討議, 後 共同委員會 및 北南連絡事務所 설치·운영 문제를 토의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것은 불가침 이행을 지연시켜 군사적 긴장상태를 지속시켜 보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임.</li> <li>○ 부속합의서 작성시한은 군사공동위원회의 발족 시한이 5. 19 이므로 그 기초가 되는 부속합의서는 그 이전에 작성되어야 함.</li> <li>○ 토의 순서와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째, 불가침에 관한 附屬合意書 초안부터 조항별로 토의하며</li> <li>-둘째, 제1차 회의시 의견이 접근된 「軍事共同委員會 구성·운영 合意書」(안)을 토의하고</li> <li>-셋째,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는 불가침 부문의 조항순서에 따라 직통전화설치 운영조항 토의시 협의 해결함.</li> </ul> </li> </ul>
<p>1992. 4. 1</p> <p>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2차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側이 核武器와 核基地의 사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를 反對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고의적인 행동임.</li> <li>○ 남측의 사찰규정(안)은 非核化共同宣言에 대한 체면이나 유지하고</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板門店평화의집)</p>	<p>査察을 통해 불순한 목적이나 달성해보려는 일종의 政治遊戯物로서 査察의 대상과 일반적 원칙이 명백치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같은 남측의 부당한 입장과 자세는 北南間의 關係改善과 조선 반도의 非核化를 달가워하지 않는 외세의 간섭에 의한 것임.</li> <li>○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과 비핵화 검증을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종합적 문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며,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동시 全面査察을 시행해야 함.</li> </ul>
<p>1992. 4. 2</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1차 회의 제2차 委員 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부속합의서 作成原則부터 합의하자고 하는 것은 內容討議부 터 시작하기로 한 제1차 分科委 會議時 합의에 違背되는 것임.</li> <li>○ 남측이 북남합의서 제18조(이산가족문제)부터 우선 토의하자고 하는 것은 북남합의서 이행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며 북남합의서 협력, 교류분야 제15조 내용부터 條項別로 토의를 진행하여야 함.</li> <li>○ 남측의 수정안 중에서 쌍방당국 승인하에 경제교류협력과 서울·평양 경제사무소 교환설치 및 판문점 경제상담소 공동설치 등은 받아들일 수 없음.</li> <li>○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교환문제는 해당 부속합의서 토의시에 협의될 사항임.</li> </ul>
<p>1992. 4. 6</p> <p>「女盟」상무위원 여연구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차 平壤女性討論會 開催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2차 토론회에서 합의한대로 제3차 討論會를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과 관련 몇가지 의견을 전함.</li> <li>- 토론회 날짜 : 4월말 경</li> <li>- 討論 議題</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10</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1차 회의 제3차 위원 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의 全分野에 걸쳐 쌍방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실질토의를 완결한 후, 제2차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附屬合意書의 형식과 기 타 주요 문제를 토의하고, 제7차 본회담 이전까지는 부속합의서의 내용, 형식을 모두 타결하여 假署名 하여야 할 것임.</li> <li>○ 북측이 경제협력 당사자에 대한 當局 承認問題, 서울·평양 경제사 무소 설치문제는 절대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책임있는 경제활동을 위해서 당국간 지원과 보장이 필요하며, 경제교류 활성 화를 위해서는 經濟事務所 設치가 반드시 필요함.</li> </ul>
<p>1992. 4. 13</p> <p>李恩貞 한국기독교 교교회협의회 부 회장 對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차 平壤女性討論會 開催日宇 연기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에 관한 南側實行委 員會 논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림. - 귀측이 제안한 4월말경 개최는 일본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9 월초로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임. - 討論主題는 귀하(여연구)와 東京에서 교환한 의견을 참고하여 재 조정하여 주기 바람. - 참석인원 수나 일정 등은 일본과 우리측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주기 바람.</li> <li>○ 일본측과 우리측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위의 제안들에 대한 회신을 주기바람.</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10</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1차 회의 제3차 委員 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1. 조국통일과 여성들의 과업(남측 과제) 2. 아시아에서의 비핵 평화운동과 여성들의 과업(일본측 과제) 3. 민족의 대단결과 여성들의 역할(북측 기초보고)</p> <p>-代表團 構成 : 전례를 고려하여 결정</p> <p>○ 필요하다면 北南 女性代表들이 판문점에서 實務問題를 協議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남측의 「당국의 승인」문제는 당국의 비위에 맞는 경제 활동만 차 별승인해주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며, 「서울·평양 경제사무소 설 치」문제는 국가간 무역대표부 성격의 경제사무소를 두려는 반통일 적 「2개 조선」 발상임.</p> <p>○ 제1차 위원접촉시 제시한 附屬合意書(안) 내용을 일부 修正하여 새로운(안)을 提示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18</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 2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經濟交流 · 協力 分野에서 「經濟交流 · 協力 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은 南北政府當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며 또한 물자교류가 清算計定으로 처리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며, 서울 · 평양 「경제사무소」 설치문제는 추후협의키로 하되 「板門店 經濟相談所」는 우선 설치 · 운영해야 함.</li> <li>○ 社會文化 分野에서 우리측안은 교류 · 협력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 細部事項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북측안은 실천성이 결여된 선언적인 안임.</li> <li>○ 通行 · 通信 分野의 북측안중 「各界各層 人원들의 왕래」의 표현을 「민족 구성원간의 왕래」로 수정해야 하며, 인적왕래와 관련한 「法的 制度的 裝置 撤廢」 주장은 상대방의 체제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을 규정한 基本合意書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li> <li>○ 이산가족문제는 쌍방당국이 이산가족에 대한 해결대책을 마련하되 그 이행에 따르는 사항은 쌍방 赤十字團體가 담당토록 하는 折衷案을 제시함.</li> <li>○ 부속합의서의 形式問題에 있어 기본합의서의 交流 · 協力分野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해당 附屬合意書 작성관련 독립성을 지닌 조항은 이에 해당하는 合意書를 채택하되 상호 연관이 있는 조항들의 사업은 묶어서 실천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기함.</li> <li>○ 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위는 실천적기구이므로 교류 · 협력 진행시 제기되는 문제협의나 실행대책 토의결정은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임.</li> <li>○ 「高齡 離散家族 故鄉訪問團」 교환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것을 재촉구함.</li> <li>○ 일부내용이 조정된 부속합의서 제2차 수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經濟分野 : 20개조에서 18개조로 재조정</li> <li>社會文化分野 : 11개조 21개항에서 12개조로 조정</li> <li>通行 · 通信分野 : 17개조에서 16개조로 조정</li> <li>離散家族分野 : 10개조 18개항에서 11개조로 조정</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18</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2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側이 제시한 부속합의서 (안)들은 北南合意書의 조항들을 뒤섞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세부화하여 인위적으로 합의를 지연시키려는 내용으로 되어있어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음.</li> <li>○ 「經濟協力, 交流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問題」는 당국이 개입할 경우 일방의 政略的 目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대함.</li> <li>○ 「서울·평양 경제사무소 및 판문점 經濟相談所 設置問題」는 분열 지향적 색채가 농후한 제안이며 북남합의서 토의시 배격받은 常駐 代表部 設置問題와 유사한 것임.</li> <li>○ 「法的·制度的 장치 철폐 문제」는 이를 그대로 두고서 자유내왕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임.</li> <li>○ 「이산가족문제」는 赤十字團體 주관하에 해결하고 당국은 赤十字會 談 開催를 위해 적극 협력하면 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2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3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統制共同委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이 합의한 공동발표문에 따라 南北 相互査察規程을 마련하고 檢證하는데 있는 것이며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별도의 합의서 채택은 타당치 않음.</li> <li>○ 제 1차 회의시 제기했던 사찰규정(안)을 일부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서 명칭을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사찰 규정」으로 수정</li> <li>- 제 1조에 査察規程 「목적」 신설</li> <li>- 제 2조 ①항 「用語 定義」 수정</li> <li>- 제 3조 「査察對象」 수정</li> <li>- 제 7조 ②항 「情報交換」은 북측안 제11조 ⑤항을 수용</li> <li>- 제 8조 「査察의 節次와 方法」 신설 및 북측안 수용</li> <li>- 제 9조 「査察團 身邊 및 活動 保障」 북측안 수용</li> <li>- 제11조 「査察結果 및 是正措置」 북측안 수용</li> </ul> </li> <li>○ 북측의 「疑心同時 解消原則」, 「一方的인 全面査察」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국제관례와 그간 남북간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함.</li> </ul>
<p>1992. 4. 23</p> <p>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3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連絡事務所 設置 · 運營問題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규정되어 있고 시한이 5월 19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문제를 우선 논의하여 제 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를 발표시켜야 함.</li> <li>○ 부속합의서의 채택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條項別, 事案別 중요도와 완급에 따라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한후, 합의사항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야 함.</li> <li>○ 南北 基本合意書 제 1조에서 6조까지의 履行對策을 담은 5건의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사이의 상호체제 인정 · 존중과 내부문제 불간섭에 관한 합</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2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3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側은 미국의 核武器 · 核基地를 사찰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의부의 핵위협에 가담 · 공모하고 있으며, 핵위협 방지에 공동대처하는 우리측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非核化共同宣言의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제1차 회의를 제기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합의서」의 부록인 査察規程(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사찰규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 「핵시설에 대한 정보교환」 규정 신설</li> <li>제12조 ①, ②항 사찰방법, 핵물질 사찰, 핵시설에 대한 사찰조항 수정</li> <li>제13조 ②항 「사찰의 진행」 규정 수정</li> <li>제15조 ③항 「사찰원 임명」 신설</li> <li>제16조 ①항 사찰의 기간과 주기 수정</li> <li>제16조 ②항 「사찰장비와 수단」 수정</li> <li>제23조 분쟁해결 신설</li> </ul> </li> <li>○ 남측수정안은 제목만 바꾼것으로 비핵화의 중핵적 문제인 핵무기 · 핵기지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核基地가 아닌 軍事基地 査察만을 규정하고 있음.</li> </ul>
<p>1992. 4. 23</p> <p>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3차 회의 (板門店평화회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7·4 共同聲明의 統一 3原則을 왜곡하고 있으며 분열의 장본인인 駐韓美軍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외세 의존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주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이고, 先 신퇴구축을 구실로 평화문제의 근본문제인 軍縮을 회피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li> <li>○ 기본합의서의 「暫定的 特殊關係」를 실체인정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分裂指向的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임.</li> <li>○ 포괄적 單一 附屬合意書를 우선 채택하고 單一 共同委員會 구성 · 운영문제를 협의한 후 북남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를 협의함.</li> <li>○ 附屬合意書 내용은 대체적 문제들만 포함하도록 하고 세부문제들은</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의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사이의 비방·중상 중지에 관한 합의서」(안)</li> <li>- 「남북 사이의 파괴·전복행위 금지에 관한 합의서」(안)</li> <li>- 「남북 사이의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에 관한 합의서」(안)</li> <li>- 「남북 사이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汎民聯·汎靑學聯」 결성, 「汎民族大會·全民族政治協商會議·南北海外靑年學生統一大祝祭」 개최등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유린하고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것으로 場外 政治宣傳 攻勢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함.</li> <li>○ 남북연락사무소설치·운영문제, 부속합의서 및 공동위원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개의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1992. 4. 24</p> <p>柳莊熙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장 對北電通文</p>	<p>板門店 경유 訪北 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대표단은 4. 27, 11:00 판문점을 통해 평양에서 개최되는 동북아경제포럼에 참가하고자 함.</li> <li>○ 우리측 인원 18명의 판문점 통과절차와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 등 實務問題를 협의하기 위해 4. 25,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쌍방 연락관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1992. 4. 27</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 3 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物資交流時 清算決濟 方式으로 할 경우와 經濟協力 事業時 경제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해 책임있는 정부당국의 참여와 지원은 필수적임.</li> <li>○ 북측이 주장하는 「法的·制度的 裝置撤廢」문제는 정치분과위에서 南北法律共同委員會를 구성하여 쌍방이 법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共同委員會에서 토의해야 하며, 連絡事務所를 상대측 지역에 두는 것은 분열지향적인 것이므로 자기측 지역에 두고, 往來·接觸案内室 등 기구설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함.</p>
<p>1992. 4. 23</p> <p>「汎靑學聯」 북측 준비위원장 문경덕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統一大祝典 및 汎靑學聯 結成 實務會談 참가요청</p> <p>○ 1992. 4. 28 평양에서 제2차 北南·海外靑年學生 統一大祝典과 汎靑學聯 결성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에 참가할 「전대협」대표 5~7명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주기를 희망함.</p>
<p>1992. 4. 24</p> <p>對外經濟協力推進委員會 위원장 김정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板門店 통과 入北拒否</p> <p>○ 平壤 개최 東北亞경제포럼은 日本, 美國과 공동주최하는 회의인 만큼, 日本側과 합의한대로 南側代表團도 다른나라 대표단과 함께 日本을 경유하여 入北해야 할 것임.</p>
<p>1992. 4. 27</p> <p>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3차 회의 (板門店평화회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부속합의서는 1개로 하되 南側의 주장을 수용하여 몇개의 후으로 설정할 수 있음.</p> <p>○ 「협력, 교류 당사자 當局承認」문제는 북남 사이의 자유로운 협력, 교류에 역행되기 때문에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남측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28</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3차 회의 제1차 委員 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서 논의될 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문제는 우리측(안)이 기본합의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북측의 입장도 고려된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타결지을 것을 요구함.</li> <li>○ 부속합의서 數와 體制問題는 1개의 부속합의서로 하되 몇개의 章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북측 견해를 유의하고 있음.</li> <li>○ 공동위원회 數는 부문별 사업들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북측의 입장도 고려한 것이므로 經濟, 社會文化, 通行·通信 3個로 하는 것이 타당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안) 條項別 討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同委員會 數는 3개를 구성하도록 함.</li> <li>○ 이산가족문제는 기본합의서 제18조에 해당하는 이행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점을 감안, 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에 人道部門 履行 문제는 적십자사에 위임함을 명기토록 함.</li> <li>○ 協議結果 報告문제에서 「위원장은 공동위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 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포함시켜야 함.</li> <li>○ 발효문제는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重要文件은 쌍방 총리가 署名」하여야 효력이 발효되도록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委員長 1명(장관급 또는 차관급)</li> <li>· 副委員長 1명(급은 각기 편리한대로)</li> <li>· 委員 7명(급은 각기 편리한대로)</li> </ul> </li> <li>○ 機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속합의서 이행</li> <li>· 부속합의서 이행에 따른 세부합의서 작성</li> <li>· 細部事項 협의 실천</li> <li>· 실무협의회 활동 종합조정</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28</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 3차 회의 제 1차 위원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문점 「경제상담소, 자료교환실 설치」문제는 공동위에서 토의할 문제이며, 「법적·제도적 장치철폐」문제는 상대방을 敵으로 규정하고 자유롭게 만나는 것을 범죄시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철폐해야 할 것임.</li> <li>○ 이산가족문제는 원칙적인 문제만 當局間에 토의하고 구체적 대책은 적십자사에서 토의하도록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委 構成·運營 合意書(안) 條項別 討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협력, 교류분야 共同委員會의 數는 경제부문과 사회문화부문의 2개만 구성하면 될 것임.</li> <li>○ 이산가족문제는 북남합의서 제18조에 해당되는 共同委員會가 없으므로 북남협력, 교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함.</li> <li>○ 「협의결과」에 대한 細部的인 사항을 總理에게 보고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발효문제는 共同委員長 署名으로 효력이 발생토록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委員長 1명(장관급 또는 차관급)</li> <li>· 副委員長 1명(級은 각기 편리한 대로)</li> <li>· 委員 7名(級은 각기 편리한 대로)</li> </ul> </li> <li>○ 機 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속합의서 이행</li> <li>· 부속합의서 이행에 따른 細部合意書 작성</li> <li>· 세부사항 협의 실천</li> <li>· 실무협의회 활동 종합조정</li> </ul> </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29</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3차회의 제 1차 위원접촉 (판문점 중감위원회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會議 運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에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li> <li>· 場所는 판문점, 서울, 평양 또는 합의하는 장소</li> <li>· 쌍방 위원장 공동운영</li> <li>· 비공개 원칙</li> </ul> </li> </ul> <p>○ 기본합의서에 발족시한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가 용이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를 우선 토의한 후 부속합의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함.</p> <p>○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 의견을 제시함.</p> <p>—合意書題目 :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 따라 「板門店」명시 불필요                      名稱 : 남측, 북측으로 수정가능                      設置 場所 : 판문점 상대측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긴장 완화와 화해를 상징                      機能 : 북측안 제2조 4항의 「정당, 단체, 개인별 인시간 연락」은 명시 불필요                      機構 : 향후 확대될 기능에 대비하여 설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제시한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먼저 토론한 후 부속합의서 數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단일 공동위원회 구성문제는 기본합의서에 규정이 없으므로 雙方協議結果에 따라 위원회 數를 조정해야 함.</li> </ul>
<p>1992. 4. 30</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3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구체적 대책마련에 있어 지켜야 할 3가지 原則을 提示함.</li> </ul> <p>—當事者 解決原則 : 相對方과 제3자간의 관계를 부당하게 거론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止揚함.</p> <p>—均衡推進 原則 : 정치적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相互信賴의 축</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4. 29</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3次회의 第1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원회 회의실)</p>	<p>○ 會議 運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分期에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li> <li>· 場所는 판문점 · 서울 · 평양 또는 합의하는 장소</li> <li>· 쌍방 위원장 공동운영</li> <li>· 비공개 원칙</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북남연락사무소, 부속합의서, 공동위구성 · 운영 합의문제를 제7차 본회담에서 채택, 발효시킨다는 입장을 전제로 北南連絡事務所 설치 · 운영문제 토의에 동의함.</p> <p>○ 북남연락사무소 설치 · 운영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의견을 제시함.</p> <p>—合意書 題目 : 「판문점」明示 필요</p> <p>名稱 : 서울, 평양은 지리적 개념상 不適合</p> <p>設置 場所 : 판문점 상대측 지역에 설치하는것은 운영 · 관리상 불편하며 분단 고착화 및 「2개 조선」인상</p> <p>機能 : 고위급회담 테두리내에 국한하기 보다는 폭넓게 범위설정</p> <p>機構 : 현 단계에서는 불필요, 필요시 협의설치 가능</p> <p>○ 단일 부속합의서 및 단일 공동위원회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치분과위원회의 앞날이 암담하며 제7차 본회담의 전망이 우려됨.</p>
<p>1992. 4. 30</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第3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軍事分科委員會 회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提起되는 問題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p> <p>—北南合意書を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함.</p> <p>—平和問題를 실제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의지를 가져야 함.</p> <p>—外勢依存的  자세와 입장을 버려야 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적없이 군사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곤란함.</p> <p style="text-align: center;">-實踐性 保障原則 : 실천의지를 宣言이 아닌 行動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회의시 북측이 제시한 7개의 協議課題를 발전시킨 별도의 부속합의서(안)인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li>○ 남북 쌍방은 「先 共同委問題 討議, 後 附屬合意書 討議」에 합의하고, 각기 제시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내용에 대해 조항별로 토의를 진행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共同委 構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수행원 15명</li> <li>○ 實務協議會 : 필요시 구성·운영</li> <li>○ 機能 : 우리측의 ①~⑤항의 내용을 북측 ②항 「기본합의서의 제2장 12조의 ④항」으로 대체</li> <li>○ 運營 : 會議週期는 分期 1회 개최하되 쌍방의 합의로 수시개최가 능토록 하고, 회의장소는 판문점·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4</p> <p>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의 부속합의서(안)은 불가침을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문제위주로 작성됨으로써 침략을 막기위한 예방조치 보다는 사후처리 문제로 일관되어 있음.</li> <li>○ 북남 쌍방은 「先 共同委 문제토의, 後 附屬合意書 토의」에 합의하고, 각기 제시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 내용에 대해 조항별로 토의를 진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의 級 : 職級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li> <li>- 협의결과 보고 : 삭제 주장</li> <li>- 서명 발효 : 위원장 서명으로 발효를 주장</li> <li>- 기능 : 남측의 ①~⑤항의 내용을 북측 2항 「北南合意書의 제2장 12조의 ④항」으로 대체 합의, 남측 ⑦항과 북측 ①, ②항의 折衷은 보류</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li> <li>○ 실무협의회 : 필요시 구성·운영</li> <li>○ 운영 : 회의주기는 分期1회 개최하되 쌍방의 합의로 隨時開催 가능토록하고, 회의장소는 판문점·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제41차 世界卓球選手權大會  우승컵 移管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년 4월 日本에서 개최된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北南單一팀 女子團體戰 우승컵을 1년씩 보관하기로한 합의에 따라 南側에 넘겨주려고 함.</li> <li>○ 이를 위해 5월 6일 오후 3시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북한 탁구협회 관계관을 파견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5~8</p> <p>제 7차 南北高位 級 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 회담 이후 각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북측이 부속합의서 채택문제를 이행기구 발족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時限이 明示되어 있는 이행기구는 정해진 기한 안에 발족시켜야 할 것임.</li> <li>○ 남북 쌍방이 각기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을 토대로 협의하여 합의되는 사항들은 合意文件으로 작성하고 합의하지 못한 사항들은 계속 협의하여 順次的, 逐次的으로 채택해야 하며,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li> <li>○ 7. 4 共同聲明의 統一 3原則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自主의 原則」은 민족문제를 민족자결정신에 따라 당사자인 남북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상호 법질서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함.</li> <li>- 「平和의 原則」은 무력사용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배제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으로서,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이 충실히 이행되면 남북간의 정전상태는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것임.</li> <li>- 「民族大團結의 原則」은 민족적 화해를 바탕으로 단합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民族 構成員 개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복수의 권이 허용되는 가운데 基本人權과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li> </ul> </li> <li>○ 南北高位級會談, 分科委員會, 共同委員會의 機能과 運營에 관한 方向을 提示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高位級會談 : 各 分科委員會, 共同委員會의 활동 지도 및 의견 대립 사안을 조정·처리하고, 各 分科委員會에서의 합의결과를 審議·確定·發效시키며 分科委員會에 委任事項 및 기타 현안문제를 협의 결정함.</li> <li>- 分科委員會 : 共同委 發足 이후에도 南北 基本合意書의 구체적 이행대책중 미합의 사항, 새로이 제기되는 사항, 高位級會談</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5.5~8</p> <p>제 7 차 南北高位 級 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分科委員會 부속합의서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공동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부속합의서 작성이 분과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一括合意, 同時實踐」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야 함.</li> <li>○ 남측은 명백한 본질적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서 정신에 어긋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남 합의서 정신의 하나가 민족자주정신인 만큼 南側은 먼저 철저한 자주적 입장에 서야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對美關係를 재조정 함은 물론 駐韓美軍을 철수시켜야 함.</li> <li>-남측이 상대방의 법질서 존중이라는 명분 밑에 國家保安法을 그대로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정신과 상대방을 존중할 때 대한 합의사항에 충실하게 이를 폐지해야 함.</li> <li>-「窓口一元化」를 정당화하려 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광범한 政治勢力과 인민들에게 통일성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함.</li> </ul> </li> <li>○ 부속합의서는 分野別 單一合意書로 해야하며 내용은 共同委員會 소관에 속하는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시킬 수 없으며, 공동위원회는 構成時限이 있는 만큼 부속합의서도 그 기간내에 끝내야 할 것임.</li> <li>○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작성해야 할 共同宣言 이행을 위한 附屬文件은 사찰규정만이 아니라 共同宣言 전반조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核査察 대상도 駐韓美軍 核武器와 核基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li> <li>○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특별사업으로 8·15 광복절을 계기로 「노부 모방문단과 예술단」교환문제를 赤十字社에 권고·실시하되, 먼저 이인모 송환문제를 해결하고 문익환·임수경 등 訪北拘束者를 석방하여야 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委任事項, 附屬合意書의 수정·보충 등 협의 기능을 계속 수행함.</p> <p>—共同委員會 : 고위급회담 테두리안의 實踐機構로서, 雙方 首席代表의 지도·조정·위임하에 高位級會談의 合意事項을 실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기본합의서 내용의 합의방식과 실천방법은 「件別合意, 即時實踐」의 原則下에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이행·실천해야 할 것임.</li> <li>○ 북측이 8. 15를 계기로 汎民族大會, 全民族政治協商會議 召集등 정치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역행하고 緊張을 造成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함.</li> <li>○ 한반도 비핵화의 관건인 南北相互査察이 6월초순경 실시될 수 있도록 사찰규정 마련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함.</li> <li>○ 8. 15를 전후하여 이산가족·각계인사·取材記者 등(300명)으로 구성하여 慶祝訪問團을 교환할 것을 제의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北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서명·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構成 : 위원장(차관급 이상)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수행원 15명으로하되 조정가능, 필요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li> <li>機能 :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具體的 實踐對策 협의와 필요한 합의서 작성, 실천, 확인, 감독</li> <li>運營 : 분기 1회 개최원칙(필요시 수시), 판문점·서울·평양 등의 장소에서 개최</li> <li>發效 : 공동위원장 서명발효, 중요문건은 공동위원장 서명후 필요 절차 거쳐 발효</li> </ul> </li> <li>○ 「南北交流協力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서명·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共同委 名稱 및 數 :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및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2개</li> <li>構成 : 위원장(장·차관급)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수행원 15명(필요시 조정)</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合意 事項</p> <p>○ 「北南軍事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서명・발효</p> <p>—구성 : 위원장(차관급 이상)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수원 15명으로 하되 조정가능, 필요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p> <p>기능 :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와 필요한 합의서 작성, 실천, 확인, 감독</p> <p>운영 : 분기 1회 개최원칙(필요시 수시), 판문점・평양・서울 등의 장소에서 개최</p> <p>발효 : 공동위원장 서명발효, 중요문건은 공동위원장 서명후 필요 절차 거쳐 발효</p> <p>○ 「北南協力交流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서명・발효</p> <p>—共同委 名稱 및 數 :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 2개</p> <p>구성 : 위원장(장・차관급)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수원 15명(필요시 조정)</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機能 : 부속합의서 이행, 실천을 위한 세부합의서 작성</p> <p>運營 : 회의 분기 1회 개최(필요시 합의에 따라 수시개최), 비공개회의 원칙(합의시 공개), 판문점·서울·평양등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p> <p>發效 : 공동위원장 서명으로 발효, 중요문건은 총리 서명후 필요 절차 거쳐 발효</p> <p>○ 「南北連絡事務所 設置·運營에 관한 合意書」 서명·발효</p> <p>一名稱 : 남측 연락사무소</p> <p>設置場所 : 판문점 共同警備區域內 남측 지역</p> <p>構成 : 소장(국장급) 1명, 부소장 1명, 필요한 수의 연락관</p> <p>必要部署 : 쌍방 합의시 설치</p> <p>機能 : 위임·의뢰되는 연락업무 수행, 합의사항 이행관련한 실무 협의, 왕래·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제공, 連絡事務所 長간 전화가설 운용</p> <p>運營 : 소장회의 수시개최 및 연락</p> <p style="text-align: center;"><b>共同 發表文</b></p> <p>1. 南北 基本合意書  화해분야의 履行機構를 구성·운영</p> <p>① 「南北和解共同委員會」를 구성·운영</p> <p>② 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수의 實務協議會를 설치</p> <p>③ 제 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 작성 및 和解 共同委員會 발족</p> <p>2. 1992. 5. 18 자로 軍事,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交流·協力 등 3개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원 명단 상호통보</p> <p>3. 1992. 5. 18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원 명단 상호통보 및 운영개시</p> <p>4. 「不可侵」, 「交流·協力」 부속합의서 작성시한 합의</p> <p>①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 : 1992. 9. 1까지</p> <p>② 교류·협력 분야 부속합의서 : 1992. 9. 5까지</p> <p>5. 금년 8. 15를 계기로 노부모 100명, 예술인 70명, 기자·지원인원 70명으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평</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기능 : 부속합의서 이행, 실천을 위한 細部合意書 작성                      운영 : 회의 분기 1회 개최(필요시 합의에 따라 수시개최), 非公開會議 원칙(합의시 공개), 판문점·평양·서울등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 회의 공동운영                      발효 : 공동위원장 서명으로 발효, 중요문건은 총리 서명후 필요 절차 거쳐 발효</p> <p>○ 「北南連絡事務所 設置·運營에 관한 合意書」 서명·발효</p> <p>—名稱 : 북측 연락사무소                      設置場所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측지역                      構成 : 소장(국장급) 1명, 부소장 1명, 필요한 수의 연락관                      必要部署 : 쌍방 합의시 설치                      機能 : 위임·의뢰되는 연락업무 수행, 합의사항 이행관련한 실무 협의, 왕래·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제공, 連絡事務所 長간 전화기설 운용                      運營 : 所長會議 수시개최, 연락 접촉</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 發表文</p> <p>1. 北南合意書 「화해」 분야의 이행기구를 구성·운영                      ① 「北南和解共同委員會」를 구성·운영                      ② 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數의 實務協議會 설치                      ③ 제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 작성 및 화해 공동위원회 발족</p> <p>2. 1992. 5. 18자로 軍事, 經濟交流·協力, 社會文化交流·協力등 3개 共同委員會의 구성 및 구성원 명단 상호통보</p> <p>3. 1992. 5. 18 북남연락사무소 구성원 명단 상호 통보 및 운영개시</p> <p>4. 「不可侵」「交流·協力」 부속합의서 작성시한 합의                      ①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 : 1992. 9. 1 까지                      ② 교류·협력 분야 부속합의서 : 1992. 9. 5 까지</p> <p>5. 금년 8. 15를 계기로 노부모 100명, 예술인 70명, 기자·지원인원 70명으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평</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12</p> <p>제4차 南北核統 制共同委員會 會議 (板門店평화의집)</p>	<p>양 동시교환 실시를 적십자단체에 위임</p> <p>6. 각 분과위원회, 核統制共同委員會 차기회의 날짜 합의</p> <p>①제4차 핵통제공동위원회 : 1992. 5. 12</p> <p>②제4차 정치분과위원회 : 1992. 5. 19</p> <p>③제4차 군사분과위원회 : 1992. 5. 25</p> <p>④제4차 교류협력분과위원회 : 1992. 5. 30</p> <p>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 1992. 9. 15~18,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화 檢證에 필요한 文件은 남북 상호사찰규정으로 충분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는 불필요함.</li> <li>○ 핵무기, 핵기지 사찰을 진정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 어느 일방이 사찰대상을 지정할 때 相對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하는 「特別査察」제도가 필요함.</li> <li>○ 우리側 査察規程(안)중 제3조(사찰대상과 목적)와 제7조(정보교환 대상)에 핵무기, 핵폭발 장치, 핵무기발사 및 運搬手段의 존재 여부를 사찰할 수 있다고 명기한 修正案을 提示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2. 5. 12	<p style="text-align: center;">양 동시교환 실시를 적십자단체에 위임</p> <p>6. 各 分科委員會, 核統制共同委員會 차기회의 날짜 합의</p> <p>①제4차 핵통제공동위원회 : 1992. 5. 12</p> <p>②제4차 정치분과위원회 : 1992. 5. 19</p> <p>③제4차 군사분과위원회 : 1992. 5. 25</p> <p>④제4차 교류협력분과위원회 : 1992. 5. 30</p> <p>7. 제8차 北南高位級會談 개최 : 1992. 9. 15~18, 평양</p>		
1992. 5. 12	主要 提議 · 主張 內容		
제 4 차 南北核統 制共同委員會 회의 (板門店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공동선언과 核統制共同委 構成 · 運營合意書를 성실히 이행하 기 위해서는 履行合意書를 반드시 채택해야 함.</li> <li>○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정보교환과 사찰대상의 선정, 사찰절차 · 方法을 핵시설 · 핵물질과 구분하여 명백히 규정해야 함.</li> <li>○ 軍事基地査察 문제는 인위적인 난관조성이며, 「特別査察」문제는 비 핵화공동선언 제4항에 대한 위반이고, 「相互同數査察」은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疑心同時解消 原則」을 세워야 함.</li> <li>○ 履行合意書와 사찰규정을 一括合意 채택한다는 전제하에 사찰규정 에 대한 실무토의를 위한 실무접촉에 들어갈 것을 제의함.</li> </ul>		
1992. 5. 12	「5월 光州聖地巡禮團」 파견 통보		
朝鮮學生委員會 위원장 문경덕 對南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학생위원회와 「光州 全南地域 總學生會聯合」(南總聯)은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5월 광주민중항쟁」추모행사를 함께 하기로 합 의, 추진하여 왔음.</li> <li>○ 이에 따라 조선학생위원회 「5월 광주성지순례단」 500명이 5월 15 일 11 : 00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들어갈 것임 .</li> <li>○ 이와 관련 귀측에서 조선학생위원회 「5월 광주 성지순례단」成員들 의 身邊安全擔保에 필요한 문건을 넘겨주기 바람.</li> </ul>		
1992. 5. 12	皮膚病 發生原因 解明要求		
南北高位級會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차 北南高位級會談을 위하여 서울에 갔던 우리측 성원 13명이</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13</p> <p>南北高位級會談 金勇煥 책임연락 관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皮膚病 檢診 所見書 要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북측인원 일부가 알레르기성 皮膚疾患을 앓고 있다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함.</li> <li>○ 회담기간중 이 사실을 우리측 案內官에게 알렸다고 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없었음.</li> <li>○ 북측에서 환자들에 대한 검진결과와 醫療陣의 所見書를 통보해 준다면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임.</li> </ul>
<p>1992. 5. 13</p> <p>姜英勳 대한적십 자사 총재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5월 光州聖地 巡禮團」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전화통지문으로 제기한 이른바 「5월 광주성지순례단」파견 문제는 當局間에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우리측 政府當局의 입장을 전달함.</li> </ul>
<p>1992. 5. 13</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接觸」參加者名單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 潘基文, 鄭大圭, 李昇九</li> <li>一수행원 : 6명</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북측 책임연락원 최봉준 對南 電通文	알레르기성 皮膚炎에 감염되었음. ○ 이 병의 발생원인은 알레르기성 항원물질이 들어있는 清涼飲料나 飮食物을 섭취한데 있는 것으로 淸증되고 있음. ○ 우리측 성원이 서울에서 알레르기성 皮膚炎에 걸리게 된 原因을 說明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희망함.
1992. 5. 14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	「委員接觸」 參加名單 通報  ○ 위원 : 박광원, 장장천, 김수길 - 수원 : 3명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15</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4차 회 의 제 1차 위원 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접촉」의 운영문제는 제4차 핵통제공동위 회의에서 査察規程과 이행합의서 문제를 順次的으로 토의키로 합의했으므로, 이번 위원접촉은 우선 사찰규정을 토의해야 할 것임.</li> <li>○ 사찰규정은 현재의 핵무기 存在與否와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생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제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1回性에 그치는 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li> <li>○ 핵무기나 핵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찰규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어떤 대상에 한정된 규정은 해당조항에 별도로 규정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章 편성은 불필요함.</li> </ul>
<p>1992. 5. 18</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3個」 共同委 · 連絡事務所 委員名單 通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軍事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宋膺燮 (남북고위급회담 대표)</li> <li>· 부위원장 : 千容宅 (국방부 중장)</li> <li>· 위원 : 朴庸玉 (남북고위급회담 대표)</li> <li style="padding-left: 2em;">金熙相 (대통령비서실 비서관)</li> <li style="padding-left: 2em;">朴雄熙 (통일원 국장)</li> <li style="padding-left: 2em;">任相鎬 (국방부 대령)</li> <li style="padding-left: 2em;">咸春秋 (총리실 심의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經濟交流 · 協力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韓甲洙 (경제기획원 차관)</li> <li>· 부위원장 : 金仁浩 (경제기획원 실장)</li> <li>· 위원 : 朴雲緒 (대통령비서실 비서관)</li> <li style="padding-left: 2em;">李 浩 (통일원 국장)</li> <li style="padding-left: 2em;">李桓均 (재무부 차관보)</li> <li style="padding-left: 2em;">柳得煥 (상공부 차관보)</li> <li style="padding-left: 2em;">崔 燾 (교통부 실장)</li> <li style="padding-left: 2em;">李季哲 (체신부 실장)</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15</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4차회의 제1차 위원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접촉」 운영문제는 제4차 핵통제공동위 회의에서 委員長간에 쌍방의 履行合意書와 査察規程의 일괄채택을 합의했으므로 2건을 병행토의 해야함.</li> <li>○ 사찰규정 명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으로하되, 內容體系는 북남의 객관적 상황에 맞춰 핵무기·핵기지에 관한 사찰규정을 별도의 章으로 편성해야 함.</li> </ul>
<p>1992. 5. 18</p> <p>政務院總理 연형 묵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3個」共同委 · 連絡事務所 委員名單 通報</p>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軍事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인민군 차수)</li> <li>· 부위원장 : 오룡방(조선인민군 상장)</li> <li>· 위원 : 김영철(조선인민군 소장) 박용수(조선인민군 소장) 박성진(조선인민군 소장) 김민현(조선인민군 대좌) 원동연(조평통 서기국 부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北南經濟協力, 交流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li> <li>· 부위원장 : 박종명(무역부 국장)</li> <li>· 위원 : 손종철(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채성(정무원 사무국 부장) 오창식(자원개발부 국장) 류창석(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김춘단(대외경제사업부 부국장) 김명호(채신부 부국장)</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19</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4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金昌洙(총리실 심의관)</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社會文化交流·協力共同委員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林東源(통일원 차관)</li> <li>· 부위원장 : 韓炳三(문화부 중앙박물관장)</li> <li>· 위원 : 金炳浩(총리실 심의관)</li> <li style="padding-left: 2em;">朴相贊(통일원 국장)</li> <li style="padding-left: 2em;">金鎮晟(교육부 장학관)</li> <li style="padding-left: 2em;">曹英承(체육청소년부 실장)</li> <li style="padding-left: 2em;">宋在聖(보건사회부 협력관)</li> <li style="padding-left: 2em;">成樂承(공보처 실장)</li> <li style="padding-left: 2em;">朴秀蒼(총리실 심의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連絡事務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 孫仁教(통일원 부장)</li> <li>· 부소장 : 金泰鶴(총리실 심의관)</li> <li>· 연락관 : 정응채, 문만삼, 김연철, 오세웅, 김삼경, 박성규, 김상엽, 송명호, 정호방, 이영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討議順序와  관련 먼저 南北和解分野 履行對策을 협의·해결하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후, 共同委員會 構成·運營문제의 順으로 진행해야함.</li> <li>○ 북측은 「一括合意, 同時實踐」을 앞세워  합의사항 실천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것은 실천에 옮기는 「件別合意, 即時實踐」원칙을 준수해야 함.</li> <li>○ 북수 부속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제3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5건의 부속합의서를 하나의 章으로 통합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li>○ 부속합의서부터 合意·解決한 후  공동위원회 문제를 協議·解決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19</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4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김령성(조평통 서기국 참사)</p> <p style="text-align: center;"><b>北南社會文化協力, 交流共同委員會</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김철식(사회과학원 제1부원장)</li> <li>· 부위원장 : 허혁필(조평통 서기국 부국장)</li> <li>· 위원 : 홍일천(김형직사범대학 학장, 女)</li> <li style="padding-left: 20px;">김승국(로동청년사 부주필)</li> <li style="padding-left: 20px;">채량일(교육위원회 국장)</li> <li style="padding-left: 20px;">김이순(문화예술부 국장)</li> <li style="padding-left: 20px;">장관학(보건부 국장)</li> <li style="padding-left: 20px;">리영일(평양출판사 부장)</li> <li style="padding-left: 20px;">라봉만(국가체육위원회 부국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北南連絡事務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 : 최봉춘(총리보좌원 겸 북남고위급회담 책임연락원)</li> <li>· 부소장 : 김광수(조평통 서기국 참사)</li> <li>· 연락대표 : 박시남, 리학수, 리춘복, 박철민, 리용철, 문창호, 김하영, 리길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主要 提議 · 主張 內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협의·해결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속합의서의 작성이며 부속합의서의 형식은 包括的인 단일 부속합의서로 하되 내용구성은 北南合意書와 민족단합의 정신에 맞게 되어야 함.</li> <li>○ 남측이 제3차 회의시 제시한 附屬合意書(안)의 일부내용을 수용한 附屬合意書 수정(안)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 법질서 존중(1조 2항) : 신설</li> <li>· 상대방 대외관계 불간섭(2조 2항) : 신설</li> <li>· 객관적 보도는 비방·중상의 대상에서 제외(3조 4항) : 신설</li> <li>· 사실왜곡 및 허위사실 造作·流布 금지(3조 3항) : 추가 보완</li> <li>·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외부세력이나 집단의 행위에 불가담(4조 3항) : 신설</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2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4차회의 제2차 委員接觸 (판문점 증감위 회의실)</p>	<p>構成 : 위원장 1명(차관급 이상),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 機能 : 남북화해 분야 해당부문의 부속합의서를 이행 發效 : 쌍방 총리 署名交換으로 發效, 重要 文件은 쌍방 총리 서 명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p> <p>○ 우선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逐條討議를 進行하여 원칙적 차원에 서 상호 입장의 접근이 이루어진 다음 위원접촉을 통해 文案整理 에 들어갈 것을 제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사찰규정(안)의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제2조 ②항에 서 ⑦항까지 項目 順序대로 再整理한 對比表를 제시함.</p> <p>○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사기지와 민간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에만 義務를 지우는 북측의 査察規程(안)은 부당한 것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19</p> <p>南北高位級會談 북측대변인 안병 수 對南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停戰狀態를 공고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 준수(5조 2항) : 신설</li> <li>·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상호 비방 · 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6조 1항) : 신설</li> <li>· 民族共同利益 도모를 위해 海外代表部가 있는 지역에서 公館長간 협의(6조 4항) : 신설</li> </ul> <p>○ 제7차 본회담에서 쌍방이 「하나의 화해공동위를 내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우선 부속합의서 문제를 集中協議 · 解決해야 할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人共旗 게양 團束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조선 대학생들이 남조선과 美國, 우리 共和國 깃발을 掲揚하고 校內行事를 진행한 것은 오늘의 새로운 정세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숭고한 의지의 발현임.</li> <li>○ 그러나 귀측 당국은 청년학생들의 이 의로운 소행을 오히려 犯罪視하고 탄압하면서, 「북은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의 상대이지만 법차원에서는 반국가단체」라는 등 공화국을 모독하고 있음.</li> <li>○ 이러한 귀측당국의 회담 앞에 난관을 조성하는 언행은 和解와 不可侵을 선언하고, 교류할 것을 약속한 진의를 의심케하는 것으로써 사죄할 것을 요구함.</li> <li>○ 앞으로 귀측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青年學生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1992. 5. 2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4차회의 제2차 위원접촉 (관문집 중감위 회의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사찰규정과 이행합의서는 불가분리의 것이며, 「一括討議와 順次討議」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므로 查察規程 토의진행시 문제가 발생하면 이행합의서로 되돌아가서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 兩文件을 一括 採擇해야 함.</li> <li>○ 남측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同數查察을 재강조한 것은 委員接觸의</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20</p> <p>南北高位級會談 李東馥 대변인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內政干涉」對北 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北修交會談 北側代表와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에서 존재가 확인된 북측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함.</li> <li>○ 核再處理施設의 保有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 3항에 대한 위반이므로,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li> <li>○ 핵사찰규정과 이행합의서를 번갈아가며 토의해야 한다는 北側主張은 비현실적이므로 사찰규정 토의를 완료한 후 이행합의서를 토의할 것을 촉구함.</li> </ul>
<p>1992. 5. 23</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4차회 의 제 3차 위원 접촉 (관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정보가 제공된 핵물질·핵시설」에 대해서는 定期査察,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핵기지와 關聯情報가 제공되지 않은 핵물질·핵시설에 대해서는 特別査察을 실시해야 함.</li> <li>○ 相互主義原則과  관련 사찰횟수 및 기간에 대한 북측 사찰규정(안) 제16조 ①항은 애매하고 막연한 규정이며 연간 사찰횟수 및 사찰 대상의 최대치를 규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찰을 실시하면 相互主義는 충족됨.</li> <li>○ 사찰규정의 체제문제는 쌍방의 의견이 대립되므로 핵통제공동위 구</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23</p> <p>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4차회의 제3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부진에 대한 책임전가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도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우리측 核再處理施設에 대한 해명요구는 도발이며 비방증상이고, 이행합의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조선반도 非核化 共同宣言의 이행의지가 없는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이행합의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核査察의 실천의지가 없는 것이며 내외여론을 오도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임.</li> <li>○ 「一括妥結」은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을 엇바꾸어 토의하고 一括合意하여 동시에 발효시키는 것이며, 「順次討議」란 원래 이행합의서를 토의한 뒤 사찰규정을 토의하는 것임.</li> <li>○ 남측의 사찰규정(안)은 核武器 · 核基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조건에서 독립된 사찰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半製品이며 「相互主義</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25</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4차 회의 (板門店평화회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성·운영합의서 제2조에 규정된 사찰규정 關聯條項의 순서에 따라 討議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제시한 2개의 부속합의서를 하나로 묶은 「남북 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偶發的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li>-제1장(총칙) 제1조~제3조 : 不可侵관련 用語定義, 정의된 용어의 준수 규정</li> <li>-제2장(우발적 무력충돌의 방지) 제4조~제5조 : 우발적 무력충돌의 사전 예방조치 규정</li> <li>-제3장(우발적 침범시 무력충돌 방지) 제6조~8조 : 우발적 침범 발생시 무력충돌이 발생·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措置 規定</li> <li>-제4장(긴급 및 사후조치) 제9조~제11조 : 우발적 무력충돌발생시 이의 확대방지 및 平和的 解決을 위해 긴급히 조치할 공동위기관리 사항과 事後措置事項 규정</li> <li>-제5장(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제19조 : 남북기본합의서 제13조에 따른 원칙합의가 이루어진 事項으로 그 설치·운영에 관한 細部事項을 제시</li> <li>-제6장(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사항) 제20조 : 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와 관련, 不可侵의 履行·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문제들에 대해 군사분과위가 계속 협의·해결할 것을 명시</li> <li>-제7장(修正 및 發效) 제21조~제22조 :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署名 후 發효절차를 거쳐 文本을 교환한 날부터 效力 發生</li> <li>○ 5. 22 북측 무장병력이 침투하여 敵對行爲를 한 사건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는 물론 軍事停戰委를 통한 철저한 真相糾明을 해야 할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25</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第4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同數査察」은 언어도단임.</p> <p>○ 「特別査察」문제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제4조를 완전히 뒤엎은 것이며 사찰대상의 갯수 등은 현실을 무시한 순리에 맞지 않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부속합의서 작성형식은 북남합의서 「第2章 北南不可侵」의 모든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담아 單一하게 만들되 內容은 불가침 이행 · 준수수를 위해 명백히 규정해야 하며 앞으로 共同委가 작성하게 될 施行細則이나 세부합의서와도 구별되어야 함.</p> <p>○ 우리측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p> <p>一 제 1 조</p> <p>· 「상대측 지역으로 드나드는 제3국의 인원, 선박, 함선, 비행기를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금지」 ⑤항에 삽입</p> <p>一 제 2 조</p> <p>· 「自然災害나 航路迷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할구역 침범시 상대측에 긴급확인 후 歸還措置」조항 신설</p> <p>· 「쌍방 합의 위반시 조사진행 및 재발방지 대책강구」조항 신설</p> <p>一 제 5 조</p> <p>· 「直通電話設置 · 運營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합의서 발효 후 쌍방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 해결」 조항 신설</p> <p>○ 「5. 22 무장병력침투사건」과 관련, 우리의 武裝勢力이 黨의 통일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리가 없으며 이는 軍事分科委 會談外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27</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5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규정 체계는 북측이 주장하는 「핵물질·핵시설」사찰과 「핵무기·핵기지」사찰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정보가 제공된 핵물질·핵시설에 대한 「定期査察」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핵물질·핵시설, 핵무기·핵기지에 대한 「特別査察」로 구분해야 함.</li> <li>○ 어느 한쪽의 특정대상만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식의 독단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성에 입각하여 年間査察 횟수 및 장소의 최대치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사찰을 실시해야만 非核化 體系가 충실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임.</li> <li>○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늦어도 5월말까지 사찰규정을 마련키로 쌍방이 다짐했으므로 사찰규정의 구성체계를 비롯한 기본문제를 충분히 토의·해결해야 함.</li> <li>○ 사찰규정을 우선 토의하여 가서명한 후 이행합의서에 해당하는 문건을 제시하겠음.</li> </ul>
<p>1992. 5. 30</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4차 회의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에 대한 「當局承認」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교류·협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의 자금동원능력, 관련사업의 경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適正事業者를 선정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책임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이 기본 취지임.</li> <li>○ 북측이 「法的 制度的 裝置 撤廢」를 주장하나, 남과 북이 각기 상대방의 체제 및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것</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5. 27</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5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履行合意書」 초안도 내놓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합의서 토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li> <li>○ 「相互主義原則」은 사찰규정 토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며, 「特別査察과 軍事基地 査察」은 그 어떤 군사적인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임.</li> <li>○ 사찰규정 체계와 관련 「핵무기·핵기지」와 「핵물질·핵시설」은 그 형태, 성격, 이용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독립된 章으로 편성해야 함.</li> </ul>
<p>1992. 5. 28</p> <p>北韓赤十字會 위 원장대리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老父母訪問團交換 관련 赤十字 實務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7차 北南高位級會談에서 쌍방은 8·15를 계기로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동시 교환기로 합의하고 적십자단체들이 이를 맡아 하도록 하였음.</li> <li>○ 이에 따라 쌍방 赤十字 實務接觸을 6. 6, 10:00 판문점 중감위회 의실에서 가질것을 제의함.</li> </ul>
<p>1992. 5. 30</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4차 회의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經濟去來 當事者를 當局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제하는 것은 북남합의서 정신에 背馳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經濟協力, 交流가 다른 目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며 당국의 支援保障問題와는 별개의 문제임.</li> <li>○ 군사분계선에 있는 콘크리트장벽 등 군사적 구조물과 폭발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나 기차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1</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이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로 개설을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연계시키는 것은 교통로 개설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임.</li> <li>○ 제4차 「위원접촉」시의 부속합의서(안) 일부를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通行·通信」의 이행을 경제와 사회문화 공동위에서 나누어 하되 부속합의서에는 「通行·通信」을 별도의 章으로 편성</li> <li>- 경제상담소, 자료교환실 설치는 공동위에서 구체적 명칭과 구성, 설치 시기를 협의하도록 意見接近을 보았으므로 이를 부속합의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經濟相談所 : 경제교류와 협력촉진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제13조)</li> <li>· 資料交換室 : 자료교환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제13조)</li> </ul> </li> </ul> </li> <li>○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과 관련,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전원이 가족·친척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과 藝術人·支援人員·記者중에 포함된 이산가족들에게도 혈액상봉의 편의와 기회를 提供해줄 것을 제의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相互核査察 實現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안에 韓半島의 非核化를 檢證하는데 필요한 文件을 채택하고 그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5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 본회의와 3차례의 위원접촉을 개최하여 査察規程을 채택하기 위한 論議를 진행하여 왔음.</li> <li>○ 그러나 귀측은 한반도 核問題의 현실을 歪曲하고 스스로 철회하였던 非核地帶論을 다시 주장하면서 사찰규정의 논의조차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非核化 共同宣言」의 기본정신을 위반하면서 상호사찰의 기본요소인 특별사찰제도와 상호주의 원칙을 거부</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1</p> <p>北韓赤十字會 대변인 성명</p>	<p>○ 民族構成員들의 自由로운 往來·接觸問題 해결은 협력, 교류분과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法的·制度的 裝置撤廢」문제를 부속합의서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함.</p> <p>○ 우리측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p> <p>-제 1조 ⑤항의 「물자교류는 제품 對 제품, 원료 對 원료를 有無 相通의 원칙에서 실현한다」를 「物資交流는 호상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로 수정</p> <p>-제 1조 ⑩항 경제협력 당사자를 「경우에 따라 個人」 추가</p> <p>-제 3조 ④항 우편물 및 전화교환실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는 주체를 「共同委員會가 지정하는 쌍방 당사자들」에서 「共同委員會」로 수정</p> <p>-제 6조 「북과 남은 經濟分野의 交流와 協力을 지원 보장한다」는 조항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李仁模」노인 送還要求</p> <p>○ 이인모에 대한 갖은 박해와 억류는 人道主義에 배치되는 행위로 이를 준렬히 규탄함.</p> <p>○ 남조선 적십자사와 당국은 병고에 시달리는 이인모를 북한으로 무조건 송환할 것을 요구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1</p> <p>姜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 對北電通文</p>	<p>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측이 5월말까지 사찰규정 마련을 위해 쌍방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귀측은 상호 사찰이 실시되어야 할 시점인 6월 16일야 次期會議를 개최하고자 주장함으로써 제6차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였음.</li> <li>○ 귀측에 대한 핵무기개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핵사찰과는 별도로 南北相互査察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임.</li> <li>○ 南北相互査察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實質的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認識하고 지금이라도 성실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해 올 것을 촉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實務代表接觸 日字 修正提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 적십자에서 實務代表接觸 일자로 제의한 6월 6일은 현충일인 관계로 동 접촉을 6. 5에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함.</li> </ul>
<p>1992. 6. 2</p> <p>南北高位級會談 대변인 對北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b>南北 相互査察 實施 促求</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하루속히 사찰규정 마련에 호응하고 核武器開發 疑惑을 해소해야 함.</li> <li>○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없이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對內外 問題解決도 쉽지 않을 것임.</li> <li>○ 북한은 DMZ 무장병력침투 관련 군정위 회의에 응할 것과 쌍방 당국간 협의가 없는 「제3차 汎民族大會」추진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3 最高人民會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차 平壤女性討論會 9월개최 동의</p> <p>○ 귀측과 일본측이 토론회 날짜를 9월초로 연기하자고 제기해 온 데</p>

■ 1992年 6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부의장 여연구 對南電通文</p> <p>1992. 6. 4</p> <p>政務院總理 연형 복 對南電通文</p>	<p>동의하며, 討論議題를 「민족 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조선 침략과 지배, 전후 보상문제」 「평화 창조와 여성의 역할」로 하자는데 다른 의견이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討論會 준비와 관련하여 남은 일은 토론회의 날짜 확정과 대표단 인원수,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겠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적당한 시기에 北南 女性代表들이 판문점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 제 6차 회의 개최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은 사찰규정에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獨立項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합의사항에도 없는 특별사찰과 同數査察, 軍事基地査察까지 들고나와 問題妥結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음.</li> <li>○ 귀측이 최근 미국·일본까지 끌어들여 핵소동을 일으키며 T/S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하는가하면 北南對話도 재점검하겠다고 하며, 민간급에서 하는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 결성사업도 시비해 나서는데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li> <li>○ 귀측은 우리와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를 악화시켜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방법으로 남조선 내부의 불안한 사태를 수습하려 하거나 앞으로 選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보려는 불순한 전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함.</li> <li>○ 귀측이 核統制共同委 회의가 결렬되었다고 헛소문을 퍼고 북남합의서의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공언하는 조건에서 8·15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의 전도가 흐리게 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음.</li> <li>○ 귀측은 부속합의서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들에 진정 和解와 協力, 統一을 위한 성실한 입장과 자세로 임해야 하며 6. 16 핵통제공동위 제 6차 회의 개최제의에 응해 나와야 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5</p> <p>南北赤十字 제1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부모 방문단중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전에 방문 희망자 명단을 訪問團 規模의 2배수인 200명으로 하여 100명을 더 찾아주도록 함.</li> <li>○ 예술단, 기자, 지원인원 중에서도 이산가족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함.</li> <li>○相逢은 合同相逢이나 個別相逢뿐만 아니라 합숙, 동행 등을 할 수 있도록하며, 서울·평양의 인근 지역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家庭訪問이나 성묘도 할 수 있도록 함.</li> <li>○ 우리측의 「남북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ul> <p>—名稱 : 남북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規模 : 인솔책임자 1명, 노부모 방문단 100명, 예술단 70명, 취재 기자 30명, 지원인원 40명등 총 241명          構成 : 노부모방문단은 50세 이상의 가족을 중심으로 선발 구성          交換方法 : 同時交換 訪問          交換時期 : 1992. 8. 18~8. 21(3박 4일)          訪問地 : 서울, 평양</p> <p>—離散家族相逢範圍 :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가족우선, 친척의 경우 傍系 8촌, 外家 4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밖의 친척 포함</p> <p>—公演 : 노래와 춤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刺戟하지 않는 내용으로 2회공연(1회공연 120분정도)하되 TV, 라디오 실황중계</p> <p>—取材活動 보장 및 취재에 필요한 제반 편의제공</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5</p> <p>南北赤十字 제1차 실무대표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부모방문단중 기자단 40명, 지원인원은 30여명으로 하며, 이산가족의 명단교환은 1차에 100명으로 하되 찾을 수 없는 경우 추가로 30명의 명단을 통보토록 함.</li> <li>○ 방문대상자 중에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제외하며, 명단통보 양식에는 갈라지기 직전의 직장 및 직위를 밝히도록 함.</li> <li>○ 예술단 공연문제는 공연 프로그램을 알리는 포스터를 시내에 붙이고 관람자에게도 배포하도록 함.</li> <li>○ 우리측의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과 관련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함.</li> </ul> <p>— 訪問團 名稱 :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規模 : 노부모방문단 100명, 예술단 70명, 기자 40명, 보장성원 30명등 총 240명(단장 : 적십자단체 부책임자급 1명 포함)          構成 : 노부모방문단은 50세이상의 北과 南에 故鄉을 둔 사람          交換方法 : 同時交換 訪問          交換時期 : 1992. 8. 25~28(3박 4일)          訪問地 : 평양, 서울          離散家族 相逢範圍 :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 친척의 경우 傍系 8촌, 처·외척 4촌, 그밖에 본인이 요구하는 친척          公演回數 : 4회          公演內容 : 노래와 춤으로 하되 공연내용은 민족적이고 건전하며 상대측을 비방·중상하지 않는 것          公演時間 : 1시간 30분~2시간          取材活動 : 비방·중상을 금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취재</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9</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5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회의시 제시한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기본입장을 제시함.</li> <li>- 기본합의서 전문의 「特殊關係」는 국제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관계 이면서, 또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는 국제연합 회원국간에 형성되는 2중의 관계</li> <li>- 쌍방의 법률 실태조사 및 문제점 협의를 위해 화해공동위원회 안에 「法律實務協議會」를 設置 · 運營</li> <li>- 화해공동위원회 안에 「誹謗 · 中傷中止實務協議會」를 구성 · 운영</li> <li>- 제4장에서 「반드시 금지해야 할 破壞 · 顛覆行爲」의 기본적 유형을 구체화하여 자기측, 상대측, 제3국을 막론하고 파괴 · 전복하기 위한 단체의 조직 · 결성 · 지원 · 조장 등을 금지</li> <li>- 군사정전협정의 대체방안을 강구하되 현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까지 군사정전협정을 준수</li> <li>- 국제무대에서 상호 誹謗 · 中傷中止, 남북의 해외공관간 협의창구 개설,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활동에서의 協力方案, 해외동포의 권익보호 등을 규정</li> <li>○ 제4차 회의시 북측이 提示한 부속합의서(수정안)은 구체적 履行對策이 아니라 기본합의서를 세부화 한 것에 불과하며, 기본합의서 協商過程에서 제외키로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前提條件의 설정과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한 부분도 있음.</li> <li>○ 비무장지대 북측 무장병력 침투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軍事停戰委員會 會議 소집에 호응해 나와야 함.</li> </ul>
<p>1992. 6. 12</p> <p>南北赤十字 제2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은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特定人의 送還問題 등 會談外的인 문제를 거론치 말아야 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9</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5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부속합의서 안은 「特殊關係」를 2중적 관계로 규정하는 등 현상고착과 분열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를 反國家團體로 규정한 國家保安法등 회해에 저촉되는 법을 존속시키겠다는 의도를 노정하고 있음.</li> <li>○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에서 남측은 「當事者 解決原則」을 들고나와 미군의 계속주둔을 기도하는 등 외세의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li> <li>○ 남측은 「核問題가 풀리지 않으면 北南關係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공언하며 「누구에 대한 제재니,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니 하고 소동을 벌임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國際核査察 결과를 회색시키고, 우리의 對美·日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어 불안한 국내 정세를 수습해 보려하고 있음.</li> <li>○ 남측이 北南和解·協力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는것은 모처럼 마련된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위협에 빠뜨릴 우려가 있을 것임.</li> </ul>
<p>1992. 6. 12</p> <p>南北赤十字 제2차 실무대표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당국이 핵문제를 가지고 벌이고 있는 대결소동에 대해 貴적십자사가 응당한 주의를 돌려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그이후의 사태는 계속 악화되어 방문단 교환사업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음.</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솔책임자 : 적십자 부총재</li> <li>○ 방문기간 : 1992. 8. 25~28(3박 4일)</li> <li>○ 공연내용 :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프로그램은 방문 5일전 교환</li> <li>- 公演實況은 TV, 라디오로 中繼</li> </ul> </li> </ul>
<p>1992. 6. 13</p> <p>鄭元植 국무총리 유엔 環境開發會 議 연설 (브라질)</p>	<p>DMZ 生態系 南北共同調查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의 분단으로 지난 40여년간 人跡이 끊긴 길이 258km, 폭 4km의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溫帶性 生物相이 자연 그대로 유지돼 있는 지구상 유례가 없는 지역임.</li> <li>○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이 지역의 生態系調查를 實施할 것을 提議함.</li> </ul>
<p>1992. 6. 17</p> <p>한글 표기관련 제5차 南北會議 (프랑스 파리)</p>	<p>한글 로마자 表記 單一案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子音은 北側案, 母音은 南側案을 각기 受容한 折衷案인 「한글로마자 표기안」에 합의하고 이를 國際標準化機構(ISO)에  단일안으로 公式 提出함.</li> </ul>
<p>1992. 6. 19</p> <p>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5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北側은 武裝兵力 侵透 挑發事件의 진상규명을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속한 개최 제의에 호응해 나와야 하며, 國際原子力機構의 북측 핵시설 사찰 결과에 따른 內外疑惑을 해소시키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임.</li> <li>○ 부속합의서는 불가침 이행 · 준수를 위한 별도의 附隨的인 規定이나 우선적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남북의 軍事的 現實狀況</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 이인모송환문제는 쌍방 적십자단체가 우선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人道主義 問題로서 노부모방문단 교환에 앞서 이인모를 언제 어떻게 송환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引率責任者 : 적십자 부위원장급            ○ 訪問期間 : 1992. 8. 25~28(3박 4일)            ○ 公演內容 :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 내용              - 公演 프로그램은 방문 5일전에 교환              - 公演實況은 TV, 라디오로 중계</p>
1992. 6. 17	조선어 로마자표기 單一案 合意
朝鮮語表記 관련 제5차 南北會議 (프랑스 파리)	<p>○ 子音은 北側案, 母音은 南側案을 각기 수용한 折衷案인 「조선어 로마자 표기안」에 합의하고 이를 國際標準化機構(IOS)에 단일안으로 公式 提出함.</p>
1992. 6. 19	主要 提議 · 主張 內容
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5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	<p>○ 남측이 제4차 회의시 제시한 附屬合意書 修正案은 포괄적인 부속합의서(안)이라고 하나, 내용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문제점이 많음.</p> <p>- 불가침 이행에 관한 본질적 대책은 회피한채 불필요한 用語定義와 우발적 武力衝突防止에 관련한 대책들만 나열하였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20</p> <p>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孔魯明위원장 對北電通文</p>	<p>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쌍방이 공평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이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회의를 제시한 北側 附屬合意書 修正案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본합의서 每條項을 反復記述, 細項만 添加함으로써 오히려 기본합의서의 適用範圍를 구속하고 있음.</li> <li>○ 우리측 부속합의서 안은 條文別로 不可侵 精神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총 7개장 22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不可侵 관련 諸般 措置事項들의 협의·추진에 필요한 공통된 인식을 갖기 위해 用語의 정의를 제1장 제1조에 하였음.</li> <li>-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 및 侵略行爲를 억제하는 國際的 保障장치의 중요성을 전제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강조하기 위해 관련 국제법과 국제협약과의 관계를 제1장 제3조에 設定하였음.</li> <li>- 우발적 무력충돌의 예방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南北軍事直通電話 설치·운영(제5장)조항을 설정하고 부속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음.</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 제6차 회의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그동안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相互査察規程을 채택하지 못하고 時限을 넘긴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li> <li>○ 우리측은 지난 6월 1일 國務總理 명의를 電話通知文을 통해 남북 상호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南北關係의 實質的 進展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오도록 촉구한 바 있음.</li> <li>○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6. 30, 10:0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6차 회의를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不可侵의 이행대책을 민족주체성의 견지에서 세워 나가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p> <p>-構成體系와 내용체계가 복잡하고 산만함.</p> <p>○ 남측 부속합의서의 문제점들이 단순한 실무기술적 착오가 아니라 미국에 추종하여 불가침 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무엇을 얻으려는 불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있음.</p> <p>○ 우리측 부속합의서에 「章」제목을 달고 조항별 배열을 조정한 修正案을 제시함.</p> <p>- 제 1장(무력 불사용) : 제 1조~제 6조          제 2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 제 7조~제11조          제 3장(불가침 경계선) : 제12조~제15조          제 4장(북남군사공동위원회) : 제16조          제 5장(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 제17조~제20조          제 6장(수정 및 발효) : 제21조~제22조</p> <p>○ 남측은 제2의 핵소동을 벌여놓고 핵문제를 北南關係 改善의 전제조건화 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장단에 발 맞추며 北南關係 發展을 원점으로 돌려 세우려 하고 있음.</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22</p> <p>南北赤十字 제3차 實務代表接觸 (관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 2차 접촉시 토의사항과 쌍방이 합의한 노부모방문단 교환시기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li> <li>○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하자는 것이며 實務接觸과 무관한 문제로 장애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절차문제 토의등 기본임무에 충실하여야 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22</p> <p>南北赤十字 제3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 民自黨의 6월 2일 黨政會議에서와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변인 이 核査察問題가 해결되지 않는한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제외한 모든 합의사항을 유보하겠다고 한 것은 가장 노골적인 도전행위임.</li> <li>○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쌍방적십자의 發起가 아니라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사항중 하나인데, 다른 모든 사항을 留保하면서, 노부모방문단 교환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남측이 방문단 교환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임.</li> <li>○ 노부모방문단교환 실무절차문제의 논의에 앞서 핵문제와 북남간 合意書 이행문제를 결부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남측당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의 해결없이 실무문제만을 협의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우롱하는 것임.</li> <li>○ 이에 대한 남측당국의 명백한 입장표명이 없는한 차기 實務代表接觸은 무의미하며, 남측당국의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전제로 북남연락사무소를 통해 차기접촉 일자를 통보하기 바람.</li> </ul>
<p>1992. 6. 22</p> <p>政務院總理 연형 묵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乙巳·丁未條約」 僞造 共同對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乙巳 5條約, 丁未 7條約」이 법적효력이 없는 僞造文書임이 자료적으로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북과 남의 당국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겨레와 역사앞에 지닌 공동책무임.</li> <li>○ 우리는 이 문제를 北南高位級會談 協力·交流分科委員會에서 긴급 의제로 토의하고 共同決議文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li> <li>○ 共同 決議文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과 南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과거 日帝가 非法적으로 朝鮮을 침략하고 식민지 통치를 강요한데 대한 공식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는 문제와</li> <li>- 現 日本政府가 「을사 5조약, 정미 7조약」의 非法性을 인정하고 무효화하는 公式宣稱을 발표할 것과</li> <li>- 일제의 朝鮮에 대한 불법강점과 관련되는 위조된 역사기록들과 모든 불법문서들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適當한 조치를 취할 것</li> </ul> </li> </ul>

■ 1992年 6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23</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차 核統制共同委 會議開催 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은 핵통제공동위 사업에서 인위적인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하며 성실한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대하여야 할 것임.</li> <li>○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6월 30일에 가지는 것이 늦은 감이 있으나 그날 회의장에 나갈 것임.</li> </ul>
<p>1992. 6. 24</p> <p>조선역사학회장 전영률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歷史學者會談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자들과 서울대학 역사학자들에 의하여 日帝가 강제 체결한 「乙巳 5條約」등의 조약들이 허위 날조임이 밝혀졌음.</li> <li>○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대외관계에서 공동노력할데 대한 北南合意書가 채택·발효된 오늘, 우리 역사가들이 일제가 강요한 조약들의 非法性을 밝혀내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선결과제임.</li> <li>○ 이러한 입장에서 과거 일제의 침략죄행을 공동으로 재확인하며,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를 가지고 「北南 歷史學者會談」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li>○ 이를 위해 7월 중순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北南歷史學者會談 개최일자·장소·참가인원·토의안건 등 實務的문제들을 협의했으면 함.</li> </ul>
<p>1992. 6. 24</p> <p>軍縮平和研究所 고문 이삼로,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6개국 회의」 연설 (하와이)</p>	<p style="text-align: center;">駐韓美軍의 단계적 철수 容認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의 통일과 北南對話를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한국 일변도의 정책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며, 北南對話가 진전되지 않으면 朝美關係, 朝日關係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은 韓·美·日 3국의 對北壓力을 일방적으로 강화시킬뿐 북남대화와 통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임.</li> <li>○ 통일전 북과남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통일후에도 존중되어야하며,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철수도 가능한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25</p> <p>鄭元植 국무총리 對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歷史學者 學術會議 개최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乙巳·丁未條約」등 舊韓末에 맺은 모든 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입장이며, 이와 같은 입장은 1965년 韓日基本條約 체결을 통해 일본측에 명백히 하였으며 일본의 過去史 清算에 일부 미진한 면은 兩者間 그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 있음.</li> <li>○ 남과 북이 과거 어두웠던 일들을 南北基本合意書 履行·遵守 차원에서 함께 調査·研究하는 것은 민족동질성을 회복, 일체감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임.</li> <li>○ 이러한 견지에서 乙巳·丁未條約의 날조사실규명과 抗日義兵活動, 獨立運動 등 우리근대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료를 발굴, 교환하고, 이를 공동 조사·연구하기 위해 南北歷史學者間 學術會議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임.</li> <li>○ 쌍방 당국은 앞으로 발족될 社會文化交流·協力共同委員會가 남북 학술교류 차원에서 그러한 일을 주선, 지원할 수 있도록 交流·協力에 관한 부속합의서 작성을 서둘러야 할 것임.</li> </ul>
<p>1992. 6. 26</p> <p>南北交流協力分</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經濟交流·協力 當事者에 대한 「當局承認」문제는 남북교류·협력</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6. 26 外交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美 核武器 · 核基地 全面查察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앞으로 IAEA의 사찰을 성근히 받을 것이며, 누가 우리에게 핵시설의 의심을 가진다면 언제든지 기구를 통해 우리의 平和的 核政策의 진실성을 보여줄 것임.</li> <li>○ 우리나라의 핵 위협은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의 핵무기로부터 오고 있으며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북남사찰을 통해 美 核武器 · 核基地에 대한 전면사찰이 진행되어야 함.</li> <li>○ 남조선 당국은 이미 합의된 대로 非核化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 초안을 빨리 제시하고 核武器 · 核基地에 대한 전면사찰을 실현할 수 있도록 北南查察規程을 채택하는데 응해야 함.</li> </ul>
<p>1992. 6. 26 南北交流協力分</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의 黨政會議와 李東馥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변인의 언동은 북</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科委員會 제5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	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상호간에 合意·運營해야 할 제도적 장치이며, 「法的·制度的 裝置撤廢」문제는 남북화해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할 문제임. ○ 남북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행·준수되어야 하며, 현단계에서 쌍방이 중점적으로 할일은 附屬合意書 작성과 南北相互査察의 실시임. ○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핵문제 진전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진하게 될것이나, 이 산가족방문단 교환은 핵문제 등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무조건 추진해야 함. ○ 日帝의 乙巳·丁未條約은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南北共同對處는 불필요하나 다만 새로 발굴된 자료교환과 관계학자들의 공동조사·연구를 위해 학술회의를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사회문화공동위가 이를 주선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작성을 7월중에 끝내어 共同委員會가 속히 가동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1992. 6. 29	南北赤十字 제4차 實務代表接觸 日字 제의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이병웅 수석대표, 對北 電通文	○ 南北赤十字 제2차 實務代表 接觸에서 쌍방은 남북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8월 25일부터 8월 28일 사이 교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訪問團交換에 따른 원만한 준비를 위해 오는 7월 15일경까지는 합의서가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적십자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7월 3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
1992. 6. 30	主要 提議·主張 內容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6차 회의	○ IAEA의 제1차 임시사찰을 통해 플루토늄 추출, 핵재처리시설 건설 등 北側의 核武器 開發計劃 推進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세계의 疑惑은 더욱 증폭되었음.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科委員會 제5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	남교류를 차단하고 협력, 교류분과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서, 이는 남측이 북남합의서의 전반적 이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임. ○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남측이 북남 합의서 이행을 차단시켜 北南關係가 악화되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며, 정략적 목적으로 방문단교환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중히 대하지 않을 수 없음. ○ 일본이 왜곡 날조한 죄악에 찬 조선침략사에 공동대처하는 문제를 緊急議題로 토의할 것을 제의하며 만약 이 문제해결을 회피, 경원시하면 민족사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될것임.
1992. 6. 30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6차 회의	主要 提議 · 主張 內容  ○ 우리측은 IAEA 사찰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南側地域의 미국 핵무기·핵기지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核心的 問題이며, 北南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板門店평화의집)	<p>査察의 기본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남합의서 이행에 계속 인위적 제동을 걸어 北南關係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간다면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도 유산될 수 있을 것임.</li> <li>○ 남측은 비핵화 공동선언 履行合意書 초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하며,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 토의순서는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할 것을 제의함.</li> <li>○ 사찰규정 구성체계는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2항부터 7항까지 每個 項을 독립「章」으로 하여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li> <li>○ 우리측이 제3차 핵통제공동위 회의시 제시한 사찰규정(초안)을 이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修正案을 제시함.</li> </ul>
1992. 6. 30	汎民族大會 참가관련 實務接觸 제의
「汎民聯」 북측본부 의장 윤기복 對南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5를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汎民族大會와 제2차 青年學生統一大祝典에 우리측에서 많은 대표들이 참가하게 될것임.</li> <li>○ 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의 판문점 통과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7. 3,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 우리측 실무일군을 내보내니 귀측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바람.</li> </ul>
1992. 7. 2	第 4 次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修正提議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북측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의 6. 29일부 실무대표접촉 재개제외는 핵문제를 가지고 북남관계의 진전을 차단시키려던 귀당국의 그릇된 입장에 대한 전향적</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2</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6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의 부속합의서 안 제2장에 함께 포함되었던 「체제인정 ·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을 별도의 章으로 분리하고 「이행기구」를 독립「章」으로 신설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 안을 토대로 축조토의에 들어갈 것을 제의함.</li> <li>* 제8장(이행기구)에 「법률실무협의회」, 「지방 · 중상중지실무협의회」의 구성을 명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題目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li> <li>- 前文 :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li> <li>- 第2章 題目 : 체제(제도) 인정 존중</li> </ul> </li> </ul>
<p>1992. 7. 6</p> <p>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이병웅 수석대표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開催日字 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측 대표단은 7월 8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 나갈 것임을 알림.</li> </ul>
<p>1992. 7. 7</p> <p>鄭元植 국무총리</p>	<p style="text-align: center;">離散家族 歸還 · 定着事業推進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장 박영수 對南 電通文</p> <p>1992. 7. 2</p> <p>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6차 會議 (판문점 통일각)</p>	<p>인 태도표시로 이해함.</p> <p>○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위해 일단 7. 8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나갈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제8차 고위급회담 개최 이전에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 화해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문제,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음.</p> <p>○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상호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합의서 이행을 유보하려는 입장을 계속 취하겠는지 철회하겠는지, 자주적 입장에서 합의사항들을 협의·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명백한 태도표명을 요구함.</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부속합의서</p> <p>－ 題目 :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p> <p>－ 前文 : 북과 남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 第2章 제목 : 제도(체제) 인정 존중</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對北 書翰	<p>해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봉·왕래를 허용하는 필요한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 이산가족중 희망자에 대하여 부양자나 배우자가 있는 쪽에 귀환·정착토록 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실천에 옮길 것을 제의함.</li> <li>○ 타의에 의해 상대측 지역에서 발이 묶여있는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 그리고 이들 본인의 희망에 따른 귀환·정착사업도 함께 전개할 것을 아울러 제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 당시 납북인사</li> <li>- 1955. 5~1987. 10 납북 미귀환 어부</li> <li>- 1969. 12. 11 강릉에서 김포로 운항중 납북된 KAL승무원 등 12명</li> <li>- 1970. 6. 5 연평도 해상에서 어선보호업무 수행중 납치된 해군 함정 승무원 문석영과 장병 19명</li> <li>- 1951년 월남한 장기려 박사 부인과 2남 3녀 및 그들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산가족들</li> </ul> </li> <li>○ 성격은 다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인모문제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음.</li> <li>○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것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통로를 활용하거나 귀측이 원한다면 별도의 접촉도 무방하다고 생각함.</li> </ul>
1992. 7. 8	主要 提議·主張 內容
南北赤十字 제4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은 다른문제와 연계될 수 없으며, 합의된 날짜에 무조건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 15일까지 모든 실무절차문제를 타결해야 할 것임.</li> <li>○ 핵문제는 이미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우리측의 명백한 입장표명이 있었으며, 이 문제가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同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 토의에 들어가야 할 것임.</li> <li>○ 이인모 송환문제는 7. 7 국무총리 서한에서 우리측 입장을 밝혔음에도 북측이 수많은 이산가족문제를 외면한채 同 문제만을 집중거</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8</p> <p>南北赤十字 제4차 實務代表接觸 (관문점 중감위원회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日과 함께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핵소동은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유산시키려는 의사로서 방문단 교환은 의연히 엄중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li> <li>○ 이인모 송환문제는 적십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서 정치적 흥정물이 될 수 없으며, 방문단교환전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이고도 불변의 입장임.</li> <li>○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우리 적십자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전달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10</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委員長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론하는 것은 방문단 교환사업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안) 제4장(비방·중상 중지)중 「적용대상」(제9조)을 삭제하고, 「규제대상」(제13조)과 「예외조항」(제14조)의 순서를 바꾼 부속합의서(안)을 제시함.</li> <li>○ 핵문제가 남북합의서 이행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7.7 대북서한에 대해서는 북측 총리의 공식회신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제2장에서 제9장까지의 章제목(제1장 총칙 제외)</li> <li>○ 제4장(비방·중상 중지) 제10조 :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li> <li>○ 제9장(수정·발효)</li> </ul> <p>第32條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第33條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10</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위원장접촉 (板門店평화의집)</p>	<p>- 남측이 앞으로도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합의서 이행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반복소동을 벌인다면 방문단 실무절차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방문단사업이 유산될 수 있음.</p> <p>- 이인모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방문단 교환전에 송환되어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방문단 사업이 유산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정원식 총리의 7. 7 서한은 합의서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이인모 송환에 걸림돌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모략임.</li> <li>○ 이인모가 송환되지 않을 경우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은 유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이인모의 송환방법, 절차에 대한 답변을 주기바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제2장에서 제9장까지의 章제목(제1장 총칙 제외)</li> <li>○ 제4장(비방·중상 중지) 제10조 : 북과 남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li> <li>○ 제9장(수정·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2조 :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li> <li>제33조 :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li> </ul> </li> </ul>
<p>1992. 7. 13</p> <p>南北高位級會談 북측 대변인 안병수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李仁模」無條件 送還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7·7 남조선 총리는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문제를 제기하고 고령자의 귀환정착문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남으로 갈라진 사람들의 생사확인파 상봉 등을 북남고위급회담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자고 하였으며, 이인모 송환문제도 이러한 사업대상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하였음.</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14</p> <p>南北赤十字 제5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증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접촉을 거듭 할수록 「핵문제」, 「이인모문제」를 걸어 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문제 토의를 노골적으로 회피해 왔으며, 심지어 제4차 접촉에서는 이들 문제가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이라고까지 하였음.</li> <li>○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이미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핵문제 해결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정치분과위 위원장접촉에서 명백히 했으므로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음.</li> <li>○ 「이인모 문제」는 국무총리 서한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더이상 회담 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에 따른 실무문제 토의에 집중해야 할 것임.</li> <li>○ 방문단교환과 관련한 실무절차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남북간 이견사항에 대한 우리측 수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案 중 예술단, 기자, 지원인원중 이산가족이 있을 경우 상봉·추선문제, 노부모방문단의 상봉방법에 있어서 상봉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가정방문과 성묘 허용문제 등은 북측의 거부입장을 고려하여 철회</li> </ul> </li> </ul>
<p>1992. 7. 16</p> <p>南北軍事分科委</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작성과 관련, 쌍방의 입장과 견해차이를 좁히기 위해서</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14</p> <p>南北赤十字 제5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인모 송환문제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북남 사이의 인도적 사업속에 용해시킬수 없는 문제임에도 그 사업대상에 포함 시키자는 것은 이인모송환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임.</li> <li>○ 우리는 남측이 이인모 송환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급히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전반적인 인도주의 문제 해결과 고위급회담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를 기대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 「이인모문제」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이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한 방문단 교환일자가 조정되거나 유산될 기로에 있음.</li> <li>○ 특히 이인모 송환문제는 정치적 흥정물로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방문단 교환 이전에 송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무절차문제가 타결되어도 방문단 교환은 성사될 수 없음.</li> <li>○ 방문단 교환에 따른 실무절차문제에서 남측이 방문단 명단 사전교환시 인원수를 200명으로 하자는 것은 방문단 교환에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책략임.</li> <li>○ 또한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 강도, 절도행위를 저지른자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만약 피해자가 있는 지역에 가해자를 보낼경우 복잡한 후과를 남기고 대결고취에 악용될 수 있을 것임.</li> </ul>
<p>1992. 7. 16</p> <p>南北軍事分科委</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기본합의서 불가침 부문의 조항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員會 제6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분야에 명시된대로 전쟁을 하려는 정치적 의지 포기(제9조, 제12조), 군사력의 규제(제12조),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제거(제9조, 제10조, 제13조) 등 3가지 측면에서 전쟁 예방조치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제5차 회의시 제시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은 기본합의서의 지침에 위배되거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막연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미 합의서에 규정한 것을 또 다시 부속합의서에 규정한 것이 있음.</li> <li>○ 우리측은 부속합의서의 名稱, 前文, 章 題目 등 구성체계와 내용을 새로이 조정한 수정안(6개장 24개조)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li> </ul> <p>&lt;남북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gt; (수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무력 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 제1조~제8조 (기존 제1, 2, 3장)</li> <li>- 제2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 제9조~제11조(기존 제4장)</li> <li>- 제3장(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 제12조~제13조(신설)</li> <li>- 제4장(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 제4조~제21조(기존 제5장)</li> <li>- 제5장(추가적인 불가침 이행·준수사항) : 제22조(기존 제6장)</li> <li>- 제6장(수정 및 발효) : 제23조~제24조(기존 제7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附屬合意書 名稱)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前文)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章 題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장 : 분쟁의 평화적 해결</li> <li>제3장 : 불가침의 경계선 및 구역</li> <li>제4장 :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貝會 제6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일부조항들의 이행대책마련을 외면하고 있으며 포커스렌즈 훈련과 제2의 핵소동을 벌이면서 부속합의서 작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문제, 불가침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유엔헌장이나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협정을 끌어다 붙일 필요가 없음.</li> <li>○ 부속합의서 작성의 원칙적 견해로는 불가침부문의 모든 조항의 이행대책을 담은 포괄적인 단일 합의서로 되어야 하고 불가침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대책들로 일관되어야 하며 합의하기 쉽게 공정하게 만들어야 함.</li> <li>○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된다면 군사분과위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며 정치, 협력·교류분과위에서 성과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合意 事項</b></p> <p>(附屬合意書 名稱) :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p> <p>(前文) : 북과 남은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章 題目)</p> <p>제2장 : 분쟁의 평화적 해결</p> <p>제3장 : 불가침의 경계선 및 구역</p> <p>제4장 :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18</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6차 회의 제1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갑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 수정 및 발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附屬合意書(안)에 대한 조항별 의견을 제시함.</li> <li>- 특수관계(남측안 총칙) : 남북 기본관계를 명백히 하기위해 특수 관계를 다루어야 함.</li> <li>- 관할권 존중(제2장) : 핵심조항으로서 관할권 인정 · 존중없이 체제인정 · 존중될 수 없음.</li> <li>- 상호 체제 인정 · 존중(남측안 제4조) : 우리측은 사상의 다원주의 (복수사상)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유일사상인 여건하에서 상호성이 없음.</li> <li>- 국제적 지위 인정 · 존중(남측안 제5조) : UN의 주권 평등원칙은 남북간 관계에서도 준수되어야 함.</li> <li>- 법률적, 제도적 장치제거 : 쌍방법률, 제도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법률실무협의회에서 다룰 문제임.</li> <li>- 상대방을 소개 찬양하는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가 쌍방 모두 보장되지 않는 여건에서 성립될 수 없음.</li> <li>○ 附屬合意書 수정안을 제시함.</li> <li>- 상대방의 법질서 및 정부의 시책등 불간섭 대상에 정치, 경제, 사회 · 문화체제 추가(제6조)</li> <li>- 해외공공간 협력조항(제24조)을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해 쌍방 공판 사이에 협의를 진행」으로 조정(제25조)</li> <li>- 공동협력사업 추진조항(제28조)을 「비정치적 분야의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출전문제 상호 협의」로 수정(제29조)</li> <li>- UNDP, ESCAP등 국제기구에서 공동협력 사업추진 부분삭제</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18</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6차 회의 제1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 수정 및 발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 법질서 존중의 예외조항(제2조) 삭제</li> <li>- 상대방 체제 불간섭 및 자기의사 강요금지 조항(제15조)을 「상대방 법질서와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로 수정(제4조)</li> <li>- 불간섭의 예외조항(제7조)중 「민족공동의 이익과 나라의 통일, 북남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을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화해정신과 조국통일에 저촉되는 」으로 수정(제6조)</li> </ul> </li> <li>○ 부속합의서 조항별 내용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 : 기본합의서에 언급되어 있어 불필요하며 내용도 분열 지향적인 것임.</li> <li>- 관할권 존중 : 두 개 국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 등의 저의가 있음.</li> <li>- 상호 제도인정 · 존중(북측안 제1조) : 사상은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남측이 북측의 제도를 인정하는 조건에서는 사상도 인정해야 할 것임.</li> <li>- 국제적 지위 인정 · 존중 : 두개의 국가를 상정한 것이므로 삭제해야 함.</li> <li>- 법률적 제도적 장치제거 (북측안 제2조) : 상대방을 부정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상극관계이므로 제거해야 함.</li> <li>- 상대방을 소개 찬양하는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북측안 제3조) :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조치임.</li> </ul> </li> </ul>
<p>1992. 7. 18</p> <p>「聯盟」위원장 한기창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 「全勞協」위원장 등에 便紙傳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병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 김승호 · 문승현 전국노동운동단체 협의회 공동의장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7.2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20</p> <p>姜英勳 大韓赤十字社 총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職盟」 委員長 便紙 接受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18자 전화통지문과 관련,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남북간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전화통지문이나 편지 교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당국의 입장을 알림.</li> </ul>
<p>1992. 7. 20</p> <p>南北赤十字 제6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부모방문단 교환날짜를 거슬러 계산해 볼때 실무절차문제 타결이 더이상 지연되어는 안될 시점이며 오늘 실무절차를 타결짓고 합의서 작성을 끝내야 함.</li> <li>○ 상호이건을 보이는 몇가지 문제는 방문단 교환일정의 촉박성을 감안,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사항과 1985년 고향방문단 교환시 선례를 기준으로 일괄 타결해 나갈 것을 제의함.</li> <li>○ 북측이 「핵문제」, 「이인모문제」등 회담외적 문제들을 철회하지 않아 방문단 교환이 무산된다면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되며 상호 신뢰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li> <li>○ 귀측의 노부모방문단 구성명단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문제」, 「취재원칙 설정문제」, 「공연포스터 시내부착 문제」등의 주장을 철회하고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 선례대로 할 것을 제의함.</li> </ul>
<p>1992. 7. 21</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朴庸玉위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軍事分科委 委員長接觸 形式 · 場所 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23 개최기로 한 同 分과위 委員長 接觸을 「단독접촉」방식으로 할 것을 제의함.</li> <li>○ 이번 접촉 장소는 분과위 회의개최의 관례에 따라 판문점 통일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20</p> <p>南北赤十字 제6차 實務代表接觸 (板門店 중감위원회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당국이 핵사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북남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차단하겠다고 한것은 방문단교환에 임중한 사태를 조성한 것으로써 남측 직십자사가 응당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임.</li> <li>○ 방문단 교환시기에 포커스렌즈 훈련을 하는것은 「방문단 교환만은 실현시키겠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을 하는 곳에 방문단을 내보낼 수 없음.</li> <li>○ 방문단 교환 실무절차문제와 관련하여 방문단 사전 명단교환 인원수를 130명으로 하는 조건에서 방문단 총규모를 241명으로 하고, 예술단 공연회수를 2회, 행낭운용을 1일 2회로 함.</li> <li>○ 「상대측 지역에서 인명피해 · 강도 · 절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자」를 제외하는 문제, 취재원칙 설정문제, 공연포스터 시내부착문제는 좀 더 논의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함.</li> </ul>
<p>1992. 7. 21</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북측위원장 김영철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의 「委員長 單獨接觸」提議에 同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3 북남군사분과위원회 쌍방 위원장 접촉에 수원 3명과 함께 판문점 통일각에 나갈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2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7 차 會議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 사찰규정 채택, 後 이행합의서 토의를 전제로 사찰규정과 별도의 이행합의서 안을 제시함.</li> <li>— 「韓半島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履行을 위한 合意書」(안) 前文 :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li> <li>제1조 : 공동선언 제1항의 이행</li> <li>제2조 : 공동선언 제2항의 이행</li> <li>제3조 : 공동선언 제3항의 이행</li> <li>제4조 : 공동선언 제4항의 이행</li> <li>제5조 : 수정 · 보충</li> <li>제6조 : 발효</li> <li>○ 사찰규정안을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 합의서」 제2조 ②항에서 부터 ⑦항의 순서에 따라 재편성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li> <li>— 「韓半島의 非核化를 檢證하기 위한 相互核査察 規程」(안) 前文</li> <li>제1장(정보교환) : 제1조~제7조</li> <li>제2장(사찰대상의 구성 · 운영) : 제8조~제10조</li> <li>제3장(사찰대상의 선정) : 제11조~제15조</li> <li>제4장(사찰절차와 방법) : 제16조~제19조</li> <li>제5장(시정조치 및 분쟁의 해결) : 제20조~제25조</li> <li>제6장(신변보장 및 편의제공) : 제26조</li> <li>제7장(수정 · 발효) : 제27조~제29조</li> </ul>
<p>1992. 7. 23</p> <p>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6차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불가침의 이행과 상호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며 이의 해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2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7차 회의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의 진척과 긍정적 결과생산을 위한 대책으로 쌍방 합의를 위한 기초문건 초안을 하루 빨리 제시할 것과 비핵화실현의 핵심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바로하고 민족주체성과 자주성의 원칙에 의해 해결할 것을 제의함.</li> <li>○ 남측이 주장하는 「대칭성에 기초한 상호주의원칙」, 「군사기지 사찰」, 「특별사찰」등은 현실성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것임.</li> <li>○ 남측이 「先 사찰규정 채택, 後 이행합의서 토의」를 전제조건화한 것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임.</li> <li>○ 우리측의 핵문제는 IAEA와 해결할 문제이며 북남핵통제공동위와 IAEA는 구별되어야 함.</li> </ul>
<p>1992. 7. 23</p> <p>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6차 회의</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핵문제를 북남합의사항 이행과 관련지어 계속 문제시하고 있으나 그럴수록 노부모방문단 교환 등에 후과를 초래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委員長 接觸 (판문점 통일각)</p>	<p>을 기대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커스렌즈 훈련은 10여년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온 군사훈련으로서 이는 앞으로 불가침 이행시 검토될 수 있는 문제임.</li> <li>○ 군사공동위는 기본합의서 제12조의 이행 보장기구로서 이를 불가침 전반의 포괄적 이행기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합의서 제5조, 12조, 14조에 위배됨.</li> <li>○ 부속합의서 채택 이후에도 쌍방이 협의할 문제가 생기면 추가적인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음.</li> </ul>
<p>1992. 7. 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차 平壤女性討論會 관련 實務接觸 提議</p>
<p>韓國基督教教會 協議會 李愚貞 부회장 對北 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제3차 토론회를 우리측과 일본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토론회 날짜를 9월초로 연기한데 대해 감사함.</li> <li>○ 제3차 토론회 개최와 관련 실무협의를 위해 7. 29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1992. 7. 25</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南北赤十字 제7 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는 북측의 주장대로 IAEA사찰결과 평화적인 핵정책이 입증 된 것이 사실이라면 남북 상호사찰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li> <li>○ 이인모 문제는 이미 우리측 국무총리가 대북서한을 통해 인도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한만큼 북측은 이에 응하면 될 것이며, 포커스렌즈 훈련은 연례적 도상훈련으로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음.</li> <li>○ 노부모방문단 교환관련 실무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의 양해각서와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선례에 따라할 것을 촉구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委員長 接觸 (板門店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함께 포커스렌즈등 군사훈련을 벌여 대화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북남관계는 대결상태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음.</li> <li>○ 북남간에 합의된 불가침이행, 준수문제를 군사공동위 이외의 기구에서 다루자고 하는 것은 합의서 위반임.</li> <li>○ 분과위 구성·운영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행기구문제 논의시 협의가능할 것임.</li> </ul>
1992. 7. 25	主要 提議·主張 內容
南北赤十字 제 7차 實務代表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핵문제 해결이 합의서 이행과 북남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함.</li> <li>○ 이인모 송환문제와 방문단 교환문제는 쌍방 사이에 통일적으로 실현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인모는 반드시 방문단 교환전에 송환되어야 함.</li> <li>○ 포커스렌즈 훈련은 노부모방문단 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노부모방문단 사업을 제 날짜에 교환하기 위해서는 훈련 계획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내외에 공포해야 함.</li> </ul>
1992. 7. 28	第3次 平壤女性討論會 實務接觸 修正提議
「女盟」 상무위원 여연구 對南 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제3차 평양 론회 관련 실무대표접촉 일자를 8월 4일로 수정 제의함.</li> <li>○ 우리측은 려연구를 포함한 3명의 대표가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 나</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28</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6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附屬合意書 내용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교류 · 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문제」는 남북간 경제체제가 다르고 상대측 경제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므로 쌍방 책임있는 당국의 승인, 지원이 필요함.</li> <li>- 「법적 ·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는 상호주의원칙하에 「남북화해 공동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합함.</li> <li>- 「인도적 문제」는 기본합의서 제18조에 따라 쌍방당국이 구체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한 후 적십자 단체가 이행토록 하고, 「교통로 개설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연계문제」는 1,2단계로 나누어 통행로 및 임시교통로를 개설토록 해야 할 것임.</li> </ul> </li> <li>○ 「남북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사업과 같은 인도적 사업에 전제조건을 붙여 정치목적에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북측은 전제조건을 철회, 합의된 날짜에 교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附屬合意書 名稱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li> <li>○ 前文 :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28</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위원장 김정우 對南 電通文</p>	<p>가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交流協力分科委 委員 交替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任 김령성 (조평통 서기국 참사)</li> <li>解任 김이순</li> </ul>
<p>1992. 7. 28</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6차 회의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내용조정문제와 관련하여 남측이 「경제협력, 교류 당사자의 당국승인」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의도임.</li> <li>○ 「교통로 개설과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의 연계」는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이전에 비무장지대등에 정상적인 교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li> <li>○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는 자유왕래문제를 다루는 협력, 교류분과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함.</li> <li>○ 「인도적 문제」를 당국이 주관, 세부적 문제까지 부속합의서에 넣자는 것은 적십자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 됨.</li> <li>○ 부속합의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 교류분과위 사업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측은 핵문제와 관련한 이중적 태도를 철회하고 이인모 송환문제를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노부모방문단 교환시기에는 포커스렌즈 훈련을 중단해야 할 것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附屬合意書 名稱 :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 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li> <li>○ 前文 :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 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30</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6차 회의 제2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의 章題目 : 경제교류 · 협력</li> <li>○ 제2장의 章題目 : 사회문화 교류 · 협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附屬合意書 제3장 「내부문제 불간섭」중에서 북측이 예외조항(제6조)을 두려는 것은 화해정신, 조국통일등 기준이 애매하며 해당조항 전체가 무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외세의 내정간섭에 불가담」조항(제7조)은 제17조, 27조와 중복됨.</li> <li>○ 同 제4장 「비방 · 중상중지」관련 상호체제의 차이와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비방 · 중상행위의 주체, 대상, 수단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민영언론에 대한 규제는 곤란함.</li> </ul>
<p>1992. 8. 3</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6차 회의 제1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북측안 제1장(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관련 선언적 · 원칙적인 문제만을 되풀이 나열한 것은 합당치 않음. -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사항의 명시가 필요함.</li> <li>○ 제2장(분쟁의 평화적 해결)관련 분쟁문제들은 군사공동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문기구에서 협의되어야 하며 재발방지 조치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li> </ul>
<p>1992. 8. 4</p> <p>평양여성토론회 개최관련 南北女性 代表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 일자 : 1992. 9. 1~6(5박 6일)</li> <li>○ 대표단 구성 : 각기 30명(대표 5명, 기자 5명, 기타 20명)</li> <li>○ 議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대단결과 여성의 역할</li> <li>- 일제의 조선침략과 전후 보상문제</li> </ul> </li> <li>○ 판문점 통과절차 : 관례</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7. 30</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6차 會議 제 2차 委員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의 章 題目 : 경제협력, 교류</li> <li>○ 제2장의 章 題目 : 사회문화협력, 교류</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문제 불간섭」의 기준은 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으로서 통일에 저해되는 것은 간섭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외세」는 민족주체 세력에 배치되는 외부 세력임.</li> <li>○ 북남관계가 진정한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자면 대결과 반목시대의 유물(남측안 제8조, 제3국과의 관계)은 청산되어야 하며, 민영언론이 배제될 경우 비방·중상 중지가 사실상 불가능 함.</li> </ul>		
<p>1992. 8. 3</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6차 會議 제 1차 委員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력 불사용 등과 관련 그 기본방침에 해당되는 내용은 부속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군사공동위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토록 함.</li> <li>○ 불가침과 관련하여 제기된 분쟁들은 군사공동위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남측이 정전협정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군정위와 공동위의 운영은 구분되어야 함.</li> </ul>		
<p>1992. 8. 4</p> <p>평양여성토론회 개최관련 南北 女性 代表接觸 (판문점 中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 일자 : 1992. 9. 1~6(5박 6일)</li> <li>○ 대표단 구성 : 각기 30명 (대표 5명, 기자 5명, 기타 20명)</li> <li>○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li> <li>- 일제의 조선침략과 전후보상문제</li> </ul> </li> <li>○ 판문점 통과절차 : 관례</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5</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6차 회의 제3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제5장(파괴·전북행위금지) 관련 파괴·전북행위는 남북대결의 원천이므로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북측의 「모든형태」라는 표현은 모호하며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됨.</li> <li>○ 제6장(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관련 평화협정 체결당사자와 관련한 북측주장은 남북간에는 불가침만하고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li> </ul>
<p>1992. 8. 7</p> <p>南北赤十字 제8차 實務代表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핵문제」, 「이인모 문제」, 「포커스 렌즈 훈련문제」를 전제조건화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실무절차문제 타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li> <li>○ 북측이 고수하고 있는 「노부모방문단의 범죄자 제외문제」, 「기자의 취재활동원칙 설정문제」, 「공연포스터의 시내 부착문제」등은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1985년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전례와도 맞지 않는 것임.</li> <li>○ 실무절차 토의를 외면하면서 정치선전적 발언으로 전제조건만 고집하는 북측 태도는 방문단 교환을 무산시키려는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남북 쌍방 당국간의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li> </ul>
<p>1992. 8. 8</p> <p>姜英勳 大韓赤十字社 총재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老父母訪問團 交換事業 實現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남북적십자 제8차 실무접촉에서도 우리측이 핵문제를 남북합의서 이행에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할 것과 이인모를 송환할 것, 포커스 렌즈 훈련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노부모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음.</li> <li>○ 핵문제는 우리 당국에서 공식입장을 북한측에 이미 전달하였으며, 이인모문제는 다른 이산가족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나 우리 국무총리가 7월 7일 대북서한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5</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6차 會議 제 3차 委員接觸 (板門店 中監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방을 부정 · 적대시하는 법을 두고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함.</li> <li>○ 군사정전협정 준수는 체약당사자간의 문제로써 평화협정 또한 朝 · 美간에 체결되어야 하며 남측은 단지 이해 당사자로서 공동노력하는 것임.</li> </ul>
<p>1992. 8. 7</p> <p>南北赤十字 제8차 實務代表接觸 (板門店 中監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외무부 당국자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방문단 사업을 핵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한 말과 상이함.</li> <li>○ 이인모 송환문제와 관련 남측당국은 귀중한 약속을 어기고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남측 총리서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임.</li> <li>○ 포커스렌즈 훈련을 도상훈련에서 실동훈련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유산시키려는 도발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10</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6차 회의 제1차 委員 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안을 제시한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쌍방 당국간이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회담장에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불모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li> <li>○ 북측은 인도주의 문제를 정치적 선전·선동 대상으로 삼는 구태의 연한 태도를 하루속히 버리고 적십자 인도주의의 이념 구현에 맞게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을 하루속히 실현시킬 것을 촉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관련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여 인도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을 하루속히 실현시켜야 할 것임.</li> <li>○ 내용과 표현에서 북측안을 대폭 수용하고 기본합의서 해당부분과 일치시킨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장 제목 : 북측안 수용</li> <li>제1조~5조, 제10조 : 기본합의서에 일치</li> <li>기타 : 25개 조항 수정, 3개 조항 신설, 제15조 삭제</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 ⑤, ⑧, ⑩항</li> <li>제2조, ②항</li> <li>제3조, ④, ⑤, ⑦항</li> <li>제4조, ⑤항</li> <li>제5조, ①, ②항</li> <li>제6조</li> </ul>
<p>1992. 8. 12</p> <p>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6차 회의 제2차 委員接觸</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간 부속합의서 작성에 대한 공통인식이 마련되었으므로 9. 1까지 부속합의서를 작성, 가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li>○ 북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10</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6차 會議 제1차 委員 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핵문제, 포커스렌즈 훈련문제, 이인모송환 문제등을 해결하 여야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은 합의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 ⑤, ⑧, ⑩항</li> <li>제2조, ②항</li> <li>제3조, ④, ⑤, ⑦항</li> <li>제4조, ⑤항</li> <li>제5조, ①, ②항</li> <li>제6조</li> </ul>
<p>1992. 8. 12</p> <p>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6차 會議 제2차 委員接觸</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쌍방 입장이 근본적으로 대 치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복잡성을 조성하고 있음.</li> <li>○ 북남 쌍방 입장이 대치되는 조항은 북측안 제1조, 제4조, 제5조,</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17</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李東馥 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政治分科委 委員交替 통보</p> <p>○ 新任 김각영(법무부 심의관) 解任 신광옥</p>
<p>1992. 8. 19</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6차 회의 제4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p>제21조(북측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p> <p>제24조(북측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하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p> <p>제25조(북측 제25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재외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재외공관(재외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p> <p>제30조(북측 제29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에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p>
<p>1992. 8. 20</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6차 회의 제3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부속합의서 토의관련 3차례 위원접촉을 통해서도 근본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북측의 다음 조항들 때문이며 이들은 철회되어야 함.</p> <p>－ 북측안 제1조(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금지) 제4조(정찰활동 금지) 제6조(외국무력사용 불가담) 제10조(분쟁문제 공동위 협의·해결) 제15조(불가침 경계선 공동위 협의·추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19</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6차회의 제4차 委員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조(남측 제21조) 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북남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li> <li>○ 제22조(남측 제24조) 북과 남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호상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하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li> <li>○ 제25조(남측 제25조)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대표부(재외공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li> <li>○ 제29조(남측 제30조) 북과 남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에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li> </ul>
<p>1992. 8. 20</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6차회의 제3차 委員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의 평화문제, 군사문제는 주체적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하므로 부속합의서에 무력불사용, 불가침이행을 위한 필요한 근본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21</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6차 회의 제2차 委員 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合意 條項</p>
	<p>第3章(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p> <p>제11조(북측 제12조) 남과 북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추후 문안조정)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p> <p>第4章(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p> <p>제14조(북측 제17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의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p> <p>제16조(북측 제19조) 군사직통전화 설치와 운용규정등에 관한 기술적, 실무적 사항들은 이 합의서 발효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p> <p>제17조(북측 제20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p>
	<p>合意 條項</p>
	<p>제8조(북측 제7조), 남과 북은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p>제8조 ⑤항(북측 제7조 ⑤항) 남과 북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제9조(북측 제8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p> <p>제9조 ⑥항(북측 제8조 ⑥항)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p> <p>제10조(북측 제9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 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合意 條項</p> <p>○ 第3章(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12조(남측 제11조) 북과 남의 지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추후 문안조정)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p> <p>○ 第4章(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7조(남측 제14조) 북과 남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측의 인민무력부장과 남측의 국방부 장관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9조(남측 제16조) 군사직통전화 설치와 운용규정등에 관한 기술적, 실무적 사항들은 이 합의서 발효후 빠른 시일안에 북남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0조(남측 제17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p>
<p>1992. 8. 21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제6차會議 제2차 委員接觸 (板門店 中감위 회의실)</p>	<p>合意 條項</p> <p>제 7조(남측 제8조)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시한다. 제 7조 ⑤항(남측 제8조 ⑤항) 북과 남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8조(남측 제9조)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 8조 ⑥항(남측 제9조 ⑥항) 북과 남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제 9조(남측 제10조)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24</p> <p>盧泰愚 大統領 韓·中修交즈음 談話</p>	<p>제10조 ①항(북측 제9조 ①항)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p> <p>제11조(북측 제10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 보장한다.</p> <p>제13조(북측 제11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p> <p>제16조(북측 제13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제17조(북측 제1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民族大和合」에의 호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中 修交는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동북아시아 냉전체제의 종식을 예고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한 마지막 외적장애가 제거되었다는 민족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li> <li>○ 韓·中 修交가 남북한 당면문제의 해결과 관계발전은 물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임을 확신함.</li> <li>○ 북한당국이 이 시대 역사의 대세에 호응하여 평화와 화해, 진정한 민족대화합의 길로 하루빨리 나오기를 충심으로 기원함.</li> </ul>
<p>1992. 8. 26</p> <p>南北軍事分科委 員會 제7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제안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li> </ul> <p>제1조(무력불사용) : 기존안 제1조 문안조정</p> <p>제2조(침략행위 금지) : 기존안 제2조 본문 및 4개 號를 單一案으로 문안조정</p> <p>제3조(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 기존안 제3조 ①항(모의공격 행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26</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제7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제 9조 ①항(남측 제10조 ①항) 북과 남은 사회문화 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p> <p>제10조(남측 제11조)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 보장한다.</p> <p>제11조(남측 제13조)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p> <p>제13조(남측 제1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p> <p>제14조(남측 제1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부속합의서 토의가 부진한 원인은 실무적 차이나 토의방법상 차이가 아닌 불가침 이행에 관한 근본 입장의 차이에 있음.</p> <p>- 어떤 경우에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되 불가침 이행을 위한 근본 대책이 담겨야 하며 핵소동과 포커스렌즈 훈련등 대화에 배치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진로방해 행위)을 별도 독립조항으로 설정                      제4조(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 기존안 제3조 본문을 별도 조항으로 설정                      제7조(긴급대피 및 구조) : 기존안 6조 문안조정                      제10조(긴급한 분쟁문제발생시 적대행위 중지) : 기존안 제9조를 문안조정                      제14조(해상불가침 경계선) : 기존안 제13조를 문안조정                      제15조(공중불가침 경계선) : 기존안 제14조를 문안조정                      제17조(군사직통전화 구성·운영) : 기존안 제16조를 문안 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제1장(제목) : 무력 불사용                      제2장(제목)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p>
<p>1992. 8. 26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 委員交替 通報</p> <p>○ 新任 鄭義夫(총리실 심의관)                      解任 홍석범</p>
<p>1992. 8. 26                      鄭元植 국무총리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高位級會談 代表交替 통보</p> <p>○ 新任 韓甲洙(경제기획원 차관)                      解任 김종휘</p>
<p>1992. 8. 28                      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7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p>○ 부속합의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북측이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임.                      ○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토대위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기본합의서는 분단된 남과 북의 두 정치실체간에 합의된 공식문서임.</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3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8차 會議 (板門店평화의집)</p>	<p>- 기본합의서에 의거 형성되는 남북관계는 두 정치실체간에 형성되는 특수관계임.</p> <p>- 두 정치실체는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임.</p> <p>○ 부속합의서는 반드시 구체적 이행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는만큼 포괄적, 선언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정해진 기간내에 미합의 조항을 타결하고 화해공동위를 발족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남북상호사찰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쌍방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으로서 IAEA사찰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임.</p> <p>○ 남북상호사찰 규정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요소로서</p> <p>-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균등하게 정해놓고 실시하도록 할것과</p> <p>- 민간이나 군사시설을 막론하고 비핵화와 관련되는 모든 장소는 예외없이 사찰대상에 포함시키며 일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 수시로 사찰이 실시될 수 있는 특별사찰제도를 규정할 것 등임.</p> <p>○ 핵사찰규정 논의순서와 관련하여 「先 사찰규정 토의·가서명, 後 이행합의서 토의」를 촉구함.</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p>○ 相互核査察 규정(안) 章 題目에 합의</p> <p>제1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p> <p>제2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p> <p>제3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의 선정</p> <p>제4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절차와 방법</p> <p>제5장 : 핵사찰 결과에 따르는 시정조치와 분쟁의 해결</p> <p>제6장 : 신변보장 및 편의제공</p> <p>제7장 : 수정·발효</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8. 3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8차 會議 (板門店평화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합의서 정신에 저촉되는 반통일적이며 분열지향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함.</li> <li>- 부속합의서 작성에서 사대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내용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함.</li> <li>- 북남 합의서를 최고의 지위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함.</li> <li>○ 부속합의서 토의는 일괄합의, 동시실천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화해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초안을 제시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차 회의를 남측이 제시한 이행합의서안은 핵무기·핵기지에 대한 사찰, 외부로부터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구체적인 실천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li> <li>○ 또한 「동수사찰」, 「특별사찰」 및 「군사기지사찰」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고 사찰단의 규모도 한번에 2, 3개 정도의 사찰단 밖에 구성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li> <li>○ 사찰규정과 이행합의서는 병행 토의되어야 하며 사찰규정의 章 構成體系와 몇개 조문 표현을 남측안에 접근시킨 사찰규정 수정안을 제시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핵사찰 규정(안)의 章 題目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li> <li>제2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li> <li>제3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의 선정</li> <li>제4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절차와 방법</li> <li>제5장 : 핵사찰 결과에 따르는 시정조치와 분쟁의 해결</li> <li>제6장 : 신변보장 및 편의제공</li> <li>제7장 : 수정·발효 및 기타</li> </ul> </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9. 3</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7차 會議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미해결 조항을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접근 조항에 대해서는 표현이나 조항배열에 집착하지 말고 신축성을 발휘하며</li> <li>- 일방만이 제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른 조항에 포함시키거나 삭제하며</li> <li>-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기본합의서가 분과위 구성·운영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구현하려는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 등을 제외함.</li> </ul> </li> <li>○ 거래 당사자에 대한 당국승인 조항을 철회할 수는 없으나 「교류·협력 당사자는 당국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부분은 삭제가 가능함.</li> <li>○ 인도적 분야에서 면회소설치와 서신거래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 (3개조 32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우리측 안을 수용하여 합의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 ⑥항 (결재방식) 등 11개항</li> </ul> </li> <li>○ 쌍방이 절충하여 합의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 ①항 (경제협력사업 실시) 등 3개조 21개항</li> </ul> </li> </ul>
<p>1992. 9. 4</p> <p>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7차 회의 제 1 차 委員長 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분야 부속합의서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나 분과위 별로 일단 합의된 내용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연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속합의서 타결후 화해공동위를 발족시키자는 북측의견에 동의함.</li> <li>○ 부속합의서 조항중 쌍방이 근본적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칙」문제는 남측안 4개 조 (관할권 인정·존중, 법질서 및 정부시책 불간섭, 대외관계 불간섭)가 관철되고, 북측안 6개 조 (體制認定 尊重중 사상, 내부문제 불간섭 예외조항, 평화협정으</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9. 3</p> <p>南北交流協力分 科委員會 제7차 會議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합의서 작성이 지연되는 것은 쌍방이 근본입장의 차이와 외적 장애요인 때문이며 특히 남측은 핵문제를 부당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음.</li> <li>○ 남측은 북남협력교류를 당국의 통제하에 넣고 당국의 정략에 따라 진행시키려 하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장치철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유왕래 실현은 불가능 함.</li> <li>○ 제7차 고위급회담시 3개 분과위 부속합의서를 같이 발효시키기로 한 만큼 협력, 교류분과위 부속합의서만을 합의, 채택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3개조 32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남측안을 수용하여 합의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 ⑥항 (결제방식)등 11개항</li> </ul> </li> <li>○ 쌍방이 절충하여 합의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 ①항(경제협력사업 실시)등 3개조 21개항</li> </ul> </li> </ul>
<p>1992. 9. 4</p> <p>南北政治分科委 員會 제7차會議 제1차 委員長 接觸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군사, 협력교류 분과위원회의 부속합의서도 채택할수 없으며, 부속합의서가 타결되지 않으면 화해공동위의 발족은 무의미함.</li> <li>○ 남측이 「총칙」, 「법적·제도적 장치철제」, 「제3국과의 조약개정·폐기」등 근본문제를 공동위로 넘기자는 것은 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으며 화해도 하지 않겠다는 것임.</li> <li>○ 「특수관계」에 대한 남측입장은 분열고착적이며, 2개국가를 의미하는 「정부」, 「관할권」, 「정책」, 「외교」, 「영역」등은 남측이 이전에 철회한 것으로써 수용할 수 없음.</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9. 5</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第8차 會議 (판문점 통일각)</p>	<p>로 전환 공동대책 강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주체, 국제기구 단일의식 가입, 타국과의 조약 개정·폐기)가 삭제되면 철회를 검토할 것임.</p> <p>－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 비방·중상 중지 행위주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합의된 부속합의서 章 편성체계와 章 제목에 따라 재구성 되어야할 조문의 내용과 쌍방간 문제가 되는 조항의 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새로운 구성체계에 맞춘 최종 수정안을 제시함.</li> <li>○ 군사공동위가 군사분과위보다 상위기구이거나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밖의 기구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공동인식이 필요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p>제8조 (긴급분쟁 발생시 적대행위 중지 통보) 제5장 제목 : 협의 · 이행기구 제19조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 준수) 제20조 (군사공동위의 기능)</p>
<p>1992. 9. 7</p> <p>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第7차 회의 委員長接觸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당국이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할 것과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시일을 정할 것을 제의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p>제1조 ④항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 제1조 ⑤항 (교류 · 협력의 절차) 제4조 ②항 (공적사업과 인도적사업 우선보장) 제10조 ①항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9. 5</p> <p>南北軍事分科委員會 第8차 會議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상의 불가침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불가침이 담보된 부속합의서를 만들어야 하며 불가침 이행과 인연이 없는 주장들은 대담하게 철회해야 함.</li> <li>○ 군사공동위는 불가침 문제와 관련하여 유일한 이행기구이며 고위급 회담의 「바깥기구」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 8조 (긴급분쟁 발생시 적대행위 중지 통보)</li> <li>○ 第 5章 제목 : 협의 · 이행기구</li> <li>○ 제19조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 준수)</li> <li>○ 제20조 (군사공동위의 기능)</li> </ul>
<p>1992. 9. 7</p> <p>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第7차 회의 委員長接觸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는 정치분과위원회의 부속합의서에 규정될 경우 삭제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협력교류분과위원회의 부속합의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1조 ④항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li> <li>제 1조 ⑤항 (협력, 교류의 절차)</li> <li>제 4조 ②항 (공적사업과 인도적사업 우선보장)</li> <li>제10조 ①항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9. 8</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7차 회의 제 2차 委員長 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제10조 ③항 (상대측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보장) 제15조 ①항 (이산가족의 범위) 제15조 ②항 (이산가족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 제16조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문제) 제18조 (인도적 문제)</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의 미합의 조항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함. - 수정 : 6개 조항(제5조, 12조, 15조, 17조, 18조, 26조) - 북측안 수용 신설 : 1개 조항(제3조) - 동시 삭제 : 2개 조항(남측 제14조 · 27조, 북측 13조 · 25조)</li> <li>○ 우리측안 16조 (비방 · 중상중지 예외조항), 19조(파괴, 전복목적 단체결성 등 금지), 23조 (군사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며 북측안 7조(외세 내정간섭 불가담), 26조 (상대방 이익침해행위 불가담)는 동의 반복이므로 삭제되어야 함.</li> <li>○ 우리측 4개 조항(3조, 4조, 6조, 7조)이 관철되고 북측 6개 조항(1조, 6조, 17조, 20조, 23조, 27조)이 삭제될 경우 「총칙」장의 철회를 고려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조 (해외동포 권익옹호)</li> </ul>
<p>1992. 9. 15~18</p> <p>제8차 南北高位 級 會談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틀이자 평화통일의 이정표이며 비핵화 공동선언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은 이를 잘 이행하는데 있음.</li> <li>○ 부속합의서는 구체적 · 실천적 내용을 담아야하며 상대방이 수락할 수 없는 내용을 강요하거나 기본합의서 정신과 테두리를 벗어난 내용을 제기해서는 안됨.</li> <li>○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은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9. 8</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제7차 會議 제2차 委員長 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제10조 ③항 (상대측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보장)                      제15조 ①항 (이산가족의 범위)                      제15조 ②항 (이산가족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                      제16조 (북남적십자회담 재개)                      제18조 (인도적 문제)</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남측의 「총칙」 章의 철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더이상의 토의는 무의미하며 「총칙」 章의 철회를 전제로 조항별 절충안을 제시함.                      - 修正 : 5개 조항(제2조, 4조, 10조, 12조, 25조)                      - 南側案 수용 新設 : 2개 조항(제3조, 11조)                      - 南側 절충안 受容 : 2개 조항(제8조, 15조)</p>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條項</p> <p>○ 제24조 (해외동포 권익옹호)</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분과위원회는 일단 사업을 멈추었다가 부속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일이 생겼거나, 기타 필요한 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임.                      ○ 공동위에서는 「일괄합의 동시실천」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나 쌍방이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긴급성을 인정하는 문제들에 한해서는 순차를 협의하여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합의사항 이행 방법으로 연차별, 분기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에따라 실천해 나</p>
<p>1992.9.15~18</p> <p>제8차 南北高位 級 會談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 분과위원회는 일단 사업을 멈추었다가 부속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일이 생겼거나, 기타 필요한 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임.                      ○ 공동위에서는 「일괄합의 동시실천」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나 쌍방이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긴급성을 인정하는 문제들에 한해서는 순차를 협의하여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합의사항 이행 방법으로 연차별, 분기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에따라 실천해 나</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원칙에 합의하고 새로이 방문단 교환일자를 정하여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인모 송환문제는 이산가족 방문단의 정례화, 판문점면회소 설치 및 운영개시, 동진호선원 송환등 그 해결방안을 이미 제시한바 있음.</li> <li>○ 공동위원회에서는 부속합의서 조항중 별도의 세부적인 협의없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며, 시급하고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합의하여 순차적으로 이행토록 하여야 함.</li> <li>○ IAEA사찰은 불완전하므로 실효성있는 사찰규정 마련을 위해 군사기지를 포함한 성역없는 사찰대상과 특별사찰 제도 도입이 필요함.</li> <li>○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상호사찰의 실시는 핵의혹의 투명성과 상호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성역과 사각지대가 없는 효과적인 사찰이 되어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合 意 事 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기본합의서의 3개분야 「부속합의서」 채택·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화해」 분야 : 前文, 8章 28개 조항</li> <li>- 「남북 불가침」 분야 : 前文, 6章 19개 조항</li> <li>- 「남북 교류협력」 분야 : 前文, 4章 20개조 50항</li> </ul> </li> <li>○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채택</li> <li>○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분과위에서의 미해결 사항은 공동위 또는 분과위나 군정위에 넘겨 협의를 계속키로 함.</li> <li>- 화해공동위 발족후 1개월 안에 법률및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키로 함.</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갈 것을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부모방문단 사업은 핵소동문제와 이인모 송환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에서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자는 것이며 이인모송환, 방북구속자 석방이 남측에서 임기전에 해결되기를 기대함.</li> <li>○ 사찰대상에 군사기지를 포함시키는 것과 특별사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의 핵문제는 IAEA 임시사찰로 해소되고 있으므로 이 임시사찰 결과를 알게 되면 핵의혹은 없어질 것임.</li> <li>○ 남측이 핵사찰문제를 북남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까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것과 같은 모순적인 정책표명을 철회해야하며 이인모의 송환문제에 대해 응당한 긍정적 조치가 있어야 함.</li> <li>○ 우리로서는 이문제만 풀리면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의 실무회담을 재개 하는데 어느때나 동의할 것임.</li> <li>○ 이번 회답에서 對日 공동대처문제를 토의하고 관련 합의를 채택할 것을 제기하며 일본의 과거청산과 핵무장화, 해외파병에 공동으로 대처할데 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合意 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합의서의 3개 분야 「부속합의서」 채택·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南 和解」분야 : 前文, 8章 28개 조항</li> <li>- 「北南 不可侵」분야 : 前文, 6章 19개 조항</li> <li>- 「北南 協力交流」분야 : 前文, 4章 20개조 50항</li> </ul> </li> <li>○ 북남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채택</li> <li>○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분과위에서의 미해결 사항은 공동위 또는 분과위나 군정위에 넘겨 협의를 계속키로 함.</li> <li>- 화해공동위 발족후 1개월 안에 법률 및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키로 함.</li> </ul> </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제8차 南北高位級會談 「合意文」 공동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高位級會談 개최 : '92. 12. 21~24 서울</li> <li>○ 각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일자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해공동위 : '92. 11. 5 판문점 통일각</li> <li>· 군사공동위 : '92. 11. 12 板門店 평화의집</li> <li>· 경제교류협력공동위 : '92. 11. 19 판문점 통일각</li> <li>·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 : '92. 11. 26 板門店 평화의집</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和解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p> <p style="text-align: center;">第 1 章 體制(制度)認定 · 尊重</p> <p>제 1 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 인정 · 존중</p> <p>제 2 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 소개 보장</p> <p>제 3 조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 인정 · 존중</p> <p>제 4 조 기본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 제도적 장치 개정 및 폐기문제는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 해결</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內部問題 不干涉</p> <p>제 5 조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한 불간섭</p> <p>제 6 조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한 간섭행위 금지</p> <p>제 7 조 기본합의서에의 저촉문제에 대해 상대측에 시정요구</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誹謗 · 中傷 中止</p> <p>제 8 조 언론 · 삐라 등의 수단, 방법을 통한 상대방 비방 · 중상금지</p> <p>제 9 조 상대방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 금지</p> <p>제 10 조 상대방 당국에 대한 비방 · 중상중지</p> <p>제 11 조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 유포금지</p> <p>제 12 조 객관적 사실 보도는 비방 · 중상중지의 대상에서 제외</p> <p>제 13 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視聽 매개물등 모든 수단을 통한 비방 · 중상금지</p> <p>제 14 조 군중집회, 군중행사에서 상대방 비방 · 중상 금지</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제8차 北南高位級會談 「合意文」 共同發表</p> <p>○ 제9차 高位級會談 개최 : 92. 12. 21~24 서울</p> <p>○ 각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일자 및 장소</p> <p>－ 화해공동위 : 92. 11. 5 판문점 통일각</p> <p>－ 군사공동위 : 92. 11. 12 판문점 평화의 집</p> <p>－ 경제협력교류공동위 : 92. 11. 19 판문점 통일각</p> <p>－ 사회문화협력교류공동위 : 92. 11. 26 판문점 평화의 집</p>
	<p>北南和解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p> <p>제 1 장 制度(體制)認定 · 尊重</p> <p>제 1 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체제) 인정 · 존중</p> <p>제 2 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체제)의 紹介 보장</p> <p>제 3 조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 인정 · 존중</p> <p>제 4 조 북남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 제도적 장치 개정 및 폐기문 제는 법률실무협의회사 협의 · 해결</p> <p>제 2 장 內部問題 不干涉</p> <p>제 5 조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한 불간섭</p> <p>제 6 조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한 간섭행위 금지</p> <p>제 7 조 북남합의서의 저촉문제에 대해 상대측에 시정요구</p> <p>제 3 장 誹謗 · 中傷 中止</p> <p>제 8 조 언론 · 뼈라 등의 수단, 방법을 통한 상대방 비방 · 중상중지</p> <p>제 9 조 상대방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 금지</p> <p>제 10 조 상대방 당국에 대한 비방 · 중상 중지</p> <p>제 11 조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 유포 금지</p> <p>제 12 조 객관적 사실 보도는 비방 · 중상 중지의 대상에서 제외</p> <p>제 13 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등 모든 수단을 통한 비방 · 중상 금지</p> <p>제 14 조 군중집회, 군중행사에서 상대방 비방 · 중상 금지</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破壞·顛覆行爲 禁止</p> <p>제15조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행위 금지</p> <p>제16조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 목적 宣傳煽動行爲 금지</p> <p>제17조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한 테러단체나 조직의 결성, 지원·비호 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停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轉換</p> <p>제18조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준수</p> <p>제19조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강구</p> <p>제20조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를 이룩시까지 현 군사정전협정 준수</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國際舞臺에서의 協力</p> <p>제21조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 금지</p> <p>제22조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존중,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필요한 협조조치 강구</p> <p>제23조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공관 공존지역에서 쌍방 공관간 필요한 협의진행</p> <p>제24조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호하며 그들사이의 화해, 단합 강구노력</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履行機構</p> <p>제25조 기본합의서 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남북화해공동위 구성·운영</p> <p>제26조 화해공동위안에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와 기타 필요한 數의 실무협의회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修正 및 發效</p> <p>제27조 부속합의서 수정·보충은 쌍방 합의에 따라 가능</p> <p>제28조 쌍방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발생</p> <p style="text-align: center;">(附記) : 미합의된 쟁점사항중 북측이 제기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토의</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破壞·顛覆행위 금지</p> <p>제15조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행위 금지</p> <p>제16조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행위금지</p> <p>제17조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한 테러단체나 조직의 결성, 지원·비호 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停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轉換</p> <p>제18조 북남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준수</p> <p>제19조 현 정전상태를 북남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 강구</p> <p>제20조 북남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를 이룩시까지 현 군사정전협정 준수</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國際舞臺에서의 協力</p> <p>제21조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 금지</p> <p>제22조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존중,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필요한 협조조치 강구</p> <p>제23조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공관 공존지역에서 쌍방 공관간 필요한 협의 진행</p> <p>제24조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호하며 그들사이의 화해, 단합 강구노력</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履行機構</p> <p>제25조 북남합의서 제1장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북남화해공동위 구성·운영</p> <p>제26조 화해공동위안에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와 기타 필요한 數의 실무협의회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修正 및 發效</p> <p>제27조 부속합의서 수정·보충은 쌍방 합의에 따라 가능</p> <p>제28조 쌍방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발생</p> <p>(附記) 미합의된 쟁점사항중 북측이 제기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토의</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에의 단일의석 · 단일명칭 가입</li> <li>· 국제회의 등에 단일대표단 참가</li> <li>·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의 불가담 · 불협력</li> <li>·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 · 협정의 개정 · 폐기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 해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南北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b></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武力 不使用</p> <p>제 1 조 모든 무력사용행위와 일체 무력도발행위금지</p> <p>제 2 조 상대방 관할구역 침입, 공격, 점령행위 금지 및 정규 · 비정규 무력침입 금지</p> <p>제 3 조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 물자, 수송수단들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금지</p> <p>(未合意 事項) 미합의된 일부사항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 :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li> <li>· 북한측 :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 · 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 및 偶發的 武力衝突 防止</p> <p>제 4 조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 발견시 상대측 통보 및 사전 방지대책 강구</p> <p>제 5 조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 침범시, 긴급대피 보장 및 1개월내 송환조치</p> <p>제 6 조 우발적 침범이나 무력충돌 발생시, 자기측 적대행위 금지 및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통보</p> <p>제 7 조 군사분야의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은 쌍방이 합의하는 기구를 통해 협의 · 해결</p> <p>제 8 조 어느 일방이 본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공동조사,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강구</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에의 단일 의석 · 단일 명칭 가입</li> <li>· 국제기구 등에 단일 대표단 참가</li> <li>·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의 불가담 · 불협력</li> <li>·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 · 협정의 개정 · 폐기문제를 범틀실무협의회에서 협의 · 해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北南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武力不使用</p> <p>제1조 모든 무력사용행위와 일체 무력도발행위 금지</p> <p>제2조 상대방 관할구역 침입, 공격, 점령행위 금지 및 정규 · 비정규 무력침입 금지</p> <p>제3조 북남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 물자, 수송수단들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금지</p> <p>(未合意 事項) 미합의된 일부사항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側 :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li> <li>· 北側 :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 · 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 및 偶發的 武力衝突 防止</p> <p>제 4 조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 발견시 상대측 통보 및 사전 방지대책 강구</p> <p>제 5 조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 침범시, 긴급대피 보장 및 1개월내 송환조치</p> <p>제 6 조 우발적 침범이나 무력충돌 발생시, 자기측 적대행위 중지 및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통보</p> <p>제 7 조 군사분야의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은 쌍방이 합의하는 기구를 통해 협의 · 해결</p> <p>제 8 조 어느 일방이 本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공동조사,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강구</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제 3 장 不可侵 境界線 및 區域
	제 9 조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
	제 10 조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의 확정시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
	제 11 조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
	제 4 장 軍事直通電話 設置 · 運營
	제 12 조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 설치 · 운영
	제 13 조 직통전화의 운영은 문서통신 또는 전화문 교환방식으로 하며, 필요시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통화
	제 14 조 직통전화 설치 · 운용과 관련한 실무문제들은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 해결
	제 15 조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 개통
	제 5 장 協議 · 履行機構
	제 16 조 군사공동위는 기본합의서 제 12 조와 군사공동위 構成 · 運營 합의서 제 2 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 수행
	제 17 조 군사분과위는 불가침의 이행 ·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 및 구체적 대책 수립
	제 6 장 修正 및 發效
	제 18 조 부속합의서 수정 · 보충은 쌍방 합의에 따라 가능
	제 19 조 쌍방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발생
	南北交流 · 協力の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제 1 장 經濟交流 · 協力
	제 1 조 민족경제의 통일적, 균형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해 경제교류와 청산결제, 투자보장등 협력실천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제3장 不可侵 境界線 및 區域
	제 9조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협정에 규명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
	제10조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계속 협의,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시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
	제11조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
	제4장 軍事直通電話 設置 · 運營
	제12조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 설치 · 운영
	제13조 직통전화의 운영은 문서통신 또는 전화문 교환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통화
	제14조 직통전화 설치 · 운용과 관련한 실무문제들은 각기 5명으로 구성된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 해결
	제15조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 개통
	제5장 協議 · 履行機構
	제16조 군사공동위는 북남합의서 제12조와 군사공동위 구성 · 운영합의서 제2조에 따른 임무와 기능수행
	제17조 군사분과위는 불가침의 이행 ·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 및 구체적 대책 수립
	제6장 修正 및 發效
	제18조 부속합의서 수정 · 보충은 쌍방 합의에 따라 가능
	제19조 쌍방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발생
	北南協力, 交流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제1장 經濟 協力, 交流
	제 1 조 민족경제의 통일적, 균형적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해 경제교류와 청산결제, 투자보장 등 협력실천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제 2조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와 협력 실현</p> <p>제 3조 철도·도로 연결, 인천·남포등 해로·항로 개설</p> <p>제 4조 우편·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설치·연결 및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보장</p> <p>제 5조 국제경제분야에서의 협력 및 대외 공동진출대책 협의</p> <p>제 6조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지원보장</p> <p>제 7, 8조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과 기구 설치문제, 기타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경제공동위에서 협의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社會文化交流·協力</p> <p>제 9조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협력 실시</p> <p>제10조 왕래 인원의 신변안전, 편의제공, 긴급 구제조치등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실현</p> <p>제11조 사회문화분야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하며 대외공동진출 협력</p> <p>제12조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지원보장</p> <p>제13, 14조 사회문화 교류·협력 부문간의 이행과 기구설치문제 및 기타 세부사항의 실천은 사회문화공동위에서 협의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人道的 問題의 解決</p> <p>제15조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상봉 및 방문실시,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실현, 상봉면회소 설치 등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p> <p>제16조 쌍방 적십자회담 속개 협력</p> <p>제17조 이산가족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 존중, 지원보장</p> <p>제18조 인도적 문제 해결부문의 이행 및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修正 및 發效</p> <p>제19조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가능</p> <p>제20조 쌍방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발생</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제 2조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와 협력 실현</p> <p>제 3조 철도·도로 연결, 인천·남포 등 해로·항로 개설</p> <p>제 4조 우편·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설치·연결 및 우편·전기통신교류의 비밀보장</p> <p>제 5조 국제경제분야에서의 협력 및 대외 공동진출 대책협의</p> <p>제 6조 경제분야 협력, 교류의 지원보장</p> <p>제 7~8조 경제협력, 교류 부문의 이행과 기구설치 문제, 기타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경제협력, 교류공동위에서 협의·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社會文化 協力, 交流</p> <p>제 9조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협력, 교류 실시</p> <p>제10조 왕래 인원의 신변안전, 편의제공, 긴급 구제조치등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실현</p> <p>제11조 사회문화분야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하며 대외공동진출 협력</p> <p>제12조 사회문화분야의 협력, 교류 지원보장</p> <p>제13~14조 사회문화 협력, 교류 부문간의 이행과 기구 설치 문제 및 기타 관련한 세부사항의 실천은 사회문화 협력, 교류공동위에서 협의·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人道的 問題의 解決</p> <p>제15조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상봉 및 방문실시,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실현, 상봉면회소 설치 등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p> <p>제16조 쌍방 적십자회담 속개 협력</p> <p>제17조 이산가족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 단체들의 합의 존중, 지원·보장</p> <p>제18조 인도적 문제 부문의 이행 및 관련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修正 및 發效</p> <p>제19조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가능</p> <p>제20조 쌍방이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9. 1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4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附記)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 폐문제는 화해공동위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도에 매달리는 선전적 차 원에 설 것이 아니라 민간·군사시설을 막론, 특별사찰을 포함한 남북상호사찰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임.</li> <li>○ 기존 주장의 반복을 지양하고 곧바로 쌍방 사찰규정안을 비교·작 성한 대비표에 근거하여 축차토의에 들어갈 것을 제의함.</li> <li>○ 사찰규정의 조항별 토의에서는 「핵시설·핵물질」과 「협회가 있다 고 주장하는 핵무기·핵기지」를 제1조와 제2조에 구분명시하여야 하며, 핵물질의 「생산」에는 새로운 핵시설의 「건설중」인것도 포함 되어야 함.</li> </ul>
<p>1992. 9. 3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5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임시사찰 결과 오히려 대북 핵의혹이 증폭되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남북상호사찰이 시급하며, 북한의 핵개발은 남 북간 문제일 뿐 아니라 세계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li> <li>○ 북측은 한미연례안보회의 등 회담 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사찰규 정 토의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위원접촉 본연의 임무에 맞게 실질 토의에 들어갈 것을 제의함.</li> <li>○ 사찰단 구성문제는 쌍방 사찰관 명부기재 인원중 20명 이내로 하며 핵무기·핵기지와 핵시설·핵물질 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사찰 단의 數를 사찰대상의 數와 규모에 따라 정하자는 것은 비현실적임.</li> </ul>
<p>1992. 10. 7</p> <p>崔永喆 副總理 겸 統一院長官 對北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朝鮮勞動黨 事件」是認·謝過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던 기간은 물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발효된 지금도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에서 간첩남파 및 지령, 포섭활동을 계속해 왔음.</li> <li>○ 이같은 북한의 공작활동은 남북기본합의서 제4조, 화해분야 부속합</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9. 1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4차 委員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附記)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 문제는 화해공동위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에서는 IAEA의 제3차 임시사찰이 실시되어 핵시설의 평화적 이용이 내외에 확인되었음.</li> <li>○ 사찰규정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찰대상에 대한 정보교환, 사찰단의 구성등을 상호 핵사찰의 특성에 맞게 규정해야 함.</li> <li>○ 「진해 미핵잠수함기지」보도와 관련, 이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엄중히 위배되는 처사로서 사찰의 시급성을 입증하는 것임.</li> <li>○ 핵무기·핵기지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에 존재하면 미국의 것이든 그 누구의 것이든」, 「현존하는 것이든 철폐된 것이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함.</li> </ul>
<p>1992. 9. 3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5차 委員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UN총회, 한미안보협의회 등 국제사회에 들고 나가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북핵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임.</li> <li>○ 사찰규정에는 철수, 철폐한 핵무기·핵기지에 대한 정보교환도 포함되어야 하며 조선반도 핵문제는 자주적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함.</li> <li>○ 핵무기·핵사찰에 대한 사찰단은 사찰대상의 數와 규모에 따라 여러개로 하고 한개 사찰단은 사찰원 10명과 보장성원 5명 정도로 구성하며, 핵시설·핵물질에 대한 사찰단의 수는 사찰대상수에 따라 정하도록 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7</p> <p>南北連絡事務所 孫仁教소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通信實務者 接觸提議</p> <p>의서 제15조 및 제17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통해 작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북한의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임.</li> <li>○ 북한은 냉전시대의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파괴, 전복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핵문제 해결과 노부모 방문단의 상호교환을 조속히 실현시키며 2천만 북한동포와 민족전체의 자유와 복지향상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li> </ul>
<p>1992. 10. 9</p> <p>南北政治分科委員會 李東馥위원 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政治分科委員會 緊急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쌍방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키는 등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음.</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우리사회의 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간첩납파 및 지령포섭활동을 계속해 왔음이 최근 밝혀졌음.</li> <li>○ 나는 위임에 의하여 이번 파괴공작 사건에 대한 귀측의 시인,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0월 13일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긴급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9</p> <p>南北連絡事務所 북측소장 최봉춘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崔珏圭 副總理 訪北」관련 連絡官接觸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 보도에 의하면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을 들고 이미 합의한 남측부총리의 평양방문(10. 14 예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하며 이를 오늘 접촉에서 우리에게 통보할 것이라 함.</li> <li>○ 남측이 영똥하고도 부당한 조건부를 내세워 쌍방합의를 파기하는 신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li> <li>○ 남측이 떠들고 있는 이른바 조선노동당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은 남측이 내부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날조해 내고 있는 또하나의 상투적 충격요법에 불과함.</li> <li>○ 우리는 남측이 당치않은 구실을 들어 부총리의 평양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실정에서 쌍방 실무자들이 구태여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면서 접촉에 나가지 않을 것임.</li> </ul>

■ 1992年 10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1992. 10. 13 南北連絡事務所	崔珏圭 副總理 訪北 延期通報 ○ 최각규 부총리 방북과 관련한 10월 9일 쌍방 연락관 접촉이 귀측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1992. 10. 9 南北連絡事務所 북측소장 최봉춘 對南電通文	<p style="text-align: center;">通信實務者 接觸日字 修正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통신 실무자 접촉을 10월 28일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li> <li>○ 우리측은 쌍방이 합의한대로 5명의 성원을 내보낼 것임.</li> </ul>
1992. 10. 12 南北高位級會談 북측 책임연락관 최봉춘 對南 電通文	<p style="text-align: center;">和解共同委 委員長을 「部長級」으로 할 것을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북남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북남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의 급을 부장(장관)또는 부부장(차관)급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li> <li>○ 그러나 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책임과 임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부장급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우리측 위원장을 부장급으로 내정하였음.</li> <li>○ 남측도 우리측이 내정한 급에 맞추어 10월 13일까지 알려 주기를 희망함.</li> </ul>
1992. 10. 12 南北政治分科委 員會 북측위원장 백남준 對南 電通文	<p style="text-align: center;">政治分科委 會議 開催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우리와 이를 관련시켜 보려고 정치분과위원회의 긴급회의까지 소집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li> <li>○ 귀측이 떠들고 있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귀측이 꾸며낸 자작·자연극이며 허위 날조로 엮어진 것으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li> <li>○ 우리는 귀측이 꾸며낸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라는 것이 정치분과위원회에서는 물론 앞으로 구성·운영하게 될 화해공동위원회에서도 논의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해두는 바임.</li> </ul>
1992. 10. 13 政務院總理 연형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朝鮮勞動黨」事件은 南側의 自作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얼마전 이른바「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반복모략사건</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孫仁敎소장 對北 電通文  1992. 10. 13  南北連絡事務所 孫仁敎소장 對北 電通文	의 일방적 조치로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함. ○ 우리측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정세에 따라 10월 14일 예정된 방문 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을 통보하며, 최각규 부총리의 방문날짜는 추후 다시 협의하게 되기를 희망함.  和解共同委 委員名單 交換 延期提議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인원 명단을 10월 15일 교환키로 합의하였으나 우리측 사정으로 인하여 10월 26일 교환할 것을 제의함.
1992. 10. 14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6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主要 提議 · 主張 內容  ○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의 공동성명 제9항은 남북관계 특히 상호 핵사찰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팀스피리트 훈련준비 조치를 계속한다는 것이며, 하루속히 상호 핵사찰 규정을 채택하여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 진의임. ○ 주한미군기지의 관할권은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우리측에 있으므로 「관할구역」으로 표시하더라도 문제가 없음. ○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미·북한간 참사관급접촉에서도 미국이 북측에 문서로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원한다면 「상대방 지역」으로 표기할 용의가 있음. ○ 우리측 사찰규정안 제11조의 「소재할 것으로 의심되는…」은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상대측이 계속 정보제공을 안할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함.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목 對南便紙</p>	<p>을 조작 발표한데 이어 미국과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T/S훈련을 재개하기로하고, 남조선 주둔 미군의 2단계 감축을 증시하면서 신속전개 억제전력까지 전개하기로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것은 좋게 진전되고 있는 북남대화를 가로 막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대결시대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행위로서 화해와 완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평화 애호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li> <li>○ 남측은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것을 선거전략을 위해 꾸며낸 모략극이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죄하며, T/S훈련 재개및 미군의 감축을 백지화하기로 한 부당한 결정을 무조건 철회해야 함.</li> <li>○ 이와 함께 이인모 노인을 즉시 송환하고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며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하는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함.</li> </ul>
<p>1992. 10. 14</p>	<p>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p>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제 6차 委員接觸 (板門店 중감위원회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0월 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주한미군 2단계 감축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한 것은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 시키겠다는 것임.</li> <li>○ 남측안 제11조에서 「상대방 관할구역」으로 표현된것은 핵사찰의 대상이 될 미군기지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li> <li>○ 「또한 소재할 것으로 의심되는...」 은 사찰전 정보교환시 불충분한 내용이 있을경우 추가 정보제공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함.</li> </ul>
<p>1992. 10. 16</p>	<p>제9차 核統制共同委員會 會議開催 제의</p>
<p>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北側委員長 최우진 對南 電通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후 3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졌으나 사찰 규정 토의에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li> <li>○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협상을 위해 10월 2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1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 위원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 委員長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협상을 위해 오는 10월 22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쌍방 위원장간 비공개 단독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1992. 10. 2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 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9차 核統制共同委 開催提議에 同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제9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0월 22일 판문점에 나갈 것임.</li> </ul>
<p>1992. 10. 21</p> <p>南北高位級會談 수석대표 玄勝鍾 국무총리 對北 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朝鮮勞動黨事件」是認·謝過 및 再發防止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분단의 역사는 6. 25 남침및 버마암살폭발사건 등 북측의 폭력으로 얼룩져 있으며, 北側所行임이 명백히 드러나도 自作劇 운운하며 억지주장을 反復해 왔음.</li> <li>○ 南北政治分科委 소집제의 거부에 遺憾을 표명하며 북측의 시인·사과·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 責任을 추궁할 것임.</li> <li>○ 貴側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시인, 사과, 재발방지조치와 核·離散家族問題의 조속해결, 일체의 비방중상행위의 즉각중지를 재촉구함.</li> <li>○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는 귀측이 최단시일 내에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서명·비준하고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992년에 한하여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li> <li>○ 만약 '93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전에 남북간 사찰규정 합의가 이루어져 상호사찰이 실시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을 항구적으로 중지하는</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2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北側委員 長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차 핵統制共同委 開催 거듭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매우 건설적인 협의를 가질 것을 바라고 있는 조건에서 제9차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가질 것을 제의함.</li> <li>○ 나는 10. 22 판문점 통일각에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우리측위원 전원과 함께 나갈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22</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9 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도 검토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 감축조치가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냐의 여부도 전적으로 귀측 태도에 달려있으며, 이인모문제는 지난 7월 7일자 서한에서 그 해결 방법을 분명히 밝혔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규정이 조속히 해결되어 상호사찰이 실시되는 경우 탐스피리트 훈련을 항구적으로 중지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li> <li>○ 남북상호사찰이 갖고 있는 중대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이를 타결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하루빨리 내릴 것을 촉구함.</li> <li>○ 특별사찰과 군사기지 사찰문제는 비핵화 공동선언과 유엔의 검증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타결지어야 함.</li> <li>○ 사찰규정의 내용·체계와 관련하여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어떠한 영역도 사각지대도 존재할 수 없으며 검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심은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li> </ul>
<p>1992. 10. 26</p> <p>南北高位級會談 수석대표 玄勝鍾 국무총리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和解共同委 委員 및 交替委員 명단통보</p> <p>〈화해공동위원회〉</p> <p>위 원 장 : 宋漢虎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p> <p>부위원장 : 李峻熙 (국무총리 보좌관)</p> <p>위 원 : 金炯基 (통일원 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崔圭鶴 (총리실 심의관)</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22</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9차 會議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핵전쟁연습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핵화공동선언 서문과 제1항을 백지화하고 모든 북남대화를 파괴시키는 행위이며, 북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합의사항 이행을 차단시키려는 것임.</li> <li>○ 핵통제공동위원회 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사찰규정토의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한 중대제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내용을 11월 말까지 철회시키고 이를 내외에 공포할 것</li> <li>- 외국의 핵무기와 관련 장비들이 동원되는 군사연습을 우리나라 경내에서 실시하지 말것</li> <li>- 북과 남은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를 철회한 기초위에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와 사찰규정토의의 교착상태 타결을 위한 건설적인 안을 내놓고 사찰을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li> </ul> </li> <li>○ 남측은 미국과 함께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T/S훈련을 재개할 아무런 명분이 없으며 이를 당장 취소하는 조치가 핵통제공동위에서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li> </ul>
<p>1992. 10. 26</p> <p>南北高位級會談 북측대표단 단장 연형묵총리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和解共同委 委員 名單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전금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li> <li>부위원장 : 정남호 (외교부 순화대사)</li> <li>위 원 : 조상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 부국장)</li> <li>최성익 (조평통 서기국 부장)</li> <li>리길청 (조선인민군 대좌)</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28</p> <p>南北軍直通電話 設置運營 제1차 통신實務者 接觸 (판문점 증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姜根鐸(외무부 심의관) 金珥泳((법무부 심의관) 孫渭壽(공보처 기획관)</p> <p>〈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 교체 신 임 : 金德煥(교육부 장학관) 吳志哲(체육청소년부 국장) 李德周(공보처 국장) 安熙玉(정무2장관실 조정관)</p> <p>해 임 : 김병호 · 김진성 · 조영승 · 성낙승</p> <p>〈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 교체 신 임 : 부위원장 金泰淵(경제기획원 실장) 위원 李泳鐸(재무부 국장) 張石煥(상공부 국장) 李 元(동자부 국장) 鄭鍾煥(교통부 국장) 李宗淳(체신부 통신협력단장)</p> <p>해 임 :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 : 박운서 · 이환균 · 유득환 · 최 훈 · 이계철</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제4장)에 따라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 · 운영에 관한 합의문」(안)을 제시함.</li> <li>○ 부속합의서에 문서통신방법과 전통문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정확, 신속한 군사당국자간 의사소통을 위해서 음성전화기의 설치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인쇄 · 모사전송 등 가능한 모든 통신방법을 보장하여 통신망을 구성해야 함.</li> <li>○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기기와 전화문을 교환하는 기기를 다같이 설치한다는 것은 그중의 어느것이 고장나거나 긴급 통신시에 유효한 수단으로 어느 한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28</p> <p>南北軍事直通電話 設置運營을 위한 第1次 通信實務者 接觸 (板門店 中韓委員會)</p>	<p>강성룡(중앙인민위 상급심위원) 박세덕(정무원 사무국 상급심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결정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서 북남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li>○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명칭과 13조, 15조의 취지에 비추어 통신방법은 직통전화만으로 되어야 함.</li> <li>○ 「문서통신」이란 통신수단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통신수단이 전화기가 되면 전화문이 될것이고 전신기가 되면 문서통신이 되는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2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7차 위원접촉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疑心」은 동시에 한번에 해소될 수 없으므로 「적시에, 지속적」으 로 사찰이 실시되어야 함.</li> <li>○ 사찰대상이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최대치를 사전에 확정시켜 놓 고 그 가운데 예측가능성이 있는 장소부터 사찰을 실시함.</li> <li>○ 사찰대상과 관련한 정보교환에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 사찰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는 핵무기 · 핵기지 뿐만 아니라 핵물 질 · 핵시설도 포함되어야 함.</li> </ul>
<p>1992. 10. 29</p> <p>姜英勳 大韓赤十 字社 총재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赤十字會談 再開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기본합의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되 어있으며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에는 흠어진 가족 ·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는 문제가 규정되어 있음.</li> <li>○ 부속합의서에는 인도적문제의 이행 및 관련 세부사항의 협의 · 실천 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에게 맡기기로 규정하고 이 단체들의 조속회 담 재개에 쌍방이 적극 협력하기로 규정되어 있음.</li> <li>○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와 운영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쌍방간에 합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최 일자만 합의하면 쉽게 열릴 수 있음.</li> <li>○ 이러한 견지에서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는 11월 중에 쌍방간 에 합의되어 있는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0. 2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7차 委員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대상의 수는 쌍방간의 불균형을 전제로 「의심동시 해소원칙」에 따라 정하고 사찰대상의 선정은 교환한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선정함.</li> <li>○ 핵무기와 핵기지가 있었거나 있는 것으로 상대측에 협의를 갖게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일방이 요구할때 쌍방이 협의하여 사찰대상으로 정함.</li> </ul>
<p>1992. 10. 31</p> <p>南北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 단장 연형묵총리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花郎, 독수리 訓練」中止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공화국의 정부·정당·사회단체들은 지난 10. 27 연합회의에서 귀측이 T/S 훈련을 재개한다면 북남 당국간 모든 대화와 접촉들이 동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데 대해 명백히 밝혔음.</li> <li>○ 그러나 남측은 며칠전 미국과 함께 11월 2일부터 9일까지 「화랑」 훈련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한미 '92독수리」 훈련을 각각 벌일</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1. 2</p> <p>南北高位級會談 수석대표 玄勝鍾 국무총리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共同委員會 開催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북측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시인·사과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T/S훈련 실시 여부는 상호사찰 실시로 핵무기 개발의혹을 해소하지 않는한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바 있음.</li> <li>○ 그럼에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보내기는 커녕 우리측의 연례적인 독수리·화랑훈련까지 취소하라는 요구를 해 왔으며, 더구나 분야별 공동위원회 개최 여부를 우리측 군사훈련과 연계시키기까지 하였음.</li> <li>○ 북측은 상대측의 내부분제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회담과 연계시키는 대결시대의 의식과 행태에서 벗어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준수해 나가야 하며, 사리에 맞지않는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합의 한대로 공동위원회를 예정된 일자에 무조건 열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1. 3</p> <p>南北連絡事務所 북측소장 최봉춘 對南電通文</p>	<p>것이라고 공포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의 이러한 행동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며 북남대화에 대한 노골적인 파괴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북남공동위원회들이 당장 열리게 되는 시점에 와서 또다시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이려는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음.</li> <li>○ 남측은 공동위 회의를 위태롭게 하는 전쟁연습계획을 무조건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를 늦어도 11월 2일까지 우리측에 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通信實務者 接觸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제1차 북남통신실무자 접촉에서 남측이 미국측과 합동군사연습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군사직통전화 설치를 의미없게 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li> <li>○ 그러나 남측은 우리의 요구에 긍정적인 호응대신 오히려 「'92독수리」, 「화랑」 훈련을 하는 것으로써 직통전화 설치·운영과 관련한</li> </ul>

■ 1992年 11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1. 3</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代理 이성 호 對南電通文</p>	<p>접촉에 또 하나의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우리는 예정된 군사통신실무자 접촉에 나갈수 없게 되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접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기를 희망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차 南北赤十字會談 開催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서 합의된 문제들은 원칙상 앞으로 가동, 운영될 공동위원회에서 협의·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음.</li> <li>○ 이에 따라 인도적 문제도 응당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쌍방 적십자회 담의 재개시기와 함께 해당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임.</li> <li>○ 더욱이 남측이 「화랑」, 「독수리」훈련과 T/S훈련 재개준비로 하여 핵전쟁 위험까지 들이닥치고 있는때에 이산가족의 아픔을 걱정하는 척하는 귀측의 태도는 양면적인 것임.</li> <li>○ 귀 적십자사가 회담을 할 생각이 있고 흠어진 겨레들의 고통을 덜어줄 의사가 있다면 반대화, 반통일, 반인도주의적인 「화랑」, 「독수리」훈련과 T/S훈련 재개를 취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li> </ul>
<p>1992. 11. 3</p> <p>南北和解, 軍事, 經濟, 社會文化 共同委 북측위원 장들 聯合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共同委員會 제1차 회의 參加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화랑, 독수리훈련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북남공동위원회들에 대한 파괴행위이고 북남 합의문건들에 대한 이행 포기 선언임.</li> <li>○ 남측이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화해와 불가침과 협력교류를 위한 공동위원회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써 쌍방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들은 사실상 유산되고 무의미하게 되었음.</li> <li>○ 우리측은 오는 11월 5일부터 한주일 간격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들에 나갈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함.</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화랑, 독수리 훈련을 즉시 중지해야하며, 특히 11월말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T/S훈련 재개 결정을 철회하고 내</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1. 4</p> <p>崔永喆 副總理                      겸 統一院 長官                      對北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委員會 제1차 會議 參加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11월 5일부터 각 공동위원회 를 가동시켜 화해, 협력시대를 열기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했음.</li> <li>○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훈련을 트집잡 아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들에 불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음.</li> <li>○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등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 황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없으며 북한이 남북상호 사찰을 실 시하여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li> <li>○ 남북한간에 제기되는 현안들은 쌍방 당국간에 대화를 통해 협의, 해결 하는 것이 순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대화는 지속되어야 마땅함.</li> <li>○ 북한은 합의한대로 공동위원회들이 열릴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며, 상호사찰과 이산가족노부모 방문단 교환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 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1. 6</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외에 공포해야 함.</p> <p>○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들이 늦어도 12월에 열릴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p>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 제10차 會議 延期 提議</p> <p>○ 우리는 귀측이 팀스파리트 훈련재개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 말까지 우리측에 알려줄 것과 이런 전제하에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기로 하였음.</p> <p>○ 그런데도 귀측은 우리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하는 대신 화랑과 독수리 훈련을 더벌여 놓는 것으로 대답해 왔으며 이는 회의 앞에 인위적 장애를 조성하려는 계획적 도발이라고 인정함.</p> <p>○ 귀측의 반대와 반평화적 도전행위로 하여 11. 10 가지기로한 핵통제공동위 제10차 회의가 부득이 제날짜에 열리지 못하게 되었지만 핵문제해결의 절박성을 고려하여 화랑과 '92독수리 훈련의 포연이 가셔진 11. 18일에 가질 것을 재의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1. 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 제10차 회의 11·18 開催 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측이 연기구실로 내세운 「'92 독수리훈련」과 「화랑훈련」은 우리 측 후방지역에서 실시되는 통상적인 방어훈련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의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문제」에서도 이러한 군사연습의 실시를 상정하고 있음.</li> <li>○ 귀측이 남북상호사찰을 실시하여 핵무기 개발의혹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팀스피리트훈련 준비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측의 명백한 입장이며, 핵무기개발과 같은 군사적 위협이 중단되지 않는 한 팀스피리트 훈련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음.</li> <li>○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제10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11. 18, 10:0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의 개최제의를 동의함.</li> </ul>
<p>1992. 11. 18</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10 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북측이 「화랑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이유로 이미 합의된 남북대화 일정을 취소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함.</li> <li>○ '93 T/S훈련문제는 「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훈련실시를 위한 준비조치를 계속할 것이며, 핵개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찰규정 토의·채택에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함.</li> <li>○ 북측의 소위 「중대제안」 3개항에 대한 대답은 제9차 회의에서 하였으며, 진정으로 T/S훈련의 중지를 원한다면 사찰규정을 11월중에 타결짓고 12월 중순 제9차 고위급회담 전에 사찰을 실시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임.</li> <li>○ 핵사찰규정의 기본요소로서는 의심이 가는 모든 장소에 대한 사찰의 실시를 보장해야하며 지속적 확인을 위해 특별사찰제도가 필수적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1. 18 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10차 會議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S훈련을 재개기로 결정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되며 제9차 회의시 우리가 제안한 3개 「중대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li> <li>○ 남측은 92독수리·화랑훈련등을 실시함으로써 각 공동위 회의들을 유산시켰으며 만일 T/S훈련을 강행한다면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물론 모든 북남대화들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함.</li> <li>○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4차례의 IAEA사찰을 통해서 입증되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기본은 남조선주둔 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이 선행되어야 함.</li> <li>○ 남측의 「특별사찰」과 「일반군사기지사찰」기도는 철회되어야 하며 남측에 있는 핵무기와 핵기지가 제한없이 전면사찰 되어야 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1. 27</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11 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의 비정기사찰로 북측의 핵개발의혹이 해소되었다는 것은 언 어도단이며, 제2의 「비핵화공동선언」채택을 위해 성역없는 사찰과 특별사찰 원칙등 핵문제 해결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함.</li> <li>○ 남북간에 핵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심이 가는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제도가 포함된 사찰규정이 채택되어야 함.</li> <li>○ 제9차 고위급회담전까지 「사찰규정」 「이행합의서」를 채택하여 상 호사찰을 실시하면 T/S훈련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1. 27</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11차 會議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 상호사찰의 지연책임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합의서를 늦게 제시하고 상호 동수사찰원칙, 특별사찰, 일반군사기지 사찰을 고집하는 남측에 있음.</li> <li>○ 만일 T/S훈련을 재개한다면 제9차 고위급회담등 모든 북남대화는 물론 핵통제공동위도 무산될 것이며 핵안전협정 이행에도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 것임.</li> <li>○ T/S훈련이 강행되는 조건에서 더이상의 위원접촉은 불필요하며 11월 말까지 T/S훈련재개 철회조치를 어떤 경로로든 통보해 주기 바람.</li> </ul>
<p>1992. 12. 1</p> <p>「國民戰」韓國核 武器開發 眞相 公開狀 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韓國이 核武器 開發하고 있다고 黑色宣傳放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한국에서는 방대한 技術人力과 資金이 핵무기 개발에 투하되어 핵폭약, 핵탄, 핵운반 수단등의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음.</li> <li>○ 69. 5 제172차 韓國原子力委員會가  확정한 원자력 연구개발 장기 이용계획서에는 핵연료 재처리체계 검토(72~76), 재처리시설 설치(77~81)등이 지적되어 있음.</li> <li>○ 80년대에 개발단계를 거쳐 90년대에 핵무장화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核技術人力만도 1989년에 무려 15,000명에 이르러 烏拉늄 · 플루토늄생산, 핵폭탄설계, 유도탄 개발등을 전담하고 있음.</li> <li>○ 大德은 원자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핵연료 주식회사 등이 집중배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집약적 핵무기개발 단지임.</li> <li>○ 우리인민은 1,700여개의 미국핵무기가 배비된 핵우산밑에서 감행되고 있는 서울파쇼당국의 핵무기개발 흥계를 좌절시키기 위한 反核運動에 한사람 같이 분기해야 할 것임.</li> </ul>
<p>1992. 12. 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p>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 제12차 會議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11월말까지 T/S재개결정을 철회할데 대한 긴급제안을 내놓았으나 南側은 11월말 시한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무런 태도를</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2. 2</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接觸」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인 「상호사찰규정」과 「이행합의서」가 채택되고 제9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상호사찰이 실시된다면 '93 T/S훈련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재강조함.</li> <li>○ 12. 4부터 「위원접촉」을 몇차례 갖고 사찰규정과 이행합의서를 타결한 후 이에대한 가서명을 위해 제12차 핵통제공동위를 12. 10에 개최할 것을 희망함.</li> <li>○ 이를 위해 「위원접촉」을 12. 4 10:0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가질것을 제의함.</li> </ul>
<p>1992. 12. 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査察規程 討議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첫 상호사찰이 실시되어야 함을 재강조하면서 제12차 핵통제공동위 회의(12. 10)에서는 사찰규정 토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보이지 않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側이 T/S재개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査察規程토의에 난관을 조성하고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지연시키려는데 대해 절대로 묵인할 수 없음.</li> <li>○ 우리는 남측이 어떤 형태로든 T/S재개와 관련한 부당한 立場을 철회할 것을 재촉구하면서 핵통제공동위 제12차 會議를 12. 8에 開催할 것을 제의함.</li> </ul>
<p>1992. 12. 3</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統制共同委 제12차 會議 開催日字 同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핵통제공동위 제12차 회의 관련 12. 10 개최제외에 동의하며 이 회의에서는 「위원접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이 관심하는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하기를 희망함.</li> </ul>
<p>1992. 12. 4</p> <p>南北高位級會談 北側代辯人 안병 수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T/ S 再開決定 12.15까지 撤回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고위급회담이 제날짜에 개최되며 각 공동위들도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당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li> <li>○ 남측이 이제라도 민족내부문제를 쌍방의 노력으로 풀어나갈 생각이 있다면 반민족적이고 반대화적인 T/S훈련 재개결정을 철회하여야 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2. 10</p> <p>南北高位級會談 孔魯明 대변인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차 高位級會談前 相互査察 實施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T/S훈련문제를 제9차 고위급회담 개최와 연계시키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li> <li>○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기로 이미 합의한 12월 21일 이전에 사찰규정이 채택되고 상호사찰이 실시되기를 기대함.</li> <li>○ 북측은 지금이라도 우리측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예정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에 무조건 응해 나와야 할 것임.</li> </ul>
<p>1992. 12. 10</p> <p>南北高位級會談 金勇煥 책임연락관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責任連絡官 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일정 등 실무협의를 위해 12. 14,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책임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2. 9</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朝·蘇 同盟條約 효력 유효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게되면 북남대화는 구원되어 연내에 각공동위들이 가동되고 제 9차 고위급회담도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남측이 오는 12. 15까지 T/S훈련 재개결정을 철회하기를 희망함.</li> <li>○ 얼마전 러시아 엘친대통령의 남조선방문시 다른나라 일부 언론들의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동맹조약 폐기보도는 잘못된 것임.</li> <li>○ 러시아 당국은 92. 7월말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조약이 완전한 규모에서 자기의 효력을 보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발표하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음.</li> <li>○ 이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쌍무조약으로 앞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러시아가 남조선 당국과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님.</li> </ul>
<p>1992. 12. 10</p> <p>祖國平和統一委 員會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韓이 核武器를 開發하고 있다고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핵무기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남조선의 핵무장화가 오늘 위험한 단계에 이른 것은 참으로 내외의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임.</li> <li>○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합리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힘에 의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애걸해 왔으며, 우리와 합의를 보고 채택발효시킨 비핵화공동선언도 헌신짝 같이 차버리고 핵무기개발에 피눈이 되어왔음.</li> <li>○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이 핵무기개발 책동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될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2. 10</p> <p>鄭元植 민자당 선거대책위원장 對北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大選攪亂 黑色宣傳煽動 中止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최근 대선교란을 위해 이른바 「범민주연합정부수립 촉구, 안기부의 후보암살 계획」등 흑색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음.</li> <li>○ 이는 남북합의서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고 우리의 주권과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써 엄중히 경고함.</li> </ul>
<p>1992. 12. 1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12차 회의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 T/S훈련 재개문제는 핵개발의혹 해소를 위한 북측의 입장여하에 달려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남북대화 거부의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은 부당함.</li> <li>○ 제9차 고위급회담 개최예정일인 12. 21 전까지 첫 상호핵사찰이 실시된다면 '93 T/S훈련 실시문제는 해결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함.</li> <li>○ 북측에 대한 IAEA사찰은 제한적인 성격의 것에 불과하며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이행을 위해서는 「성역없는 사찰」과 「특별사찰」이 포함된 사찰규정이 조속 마련되어야 할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2. 1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12차 會議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11월말까지 T/S훈련 재개결정을 철회토록 요구하였으나 남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북남대화가 결렬위기에 처하고 핵사찰이 지연되었음.</li> <li>○ 만일 T/S훈련 재개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핵통제공동위 회의 뿐만 아니라 제9차 고위급회담을 포함한 모든 북남대화가 중단될 것임.</li> <li>○ 현 북남관계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i) T/S훈련재개조치를 12. 15일한 철회 ii)주한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 iii)남측의 핵무기개발 실태 해명등을 요구함.</li> </ul>
<p>1992. 12. 11</p> <p>南北高位級會談 북측 책임연락관 최봉춘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連絡官 接觸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10일자 남측의 전통문관련 제9차 고위급회담을 예정대로 개최 키 위해서는 우선 12. 15까지 T/S 훈련 철회용단을 내려야 옳을 것임.</li> <li>○ 남측이 어떤 형태로든 T/S철회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책임연락 관 접촉이 가급적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함.</li> </ul>
<p>1992. 12. 12</p> <p>南北共同委員會 북측 위원장들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T/ S 訓練 再開時 高位級會談 流産威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각공동위들과 제9차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위하여 12. 15 한 T/S재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li> <li>○ 이에 대하여 남측은 북남상호사찰이 진행되지 않으면 T/S 훈련재 개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은 고위급회담 자체를 유산시키</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2. 1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8 차 委員接觸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규정 제3장 「사찰대상 선정」에 대한 토의에서 우리측은 군사 시설을 포함하여 혐의가 있는 모든 시설을 사찰하여야 하며 특별 사찰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함.</li> <li>○ 우리측안 제12조 ①항의 「기타시설」은 핵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하며 ③항의 「일정한 장소」는 핵기지를 말하는 것임.</li> <li>○ 「군사기지 사찰」은 일반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군사시설」에 한정되는 것임.</li> </ul>
<p>1992. 12. 17</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13 차 회의 (판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T/S훈련을 구실로 제9차 고위급회담등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남북 당국간 합의사항을 파괴·유린 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음.</li> <li>○ T/S 훈련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회의등을 통해 해결될수 있을 것이며,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을 상정하고 있는 것임.</li> <li>○ 핵사찰규정 관련 상호균형된 사찰이 보장되는 「상호주의」, 의심이 제기되는 모든곳에 대한 「성역없는 사찰」, 적시에 지속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사찰」이 필수적임을 재강조함.</li> </ul>
<p>1992. 12. 1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接觸」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핵통제공동위 회의가 비생산적 논쟁만을 되풀이하며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li> <li>○ 사찰규정의 토의를 위한 위원접촉을 12. 22,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2. 1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8차 委員接觸 (板門店 중감위 회의실)</p>	<p>려는 계획적인 술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T/S훈련을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저야 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규정 토의에 앞서 우리가 지난 제12차 회의시 제안한 3가지 요구사항 (12. 15일한 T/S철회, 주한미군기지 전면사찰, 남측핵 무기 개발해명)에 대하여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함.</li> <li>○ 사찰규정 제3장 「사찰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군사기지 사찰」과 「특별사찰」은 받아들일 수 없음.</li> <li>○ 「기타시설」과 관련해서는 「핵기지 안에 있는 핵폭발장치, 핵무기 발사·운반수단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li> </ul>
<p>1992. 12. 17</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13차 會議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S 訓練 再開決定을 철회하는 것만이 북남사찰을 실시하기 위한 열쇠이며 결렬된 공동위원회들과 제9차 고위급회담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임.</li> <li>○ 남측이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된 이후에도 핵무기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수수방관 할 수 없으며 범죄적인 핵무기 개발을 당장 중지하고 그 진상을 내외에 공개해야 함.</li> <li>○ 「비핵화 공동선언」은 조선반도의 구체적 현실 즉, 남측에는 핵무기·핵기지가 있고 우리측에는 없으며 우리측에 대해서는 핵개발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임.</li> </ul>
<p>1992. 12. 19</p> <p>南北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第9次 南北高位級會談 開催 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T/S 훈련연습을 강행함으로써 제9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게 만든데 대해 민족앞에 책임을 지고 사죄하여야 함.</li> <li>○ 남조선에서 T/S 훈련을 비롯하여 모든 회담 장애들이 제거된다면</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2. 21</p> <p>南北高位級會談 수석대표 玄勝鍾 국무총리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차 南北高位級會談 早速開催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고위급회담이 북측의 부당한 자세로 남북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예정대로 열리지 못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li> <li>○ 북측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합의사항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측은 안보태세 유지에 긴요한 T/S훈련을 계속할 수 밖에 없음.</li> <li>○ 북측은 대결시대의 구태와 사고의 틀속에서 억지주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li> <li>○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각 분야별 공동 위원회와 제9차 고위급회담이 조속 정상화되도록 해야 함.</li> </ul>
<p>1992. 12. 22</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 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12·24 委員接觸」開催提議 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의 12. 21일자 전통문관련 「12. 24 위원접촉」개최제외에 동의 하며, 제14차 기본회의 개최일자 문제는 위원접촉에서 논의하면 될 것임.</li> </ul>
<p>1992. 12. 23</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 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12·28 委員接觸」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의 12. 23일자 전통문과 관련 위원접촉을 12. 28에 개최할 것 을 제의하며 제14차 핵통제공동위 회의일자는 위원접촉의 성과를 보아가며 결정하기를 희망함.</li> </ul>
<p>1992. 12. 26</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 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接觸」再開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12. 14 위원접촉은 물론 12. 17 제13차 회의에서도 사찰규 정 토의는 외면한채 T/S훈련 등 거론으로 회의장을 정치선전장화 하면서 회의를 공전시켰음.</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2. 12. 2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基本會議・委員接觸」並行推進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회의와 위원접촉을 병행하여 진행할 데 대한 우리측의 정당한 제의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기본회의 개최제외에 성실한 입장과 자세를 취해야 함.</li> <li>○ 북남핵통제공동위 제 14차 회의는 12. 28, 10:00 판문점 우리측지역에서, 위원접촉은 12. 24 10: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1992. 12. 23</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基本會議・委員接觸」並行推進 거듭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 핵통제공동위 기본회의와 위원접촉을 병행하여 진행할데 대한 우리측의 근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li> <li>○ 핵통제공동위 제 14차 회의를 12. 28 개최할 것을 다시 제의하며 기본회의 날짜를 명백히 한다면 12. 24 위원접촉에 나갈 것임.</li> </ul>
<p>1992. 12. 26</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接觸」開催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핵통제공동위 기본회의를 회피하고 위원접촉만 하자고 하는 남측의 태도는 사찰규정 토의마저 무한정 끌어보려는 불순한 기도임.</li> <li>○ 핵통제공동위 사업을 진척시켜 나갈 의사를 가지고 기본회의 날짜</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상호사찰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접촉을 갖고 사찰규정 토의를 진척시키며 그 결과에 따라 기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li> <li>○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제14차 회의날짜를 정하지 않는 한 위원접촉을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였음.</li> <li>○ 북측이 진정으로 상호사찰을 실현시킬 의사가 있다면 우리의 위원접촉 제의에 조속한 시일내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함.</li> </ul>





**1993年**





## 1993年 主要 提議 · 主張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 1</p> <p>金泳三 次期대통령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開催用意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金日成주석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개방화 흐름에 동참한다는 가시적 모습을 보인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을 것임.</li> <li>○ 서둘지는 않겠지만 재임중 南北頂上會談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금세기 안에는 統一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함.</li> </ul>
<p>1993. 1. 13</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 위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接觸・全體會議」開催日字 수정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의 부당한 태도로 인하여 92. 6. 20한 상호사찰실시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아직도 사찰규정 토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li> <li>○ 사찰규정토의의 관련 우선 위원접촉을 갖고 사찰규정토의를 활발히 진척시켜 그결과에 따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우리측 기본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함.</li> <li>○ 이같은 견지에서 1. 15, 18, 21일 세차례 위원접촉을 열어 사찰규정 토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1. 28에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 1</p> <p>金日成 新年辭</p>	<p style="text-align: center;">聯邦制 統一方式 主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당국이 「北南合意書」이행을 방해하고 T/S 훈련을 재개하려는 것은 民族自主의 원칙을 부정하고 외세의 힘에 의거하여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여 보려는 반민족적 행위임.</li> <li>○ 民族自主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 두개 制度, 두개 政府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li> <li>○ 우리는 그 누구든지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과거를 묻지않고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民族의 統一問題를 협의할 것임.</li> </ul>
<p>1993. 1. 1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基本會議·委員接觸」並行推進 재차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2. 12. 26일자 남측 전통문에서 「기본회의」와 「위원접촉」 날짜를 정하는 것을 회피, T/S 핵전쟁연습 재개의도를 드러내고 핵통제공동위원회 사업이 진전될 수 없게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li> <li>○ 「비핵화공동선언」 채택 한뎬이 되는 1.20 북남핵통제공동위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1.15 제9차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 1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接觸」優先開催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차 위원접촉을 1. 15에 개최하고 그 이후의 위원접촉 및 제14차 전체회의 날짜는 1. 15 위원접촉에서 협의하여 정하길 희망함.</li> </ul>
<p>1993. 1. 18</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長接觸」開催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핵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사찰규정의 실질적 토의를 위한 위원접촉은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임.</li> <li>○ 위원접촉을 몇차례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사찰규정 토의를 진척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전체회의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함.</li> <li>○ 남북간 상호사찰규정 토의를 진척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고 향후 핵통제공동위 운영일정 협의를 위해 「위원장접촉」을 1. 25, 10:0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 1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基本會議·委員接觸」並行推進 거듭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규정 토의를 빨리 끝내고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응당 기본회의를 개최하여 T/S훈련 재개합의를 취소한다는 통보조치부터 취했어야 함.</li> <li>○ 이러한 입장에서 1. 15 제9차 위원접촉을 가지며 늦어도 1. 22에 기본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아가야 할 것임.</li> </ul>
<p>1993. 1. 14</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接觸」拒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제14차 기본회의 자체를 회피하려는 조건에서는 몇몇 위원들이나 마주 않는것이 의미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1. 22 기본회의 소집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함.</li> </ul>
<p>1993. 1. 20</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북측위원 장 최우진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委員長接觸」에 條件附 呼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규정 토의관련 기본회의와 위원접촉을 병행하여 가질 것을 거듭 제의하였으나 남측이 이를 거부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함.</li> <li>○ 위원장접촉을 갖는다 하더라도 회의일정과 같은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T/S훈련 재개문제와 같은 근본문제를 토의하여야 함.</li> <li>○ 쌍방 위원장접촉에서 T/S훈련 재개문제를 기본안건으로 토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25에 나갈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 21</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孔魯明위 원장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查察規程 優先採擇 입장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위원장접촉에 호응하면서도 T/S 훈련문제 토의를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임.</li> <li>○ 1. 25에 개최될 위원장접촉에서는 마땅히 사찰규정 채택문제와 핵 통제공동위의 향후 회담운영 문제를 협의하여야 함을 재강조함.</li> </ul>
<p>1993. 1. 25</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1차 委員長 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따라 군사공동위 소관사항이며 이를 구실로 사찰규정 토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li> <li>○ 남북상호핵사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즉각 위원접촉을 속개하여 사찰규정문안 토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회의를 병행하여 쟁점사항을 타결해 나갈 것을 촉구함.</li> <li>○ 사찰규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성역없는 사찰」과 「특별사찰」원칙을 전면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을 촉구함.</li> <li>○ 「군사기지 사찰」은 일반군사기지가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하여 의심이 제기되는 군사시설」을 의미하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은 수차례에 걸쳐 보장한 바 있음.</li> </ul>
<p>1993. 1. 26</p> <p>南北連絡事務所 孫仁教소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93 T/ S訓練 實施通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스피리트 '93 야외기동훈련을 93. 3 중순부터 약10일간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며 동 훈련에 참관을 초청함.</li> <li>○ 아울러 우리측도 북측의 주요 군사훈련에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기를 기대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 25</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제 1 차 委員長 接觸 (板門店평화회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남기본합의서 제9조와 비핵화공동선언 서문등에 위반되며 훈련에 동원되는 장비, 기술 역량, 작전계획 등을 볼 때 핵전쟁연습이 명백하므로 핵통제공동위 소관임.</li> <li>○ 만약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한다면 그것은 핵통제공동위 회의조차 결렬시키고 북남관계와 북남합의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li> <li>○ 남측이 제기하고 있는 「일반 군사기지 사찰」은 군사공동위 소관사항이며 「특별사찰」은 비핵화공동선언 제4항에 위반됨.</li> </ul>
<p>1993. 1. 27</p> <p>外交部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93 T/ S 훈련 即刻中止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T/S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구실 마련과 주한미핵·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 거부 및</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2. 2</p> <p>南北高位級會談 孔魯明 대변인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對話 呼應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합의사항을 자의로 파기하고 대화마저 거부하는 북한측의 태도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겠다는 의사로 밖에 볼 수 없음.</li> <li>○ 북한측이 우리측의 「T/S '93훈련 실시」를 대화재개 거부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핵무기 개발 의도를 은폐하고 대화중단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해 보려는 정치선전에 불과함.</li> <li>○ 북한측은 「위원접촉」을 속개하고 그성과를 바탕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개최, 핵사찰규정에 가서명 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호응하여 핵무기개발 의혹을 해소해야 함.</li> <li>○ 우리는 북한측이 대화의 마당으로 돌아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사의 요구와 온겨레의 여망에 부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대일·대미 관계 개선을 하려하지 않으며, 자주권이 존중되고 평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그들과 관계개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li> <li>○ 우리와 IAEA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사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부당한 조치가 강요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li> </ul>
1993. 2. 15	IAEA의 特別査察 拒否
駐러시아 北韓 大使 손성필 記者會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가 우리에게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2개소는 군사시설로서 그들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li> <li>○ 만약 IAEA가 임시이사회에서 특별사찰 실시의 강행을 결정할 경우 우리는 IAEA와 맺은 핵안전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을 것임.</li> </ul>
1993. 2. 17	「李仁模」送還 促求
北韓赤十字會 代辯人 聲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당국자와 적십자사는 이인모를 강제억류하고 사경에 이르르게 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우리는 이를 인륜도덕과 양심에 배치되는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함.</li> <li>○ 이인모의 병세가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형편에서 그를 자기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촉박한 문제임.</li> <li>○ 우리는 남한당국자와 적십자사가 이제라도 이인모를 조속히 우리측</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2. 19</p> <p>玄勝鍾 國務總理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基本合意書 등 實踐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발효후 1년 사이, 南과 北은 모든 문제를 대화에 의해 해결할수 있는 기본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긴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음.</li> <li>○ 南과 北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 긴급한 현안문제 특히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적 관계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어렵게 마련한 민족문제 해결의 자주적 場을 잘 활용하고 이를 확대해 나아가야 함.</li> <li>○ 현재 남북간의 교착상태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쌍방간 합의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li> </ul>
<p>1993. 2. 21</p> <p>金泳三 次期 大 統領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特別査察 受容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核査察」과 「南北對話」는 현재 상호연계관계에 있으며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나 企業人의 방북도 허용할 수 없음.</li> <li>○ 임기중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을 확신하나 성급히 추진하지는 않겠으며 '90년대에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함.</li> </ul>
<p>1993. 2. 25</p> <p>金泳三 大統領 就任辭</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 用意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남과 북은 서로 협력할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임.</li> <li>○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올수는 없으며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함.</li> <li>○ 金日成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을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 31</p> <p>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決定</p>	<p>남조선의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S훈련의 재개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아울러 우리는 이에 대처하여 필요한 자위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음.</li> <li>○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보고 핵전쟁 연습인 T/S훈련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행위를 걷어치워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外資誘致 關聯法 採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법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채택</li> </ul>
<p>1993. 2. 7</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核査察問題는 北韓-IAEA간 문제라고 強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사찰문제는 우리와 IAEA간에 해결할 문제로서, 미·일등 일부 국가들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를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공화국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2. 8 盧泰愚 大統領 外信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核開發 拋棄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면 북한과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될 수 있을 것임.</li> <li>○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의 핵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씻고 경제에 치중하라는 메시지를 金日成 주석에게 전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2. 19</p> <p>南北核統制共同 委員會 北側委員 長 최우진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에 넘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北韓核 特別查察計劃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가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문제를 제기한 것은 핵활동과 무관한 군사기지에까지 사찰을 확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보려는 미국의 거짓 정보제공과 압력에 따른 것임.</li> <li>○ 만일 미국이 기도하는대로 IAEA 이사회에서 부당하게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이 결정된다면 그것이 어떤 엄청난 후과를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함.</li> <li>○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 소동을 벌이려는 외부세력에 추종, 돌격대 행세를 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준렬히 규탄함.</li> </ul>
<p>1993. 2. 25</p> <p>南北政治分科委 員會 북측위원장 백남준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T/ S訓練 및 IAEA 特別查察計劃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여러차례의 IAEA 비정기사찰 과정에서 핵정책의 결백성이 입증되었으며, IAEA 핵사찰 수용전에 중지했던 T/S훈련을 우리의 평화적 핵정책이 확정된 후에 재개하려는 것은 용납못할 배신행위임.</li> <li>○ 남조선당국자들이 범죄적 T/S핵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는 것은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완전 차단함으로써 남조선의 미핵무기 및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막고</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2. 26 政府代辦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特別査察 受容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이사회 의 2. 25 특별핵사찰 수용촉구 「결의」는 북한의 핵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임.</li> <li>○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북한이 이번 결의에 조속 호응할 것을 기대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2. 25</p> <p>김계관 순회대사 IAEA 理事會 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特別査察 拒否表明</p> <p>저들의 핵개발 책동을 은폐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남관계를 동결시키고 민족에 핵참화를 들썩우게 될 '93 T/S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우리에게 대한 특별사찰 소동에 앞장서 날뛰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견어치워야 함.</li> <li>*북남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 북남핵통제공동위 및 북남군사분과위 북측위원장들도 같은 내용의 비난발언을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핵사찰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개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IAEA의 결의가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하지 않을 것임.</li> <li>○ 부당한 결의가 채택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핵담보협정 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으며,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li> </ul>
<p>1993. 3. 8</p> <p>朝鮮人民軍 最高 司令官 命令</p>	<p style="text-align: center;">全國 · 全民 · 全軍에 準戰時狀態 宣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벌이는 T/S훈련은 공화국 북반부를 선제 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 전쟁임.</li> <li>○ 우리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며 우리공화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명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全國, 全民, 全軍이 93. 3. 9부터 준전시상태로 넘어갈것</li> <li>- 조선인민군 육해공군부대, 조선인민경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원수들이 어느때 덤벼들어도 일격에 소멸할 수</li> </ul> </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3. 12</p> <p>南北連絡事務所 孫仁教소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李仁模노인 送還問題 連絡官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민족화합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인모 노인이 그의 가족을 상봉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없이 방북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li> <li>○ 이인모 노인의 방북에 따른 시기, 방법 등 실무절차 협의를 위해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1993. 3. 12</p> <p>政府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NPT 脫退 撤回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3. 12 성명은 범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미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 등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행위임.</li> <li>○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부당한 구실로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하겠다고 하는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하는 것임.</li> <li>○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핵무기 비확산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2. 25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요청한 핵사찰을 허용하고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사찰에도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함.</li> <li>○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 조약의 탈퇴선언이후 야기될지도 모를 어떤 도발적 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경고함.</li> </ul>
<p>1993. 3. 16</p> <p>南北連絡官 接觸 (판문점 중감위</p>	<p style="text-align: center;">「李仁模」노인 送還節次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환일시·장소 : 93. 3. 19, 11:00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li> <li>○ 기타 : 우리측의 담당의사, 간호사 등이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까지</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3. 12</p> <p>北韓政府 聲明</p>	<p>있는 전투 동원태세를 갖출 것</p> <p>- 전체인민들은 한손에는 망치와 낫, 다른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것</p> <p style="text-align: center;">核武器擴散禁止條約 脫退宣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시작되기 전에 중지하였던 T/S 합동군사연습을 핵사찰이 추진되고 있는때에 재개함으로써 핵위협을 노골적으로 증대시켰음.</li> <li>○ 더욱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행하려는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에 합세해 나서고 있는 것임.</li> <li>○ 우리정부는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함.</li> <li>○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미국이 핵위협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독자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돌아설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 것임.</li> </ul>
<p>1993. 3. 16</p> <p>南北連絡官 接觸 (板門店 中韓위)</p>	<p style="text-align: center;">「李仁模」送還節次 合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환일시·장소 : 93. 3. 19, 11:0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li> <li>○ 기타 : 이인모 가족과 북한의료진이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미중</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회의실)</p> <p>1993. 3. 16</p> <p>金泳三 大統領, 外務部 업무보고 시 발언</p>	<p>동행하며 병상기록을 북측에 전달기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NPT 脫退撤回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NPT 탈퇴선언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나 우리는 결코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음.</li> <li>○ 북한은 하루속히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철회하고 국제적인 핵사찰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ul>
<p>1993. 3. 24</p> <p>南北連絡事務所 孫仁教소장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天道教人 南韓訪問 招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도교 중앙총부 오익제교령이 북한친도교회 정신혁 위원장에게 보내는 초청장을 3. 26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에서 전달할 계획임.</li> <li>○ 초청내용은 「천일기념일」(4. 5)에 북측 교역자 10명 정도를 초청하며,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행사의 공동개최를 희망하고 있음.</li> </ul>
<p>1993. 3. 29</p> <p>韓昇洲 外務部長 官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NPT 復歸時 T/S 훈련 규모축소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NPT 탈퇴를 철회하고 '93. 4월말까지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5개의 반대급부를 고려함.</li> <li>· IAEA의 주한미군기지 사찰 허용</li> <li>· T/S훈련 명칭변경 및 규모축소</li> <li>· 북한에 대한 불공격 보장</li> <li>· 남북교역 확대</li> <li>· 미국, 일본 등의 대북한 관계개선 지원</li> <li>○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93. 5부터 외교, 경제적 압력이 강화될 것임을 경고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회의실)	키로 함.
1993. 3. 24 朝鮮人民軍 最高 司令官 報道	<p style="text-align: center;">準戰時狀態 解除</p> <p>○ '93 T/S 합동군사연습의 실동훈련이 종료 (3. 18)됨에 따라 준전시상태 선포(3. 8~)를 해제함.</p>
1993. 3. 25 南北連絡事務所 北側所長 최봉춘 對南電通文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의 北韓天道敎人 招請 拒否</p> <p>○ 남측 천도교 중앙총부 오익제 교령의 제의(3. 24)는 지금 형편에서 그어떤 초청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함.</p>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4. 1</p> <p>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NPT 脫退撤回 및 IAEA 査察受容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기에 앞서 NPT 탈퇴를 철회하고 IAEA 사찰수용 및 남북상호사찰에 호응할 것을 촉구함.</li> <li>○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우방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li> </ul>
<p>1993. 4. 1</p> <p>外務部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유엔安保理 回附決議 支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의 이번 결의는 북한핵개발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이의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임.</li> <li>○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핵환산금지조약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IAEA 사찰을 수락할 것을 촉구함.</li> </ul>
<p>1993. 4. 2</p> <p>韓完相 副總理겸 統一院長官 기자 간담회</p>	<p style="text-align: center;">NPT 脫退關聯 UN의 對北韓 制裁시  동참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이 대북경제 제재조치를 결의할 경우 현재 간접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물자교역도 전면금지될 것임.</li> <li>○ 빈주재 북한대사 김광섭이 4. 1 IAEA의 결의와 관련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은 조치가 민족내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li> <li>○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이산가족문제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4. 1</p> <p>駐민 北韓大使 김광섭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유엔安保理 회부관련 自衛措置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가능한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넘긴 것(4. 1)은 대결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모든 책임은 대결을 추구한 나라들이 져야 함.</li> <li>○ 우리는 국가자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임.</li> </ul>
<p>1993. 4. 5</p> <p>外交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北韓核問題 유엔安保理 回附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이사회가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에 넘길데 대한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 단죄함.</li> <li>○ 우리는 미국과 IAEA의 양면적 이중기준 적용을 엄중시하지 않을</li> </ul>

■ 1993年 4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4. 8</p> <p>最高人民會議 제 9기 제5차 회의</p>	<p>수 없으며, UN에 제소되고 국제공동체의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비핵화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이른바 핵문제는 본질상 우리 나라와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미국사이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UN 무대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님.</li> <li>○ 우리 공화국의 반핵평화정책과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만약 UN안보리가 그 어떤 집단적 제재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대응한 효과적인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全民族 大團結」 10대 綱領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 평화적,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li> <li>②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li> <li>③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li> <li>④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li> <li>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위구를 다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li> <li>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 동참</li> <li>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li> <li>⑧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li> <li>⑨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li> <li>⑩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對南 「4개 要求事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세의존정책 포기</li> <li>② 주한미군철수 의지표명</li> <li>③ 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영구중지</li> </ul>

■ 1993年 4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4. 10</p> <p>外交部 代辭人 談話</p>	<p>④ 핵우산 탈피</p> <p>*金正日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하고 제1부위원장에 오진우 現 부위원장을 선출</p> <p style="text-align: center;">NPT 脫退關聯 유엔安保理 議長聲明 非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핵문제를 취급하려 한다면 응당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부터 문제시하여야 하며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됨.</li> <li>○ 핵담보협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은 시종일관하며 이제라도 IAEA가 부당한 결의를 철회하고 우리의 협상제외에 응해 나오기를 바랍.</li> <li>○ 이 문제의 중국적 해결여부는 朝美 協商에 달려있으며 유엔안보리가 關聯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이 우리와의 협상에 나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실천적 대책을 취하는 것임.</li> </ul>
<p>1993. 4. 24</p> <p>最高人民會議 양형섭 議長 對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金日成의 「10대 강령」實現을 위한 呼訴文 發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과 이 강령의 실현을 위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남한과 해외동포 인사(53명)에게 발송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 지지 및 호응이 있기를 기대함.</li> <li>- 南韓 : 황인성 국무총리,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박관용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사회단체 대표 43명</li> <li>- 海外同胞 : 한민족연구회 회장 노길남 등 10명</li> </ul>
<p>1993. 4. 27</p> <p>朝鮮宗敎人協議會 對南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10대 강령」에 南側宗敎人 호응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반민족 세력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핵문제를 들고 계속 의세를 찾아다니면서 동족에 대한 그 어떤 국제적 제재를 부추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음.</li> <li>○ 남조선의 모든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은 남조선 당국이 의세의존정</li> </ul>

■ 1993年 4月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4. 29</p> <p>「汎民聯·汎青學聯」北側本部 對南呼訴文</p>	<p style="text-align: center;">「10대 강령」실현 大衆鬪爭 선동</p> <p>책을 포기하고 미군 철수의지를 표명하며, 외국군대와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영원히 중지하고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파쇼의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기무사를 완전히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들을 무조건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전 민족 대단결의 활로를 열어 나아가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련과 범청학련의 모든 조직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한결같이 지지·호응해 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함.</li> <li>○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실현의 장애로 되는 유형무형의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함.</li> <li>○ 범민련과 범청학련 조직들은 당면한 공동의장단 회의와 제4차 범민족대회, 제3차 북·남·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을 '90년대 통일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는 대축제로 되게 하여야 함.</li> </ul>
<p>1993. 4. 29</p> <p>「職盟」中央委 對南呼訴文</p>	<p style="text-align: center;">「10대 강령」실현 反美鬪爭 선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참된 삶을 누리자면 모든 투쟁을 반미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li> <li>○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과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을 철폐하고 안기부 등 파쇼폭압기구를 해체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할 것을 호소함.</li> </ul>
<p>1993. 5. 5</p> <p>北韓赤十字會 委員長 代理 이성호 對南放送</p>	<p style="text-align: center;">거제도발굴 朝鮮人民軍 遺物 반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거제도에서 발견된 지난 전쟁시기 조선인민군 포로들과 관련한 30여점 자료 가운데는 미군이 조선인민군 포로들에게 총기성능 시험과 세군무기실험을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고 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5. 6</p> <p>韓完相 副總理 統一院長官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 NPT 復歸時 宥和措置 檢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과 남북한 동시사찰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NPT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의 긴장상태는 크게 완화될 것임.</li> <li>○ 북한이 오는 6월 12일 이전까지 NPT에 복귀하면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북유화책이 가능할 것이며, 사찰문제가 해결되어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면 남북관계는 파격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임.</li> </ul>
<p>1993. 5. 7</p> <p>軍停委 유엔사측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DMZ內 偶發事件 即刻通報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분계선에서의 5.2 총격사건 관련 북측의 통지는 비무장지대의 사건확대와 긴장고조 예방을 위해 좋은 징표임.</li> <li>○ 이러한 상호교환은 군정위 쌍방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전을 유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될 것임.</li> <li>○ 쌍방이 DMZ 긴장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상대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재의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5. 10</p> <p>統一院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10大綱領」 書信攻勢 中止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정부는 지난 2. 25 金泳三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한 동포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진심으로 협력할 의사와 함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천명하였음.</li> <li>○ 그러나 북한은 4. 7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과 「호소문」을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과 조총련 명의로 우리측 국무총리를 비롯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오고 있음.</li> <li>○ 북한이 참으로 민족화해와 복리를 바란다면 구태의연한 냉전적 차원의 대남서신공세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의 실효성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대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임.</li> </ul>
<p>1993. 5. 12</p> <p>外務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NPT 復歸 및 IAEA 特別查察 受容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정부는 UN 안보리가 북한의 NPT 탈퇴결정 철회와 IAEA의 특별사찰을 수락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5. 11)한데 대해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함.</li> <li>○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UN안보리의 이번</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5.9~10</p> <p>豆滿江地域開發 計劃會議 (평양)</p>	<p style="text-align: center;">UNDP主管 豆滿江開發計劃 管理委員會 제3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主要 議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간 조정위원회 및 국제회사의 직무 및 구성</li> <li>- 두만강개발사업 국제협약 및 초안검토</li> <li>- 두만강개발유역내 자원 및 산업개발과 개발사업의 환경분야 기본 원칙</li> <li>- 통신, 운송등 사회간접시설 기본 개발계획 등</li> </ul> </li> <li>○ 회의에서는 「두만강지역개발 조정위원회」와 「두만강지역개발은행」 창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개의 문건을 채택</li> </ul> <p>*참가국 :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남측은 북경경유 9명 참가)</p>
<p>1993. 5. 12</p> <p>外交部 代辦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NPT脫退 관련 「유엔決議案」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NPT탈퇴는 나라의 최고이익이 위협당하고 있는 비정상적 사태에서 취한 자위적 조치로서 이는 안보리가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그 어떤 결의를 채택할 법률적 명분도 타당성도 없음.</li> <li>○ 가해자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만 압력을 가하고 있</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5. 14</p> <p>韓完相 副總理겸 統一院長官 기자 회견</p>	<p>결의는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단호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반영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이번 결의에 호응하여 올 것을 촉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관련 南北對話 用意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안보리의 대북한 결의안 채택에 따라 국제공조 체제에 협조하면서 남북간 접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음.</li> <li>○ 美·北韓 高位級會談 결과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재개되는 남북대화에서는 핵문제를 주의제로 하되, 경제협력문제·인도적 차원의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임.</li> </ul>
<p>1993. 5. 18</p> <p>國會 외무통일위 원회 對北決議案</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早速解決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UN 안보리의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즉각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의거 남북 상호사찰에 응하여야 할</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5. 17</p> <p>「祖平統」代辯人 談話</p>	<p>는 UN안보리의 2중기준 정책은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는 우리에게 대한 내정간섭으로서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 UN안보리가 이번 결의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부당한 압력책동을 감행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全民族的 對話 提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의 당국과 각당, 각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든 차이와 편견에서 벗어나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민족중대사를 논의해야 할 때임.</li> <li>○ 우리는 이러한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기 위해 쌍무적이든 다무적이든 남조선의 각 정당·단체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접촉할 용의가 있음.</li> <li>○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민족대단결의 견지에서 볼 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인정함.</li> <li>○ 10대강령의 이념에 맞게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각자의 처지에 상응한 기여를 하기 바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이든 단체이든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대화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채택</p> <p>1993. 5. 19</p> <p>黃寅性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連絡事務所 所長 교체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임 : 李俊求(통일원 연락부장)</li> <li>○ 해임 : 孫仁教</li> </ul>
<p>1993. 5. 20</p> <p>黃寅性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高位級會談 우리측 代表名單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대표 黃寅性(국무총리)</li> <li>○ 대표 片將圓(합참 제1차장) 宋榮大(통일원 차관) 鄭鍾旭(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李東馥(국무총리 특보) 李承坤(외무부 대사) 朴庸玉(국방부 군비통제관)</li> </ul>
<p>1993. 5. 20</p> <p>黃寅性 國務總理 對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解決을 위한 高位級會談 「代表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비핵공동선언의 정신과는 달리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되고 있음.</li> <li>○ 핵문제는 그 중요성과 긴박성으로 하여 한시도 해결을 늦출 수 없으며 국제기구들의 조치 이전에 남북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li> <li>○ 남북쌍방의 고위급회담 대표 2명이 참가하는 「대표접촉」을 5. 27, 10:00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우리측에서는 송영대 대표와 이승곤 대표가 참가할 것임.</li> <li>○ 「대표접촉」에서는 핵문제 해결 및 이에 수반되는 기타 현안문제들이 토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 호응을 기대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5. 29</p> <p>黃寅性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 및 北側이 제기한 問題協議 「代表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 해결 및 이에 수반되는 그밖의 현안문제와 북측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들을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하기 위해 6. 5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li>○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우리측에서는 송영대 대표, 이승곤 대표와 함께 4명의 수행원이 나갈 것임.</li> </ul>
<p>1993. 5. 31</p> <p>韓昇洲 외무부장 관 外交協會 招 請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對北韓 開放支援 新外交 5大 基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신외교 5대 기조로서 세계화, 다변화, 다원화, 지역협력, 미래지향 정책을 적극 추진함.</li> <li>○ 북한과의 적대적 경쟁적 관계를 가능한 한 빠른시기에 협력적 공존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감.</li> <li>○ 북한이 역내 평화와 경제질서에 참여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통일기반을 조성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5. 25</p> <p>政務院總理 강성산 對南書翰</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앞에 누적되어 있는 중대사들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으로서 쌍방 최고당국자들이 임명하는 특사들을 교환할 것을 제의함.</li> <li>○ 특사들은 나라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하여 쌍방정상들이 만나는 문제와 현안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중대한 뜻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아 할 수 있을 것임.</li> <li>○ 특사들은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기 통일사업을 전담하여 보는 부총리급으로 하며 그들의 교환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임.</li> <li>○ 특사교환을 위한 쌍방 실무자접촉은 부부장(차관)급을 책임자로서 하여 2명으로 하며 5. 31,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임.</li> </ul>
<p>1993. 5. 31</p> <p>政務院總理 강성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등 협의 「特使交換」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중대사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부터 최고위급의 특사를 교환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지체없이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함.</li> <li>○ 특사들의 교환방문은 핵문제를 비롯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을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될 것임.</li> <li>○ 특사들의 교환방문을 실현하기 위해 6. 4,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쌍방 실무자접촉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2</p> <p>黃寅性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特使交換問題 協議「實務代表接觸」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을 통해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측이 제기한 특사교환 문제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li> <li>○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와 북측이 제기한 특사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 5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2</p> <p>北韓·美國, 高位 級會談 開催 (6.2-11, 뉴욕)</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NPT 脫退留保」共同聲明 採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은 4차례에 걸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핵문제 및 관계개선 문제 등을 협의하고 공동성명 채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불위협</li> <li>- 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을 포함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상호존중하고 내정 불간섭</li> <li>-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li> </ul> </li> <li>○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 쌍방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li> <l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NPT로부터의 탈퇴 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정지</li> </ul>
<p>1993. 6. 3</p> <p>「汎靑學聯」북측 본부의장 허창조 對南 放送便紙</p>	<p style="text-align: center;">「韓總聯」의 南北靑年學生會談 제의 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공화국 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소속 청년학생들에게 형제적 인사를 보냄.</li> <li>○ 우리는 한총련이 제안한대로 6. 12, 10:00 판문점에 범청학련 북측본부 대표단과 참관단 성원들을 내보낼 것임.</li> </ul>
<p>1993. 6. 4</p> <p>政務院總理 강성 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問題」협의 實務者接觸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쌍방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적 절차토의에 핵문제를 섞어 놓으려는 것은 판문점 노상에서 시간이나 보내고 특사교환을 지체시키며 비핵화실현 자체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뿐임.</li> <li>○ 우리의 실무자접촉 제의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고 성의있게 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同접촉에서는 특사들의 방문일시등 몇가지 실무절차 문제들을 협의하면 될 것임.</li> <li>○ 오는 6. 8,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쌍방 실무자접촉이 반드시</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7</p> <p>黃寅性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特使交換 問題協議 實務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은 이제라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켰던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와 남북 당국간 실무대표 접촉에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특사교환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li> <li>○ 남북 당국간 실무대표 접촉에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와 특사교환 문제를 함께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북측이 제시한 6. 8, 10:00 2명의 우리측 대표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 나갈 것임.</li> </ul>
<p>1993. 6. 8</p> <p>金泳三 大統領 司法府 幹部接見 時 발언</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頂上會談前 北韓核問題 先決立場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의혹이 철저히 해소되어야 하며, 북한이 이에 성의를 보일 경우 경제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이루어질 것임.</li> <li>○ 우리는 과거와 같이 정상회담만을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앞서 핵문제해결과 신뢰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함.</li> </ul>
<p>1993. 6. 9</p> <p>黃寅性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特使交換問題 協議 實務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적 차원에서 핵문제를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측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제라도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기를 촉구함.</li> <li>○ 북측이 6. 8 전화통지문에서 핵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인정한 점에 유의하면서, 핵문제 및 특사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 10, 15:00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당국간 실무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8 政務院總理 강성 산 對南電通文</p>	<p>이루어지게 되길 희망하며, 6. 7 이 접촉에 나갈 우리측 실무자들 을 통지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問題」 협의 實務者接觸 재차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북남사이의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되고 있으며, 이것은 북과 남의 책임있는 고위급협 의와 쌍방 최고위급 결단에 의해서만 풀릴수 있음.</li> <li>○ 쌍방 특사교환이 실현되면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최우 선적으로 협의·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함.</li> <li>○ 이 접촉을 6. 10,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지자는 것을 제의하 면서 우리측 실무자 명단은 접촉전야에 통지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12</p> <p>外務部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NPT 脫退留保  긍정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li> <li>○ 핵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NPT 체약국으로서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남북상호사찰 실현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임.</li> <li>○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의혹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관계에 실질적 진전이 있게 되길 기대함.</li> </ul>
<p>1993. 6. 14</p> <p>黃寅性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議題」不明示 實務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유보하고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호응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li> <li>○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관련 쌍방 당국의 실무대표가 일단 만나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쌍방 의견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li> <li>○ 북측이 제시한 6. 15, 10:00 판문점 통일각에 2명의 우리측 대표와 4명의 수행원이 나갈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11</p> <p>政務院總理 강성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問題」협의 實務者接觸 거듭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접촉의 격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낮은 급의 실무접촉에만 집착하고 있음.</li> <li>○ 오는 6. 15,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남 최고위급 특사를 교환하기 위한 실무자접촉을 가질 것을 다시금 제의하며 이 접촉에 김완수(정무원 책임참사), 전용렬(정무원 책임지도원)을 내보낼 것임.</li> </ul>
<p>1993. 6. 12</p> <p>南北 靑年學生會談 북측대표단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靑年學生會談 무산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12일 북남학생회담의 무산은 남조선 당국이 말하는 개혁이 거짓이고 변화도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음.</li> <li>○ 북남 청년학생회담 북측 대표단은 동족인 청년학생들의 접촉마저 범죄시하면서 이번 판문점 회담을 가로막아 나선 남조선 당국자들의 행위를 전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에 대한 도전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함.</li> </ul>
<p>1993. 6. 15</p> <p>政務院總理 강성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問題」협의 實務者接觸 수락 재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접촉에서 명백한 주제도 없이 이것 저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거니와 우리들 사이에 합의 못한 것을 아래급의 실</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22</p> <p>黃寅性 國務總理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核問題 · 特使交換 節次問題 協議 實務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도 남북관계개선과 민족복리를 위해 북측이 제안한 특사교환을 실현시키자는 입장인 만큼 실무대표접촉에서 핵문제에 관한 기초적 협의와 함께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 협의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임.</li> <li>○ 북측이 제시한 6. 24, 10:00 판문점 통일각에 송영대, 이승곤 2명의 대표와 4명의 수행원을 내보낼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18</p> <p>外交部 제1부부장 강석주 談話</p>	<p>무자들에게 말긴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를 포함 북과 남의 현안문제들을 협의할 특사교환을 하루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람.</li> <li>○ 쌍방 실무자접촉을 6. 24,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IAEA의 不公正性 해결후 査察受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朝·美사이에 상호존중과 불가침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40여년간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임.</li> <li>○ 우리는 회담에서 NPT에 복귀하지 않고서도 핵전파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핵문제 해결방도를 제시하였으며 미국측도 우리의 비핵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li> <li>○ 우리가 NPT탈퇴효력 연장기간중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을 받는 문제는 IAEA의 불공정성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매우 신중한 문제로 제기됨.</li> </ul>
<p>1993. 6. 23</p> <p>駐유엔 副大使 허종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6·25 反美群衆集會 取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25 발발 43주년 즈음 군중집회가 금주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북한·미 고위급회담의 정신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금년에는 취소했음.</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24</p> <p>韓昇洲 外務部長 官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解決 3段階 推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양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3단계 전략에 따라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북한 대화와 남북대화를 병행 추진함.</li> <li>① 북한의 NPT 복귀</li> <li>② IAEA의 특별사찰 관철</li> <li>③ 남북한 상호사찰 및 미·북한 관계개선</li> </ul>
<p>1993. 6. 26</p> <p>吳隣煥 政府代詳 人 談話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側の 南北當局間 對話中斷 遺憾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이 핵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실무대표접촉 제의를 거부하는 한편, 우리측을 비방하면서 남북당국간 대화를 사실상 단절시키는 태도를 표명한 것은 실로 유감임.</li> <li>○ 북한측은 핵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음.</li> <li>○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핵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고 평가가 정착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7천만 겨레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으로서 핵문제해결 회피로 초래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li> <li>○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을 것이며, 북한측의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함.</li> </ul>
<p>1993. 7. 6</p> <p>金泳三 大統領 제6기 平統諮問 會議 開會辭</p>	<p style="text-align: center;">3段階 · 3基調 統一政策 申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은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남북연합」단계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1민족 1국가의 「통일」 조국으로 나가야 함.</li> <li>- 통일로 가는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통일의 길은 민족번영의 길로 되어야 함.</li> <li>○ 남과 북이 단계적 통일방안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정책의 3대 기조로서 민주적 절차의 존중, 공존공영의 정신, 민족복리의 정신 등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6. 24</p> <p>駐파키스탄 大使 최수일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NPT 再加入」不可立場 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가 일부국가의 핵무기개발은 무시하면서 조선의 평화적 핵이용에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함.</li> <li>○ 조선은 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했으며 이 조약에 재가입하지 않을 것임.</li> </ul>
<p>1993. 6. 26</p> <p>政務院總理 강성 산 談話發表</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 撤回, 南北當局間 實務代表接觸 霧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실무급이 마주앉아 핵문제에 관한 기초적 협의를 할 것을 다시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우리의 특사교환제의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음.</li> <li>○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요즈음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평화협상 제의에 도발적인 '93 을지 민관합동군사훈련으로 대담해 나서고 있는 사실임.</li> <li>○ 남조선 당국은 이러한 불순한 행동을 조·미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더욱 우심하게 벌이면서 특사교환 제안을 유산시키는데까지 나아가고 있음.</li> <li>○ 남측의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특사교환 제안이 실현될 수 없게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우리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이 지게 될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7. 6</p> <p>韓完相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제6 기 平統諮問會議 報告</p>	<p>천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解決 4個 立場 言明</p> <p>① 북한 핵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                  ② 북한 핵문제 해결은 가능한 한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                  향으로 방법을 모색함.                  ③ 한·미간 및 국제적 공조체제에 입각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함.                  ④ 북한핵문제는 북한에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벌여주지 않는 방향에                  서 조속 해결함.</p>
<p>1993. 7. 10</p> <p>韓·美 頂上會談 (서울)</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의 NPT殘留, IAEA 査察受容 共同認識</p> <p>○ 양국정상은 북한의 NPT 잔류·IAEA사찰수용·효율적 상호사찰                  을 통한 핵의혹의 조속해소 필요성에 공동 인식함.                  ○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개발에 대한 강경대응, 미·북한 고위                  회담의 생산적 한계내에서의 진행, 미·북한 접촉시 한국과 긴밀협                  조,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등 입장을 표명하고 남북문제의 당사                  자 해결원칙 등을 지지 표명함.                  * 美 클린턴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북한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7.14~19 北韓·美國, 제2 단계 高位級會談 (제네바)</p>	<p style="text-align: center;">북한의 「南北對話·對 IAEA協商 再開」 共同聲明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은 3차례의 접촉을 갖고 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남대화, 북한과 IAEA간 대화재개문제와 북한의 경수로 지원문제 등을 협의하고 공동성명 채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共同 聲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불사용 및 무력으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담보원칙에 대한 공약 재확인</li> <li>○ 쌍방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7. 20 外務部 代辯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단계 美·北韓會談 核問題解決 진전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한 접촉결과 양측이 합의·발표한 내용은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진전으로 된다고 평가함.</li> <li>○ 북한이 핵의혹 해소를 위해 IAEA에 의한 전면적 안전조치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이 긴요함을 인정하면서, IAEA 및 남·북 접촉에도 응하겠다고 한 것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임.</li> <li>○ 향후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조속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주시할 것이며 IAEA와의 협의 및 남·북 접촉에 적극 임할 것을 기대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7. 23</p> <p>外交部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단계 美·北韓會談, 核問題 解決對策마련 強調</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며 그를 위한 방도를 북한과 함께 탐구할 용의를 표명</li> <li>○ 쌍방은 국제원자력기구 담보의 완전·공정한 적용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 강화에 필수적이라는데 견해일치</li> <li>-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li> <li>○ 북한과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li> <li>- 북한은 북남회담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시작할 용의 재확인</li> <li>○ 북한과 미국은 전반적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개월내 다음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뉴욕회담이 핵문제와 朝·美 사이 현안문제들의 해결원칙을 제시한 회담이었다면 이번 제네바 회담은 그 실행을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마련한 것임.</li> <li>○ 우리의 현존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로 바꾸는 문제는 기술·재정적 문제에 앞서 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자세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7. 27</p> <p>韓完相 副總理 統 統一院長官 記者 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IAEA 核査察 수용시 企業人 訪北許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하면 즉시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 본격적인 대북투자 문제를 논의토록 하겠으며, 핵투명성 보장단계에 따라 경제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음.</li> <li>○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3단계 통일론의 첫단계는 바로 실시될 수 있으며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 오는 '95년도나 늦어도 '96년에는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가 가능할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 미국이 경수로 도입방안을 외면, 순수 사찰방식 일면에 치중한다거나 법률 및 재정적 이유를 구실로 그 실현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볼 수 없음.</li> <li>○ 미국은 북남대화를 통해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며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이해하고 지지를 표시하였음.</li> </ul>
<p>1993. 8. 1</p> <p>「汎民聯」北側本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汎民族大會관련 實務會談 참가동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련 북측본부는 제4차 범민족대회 남측 준비위의 3자 실무회담(8. 6 서울) 제의(7. 30)에 따라 이에 참가할 3명의 대표를 판문점 경유 서울에 파견할 것임.</li> </ul>
<p>1993. 8. 3</p> <p>제4차 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員長 백인준 對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汎民族大會관련 實務會談 參加名單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범민족대회 관련 북·남, 해외측의 3자 실무회담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명단을 통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허혁필(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li> <li>대표 정덕기(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li> <li>대표 허창조(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li> </ul> </li> <li>○ 이와 관련 우리측 실무대표들의 판문점 통과와 신변 안전담보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8. 4</p> <p>南北高位級會談 首席代表 黃寅性 國務總理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4차 核統制共同委員會 再開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지난 5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실무대표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유감임.</li> <li>○ 최근 북측이 대미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북회담의 조속재개 표명은 다행임.</li> <li>○ 어제 남북핵통제공동위를 조속 정상화시켜 사찰규정을 마련하고 상호핵사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8. 10,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li> <li>○ 우리측 핵통제공동위 교체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李承坤(외무부 대사)</li> <li>부위원장 : 丁世鉉(대통령비서실 비서관)</li> <li>위원 : 張在龍(외무부 국장)</li> <li style="padding-left: 40px;">任台淳(통일원 자문위원)</li> <li style="padding-left: 40px;">金雙烈(국방부 준장)</li> <li style="padding-left: 40px;">李昇九(과기처 심의관)</li> <li style="padding-left: 40px;">鄭義夫(총리실 심의관)</li> </ul> </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8. 4</p> <p>제4차 汎民族大會 北側準備委員長 백인준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b>3者 實務會談 대표단 派遣通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제4차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3자 실무회담에 참가할 3명의 대표를 8. 5 서울에 보내려 함.</li> <li>○ 남측 당국이 우리측 실무대표들의 판문점 통과와 신변안전담보 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기대함.</li> </ul>
<p>1993. 8. 7</p> <p>「汎民聯」北側本部 의장 백인준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차 汎民族大會 北側代表 派遣通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민련 북측본부와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제4차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의 요청에 따라 8.13 판문점을 거쳐 300명의 대표들을 서울에 파견하려고 함.</li> <li>○ 우리는 남측 당국이 서울에 나갈 우리측 대표들의 판문점 통과와 신변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해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 주기를 기대함.</li> </ul>
<p>1993. 8. 9</p> <p>南北高位級會談 北側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b>南側의 核統制共同委 開催提議 拒否</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진실로 우리와 핵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북남대화에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회피해 온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데 대한 초보적인 의사표시라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8. 10</p> <p>韓國基督教教會 協議會 총무 권 호경 對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인간띠잇기 대회 및 汎民族大會 並行推進 불가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에서 제의한 범민족대회와 남북인간띠잇기대회를 함께하는 문 제를 여러측면에서 검토하였으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함.</li> <li>○ 우리는 인간띠잇기대회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전민족적 축제로 승화되기 바라며, 내년에는 북측과 함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통일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8. 9</p> <p>朝鮮基督教徒聯盟 서기장 고기준 對南電通文</p>	<p>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이 내년에도 T/S훈련을 할 것이라 한 것은 대화상대방을 우롱하는 것으로써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li> <li>○ 핵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대화를 제기하면서도 국제공조체제 운운하며 대화상대방을 자극·모해하는 2중적 행동도 그만두어야 함.</li> <li>○ 남측이 우리의 특사교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통제공동위 회의와 같은 실무적 협상방법을 주장해 나온것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지연시키는 것이며, 조-미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기도에서 나온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 인간띠잇기대회 및 汎民族大會 並行推進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이 서울 범민족대회는 허용치 않으면서 북남 인간띠잇기 대회만 승인한 것은 남조선에서의 통일 애국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임.</li> <li>○ 우리는 오는 8. 15 서울에서 북과 남, 해외가 함께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북남인간띠잇기 대회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li> </ul>		
<p>1993. 8. 12</p> <p>「汎民聯」北側本部 의장 백인준</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汎民族大會 開催許容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의 범민족대회 불허방침은 민족화해와 단합에 배치되고 평화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그어떤 구실도 정당화될 수 없음.</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8. 13</p> <p>韓完相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차 汎民族大會 불허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인간띠잇기 대회는 민간차원의 자발적·평화적 통일운동의 하나로서 이 대회가 평화적 국민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임.</li> <li>○ 범민족대회는 순수 민간통일운동과 거리가 먼 정치행사로서 정부는 7. 24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대회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li> <li>○ 북한측은 낡은 냉전적 통일전선전략을 버리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에 성실하게 나와야 할 것임.</li> </ul>
<p>1993. 8. 14</p> <p>南北高位級會談 宋榮大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차 核統制共同委 再開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측이 남북핵통제공동위 회의를 재개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거부한 것은 핵문제해결 노력을 또다시 외면한 처사로서 실로 유감스러운 일임.</li> <li>○ 우리측은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위에서 핵문제와 함께 남북간 제반 현안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있을 것임.</li> <li>○ 우리측은 북한측이 올바른 대화자세로 돌아와서 남북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하는데 노력할것을 촉구하면서 8.4자 우리측 국무총리의 제의에 대한 성실한 회답을 계속 기다릴 것임.</li> </ul>
<p>1993. 8. 15</p> <p>金泳三 大統領 제48주년 光復節 慶祝辭</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 核武器開發 疑惑解消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를 당장 실천에 옮겨 민족복리와 공존공영을 실천해야 하며 북한측은 이산가족고통 해소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임.</li> <li>○ 북한 당국은 핵무기개발 의혹을 즉각 해소할 것과 대남적화 노선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對南電通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남측당국이 지금이라도 서울 범민족대회 개최를 허용하고 우리 대표단이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li> <li>○ 제4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은 8.13,10:00에 판문점으로 나갈 것임.</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9. 2</p> <p>南北高位級會談 수석대표 黃寅性 國務總理 對北 電通文</p>	<p>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한다면 우리는 핵 에너지를 비롯 자원의 공동개발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며, 남북간 경제협력은 물론 북한과 우리 우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도울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 節次協議 實務代表接觸 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북측이 IAEA와 핵안전 협정의 이행에 관한 회담을 재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램.</li> <li>○ 남북쌍방이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겠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만큼 더이상 회담형식 문제로 대화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음.</li> <li>○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고 그밖의 주요 현안문제들을 함께 다루기 위하여 쌍방 최고책임자가 임명하는 특사를 교환할</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9. 1</p> <p>南北高位級會談 北側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방식의 對話再開 재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은 동족을 반대하는 모든 적대적인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으며 더이상 대화와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을데 대한 명백한 태도표시가 있어야 할 것임.</li> <li>○ 남측이 어떤 형태로든 성의있는 대화자세를 표시한다면 구태여 級에 구애되지 않겠으며 쌍방의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임의의 級の 특사교환도 무방할 것임.</li> <li>○ 특사교환에서는 나라의 비핵화문제와 함께 긴장완화와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을 시급히 취할 데 대한 문제, 전민족 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문제, 최고위급 회담을 실현하는데 나서는 제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게 될 것임.</li> <li>○ 우리는 성과적인 북남대화를 위하여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통일현안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남측이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가 되기를 희망함.</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것을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교환에 필요한 실무절차를 협의하기 위하여 9. 7, 10:00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대표접촉을 갖기를 희망함.</li> </ul>
<p>1993. 9. 8</p> <p>南北高位級會談 수석대표 黃寅性 國務總理 對北 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 實務代表接觸 무조건 呼應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주요현안 문제들을 특사교환을 통해 협의 해결하자고 주장해 온 북측이 특사교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음.</li> <li>○ 북측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실무대표접촉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하며, 우리는 9. 10 판문점 통일각에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3명과 4명의 수행원을 내보낼 것임.</li> </ul>
<p>1993. 9. 9</p> <p>南北高位級會談 宋榮大 代辯人 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關聯 前提條件 撤回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간의 대화에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고 이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은 회담을 성 사시키려는 진지한 태도로 볼 수 없음.</li> <li>○ 북측이 제시한 2가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측 입장을 밝</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9. 6</p> <p>政務院總理 강성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관련 「原則問題」 9· 8까지 立場表示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진실로 우리와 대화를 하고 핵문제를 해결할 입장이라면 핵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을데 대한 태도부터 명백히 표시하였어야 함.</li> <li>○ 우리의 특사교환 제의에 응해 나온 점을 일단 긍정적인 새출발로 인정하면서 우리측이 요구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9. 8까지 반드시 표시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li> <li>○ 남측이 어떤 형태로든 납득할만한 태도를 표시함으로써 판문점 통일각에서 쌍방 최고위급의 특사를 교환하기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게 되기를 바람.</li> <li>○ 우리측에서는 이 접촉에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와 4명의 수행원을 내보낼 것임.</li> </ul>
<p>1993. 9. 9</p> <p>南北高位級會談 북측대변인記者會見</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관련 「原則問題」 9. 20까지 立場表示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지난 6일 정무원 총리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에 핵전쟁 연습을 중지하며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을데 대해 명백한 태도를 요구한 것은 특사교환의 목적과 관련된 매우 정당한 주장임.</li> <li>○ 남측은 8일부 국무총리의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의 원칙적 요구에 대</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9. 13</p> <p>金泳三 大統領 記者會見</p>	<p>힌 만큼 이제는 북측이 대답할 차례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바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를 하자는 것이며 북측이 하루속히 부당한 조건을 철회하고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先 핵문제해결, 後 남북정상회담 開催表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에는 이산가족 상봉등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통일은 민족전체가 행복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로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 앞서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li> </ul>
<p>1993. 9. 17</p> <p>南北高位級會談 宋榮大 代辯人 聲明</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관련 實務代表接觸 조속 呼應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 합의·구성한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조속히 가동시키고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대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실천에 옮겨 나가게 되기를 기대함.</li> <li>○ 북한은 어떠한 구실로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될 것이며, 특사교환에 따른 실무대표접촉에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 호응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9. 18</p> <p>南北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 聲明</p>	<p>한 대답을 또다시 회피함으로써 대화와 양립될 수 없는 판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남측이 9. 20까지 성의를 가지고 긍정적 대답을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9. 20경에 특사교환을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알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南側의 軍事挑發로 對話再開에 난관조성 비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은 지난 9. 16 황해남도 웅진군 앞바다에 간첩선을 침입시켜 우리측 해안선 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음.</li> <li>○ 조-미 회담이 진척되고 북남사이 최고위급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박두해 오고 있는 때에 군사도발로 대화재개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해 나선 남조선 당국자들의 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함.</li> <li>○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실로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외세의존적</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9. 21</p> <p>金泳三 大統領 國政 演說 (제165회 定期 國會)</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疑惑 解消로 南北關係 進展 促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화해와 협력을 거쳐 남북연합 그리고 1민족 1국가로 가는 3단계 통일방안과 민주적 절차,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3가지 통일정책의 기초를 설정해 놓고 있음.</li> <li>○ 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된다면 우리는 남북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북한은 하루속히 민족공멸을 가져올 핵의혹을 씻고 공존공영과 민족복리의 마당으로 나올 것을 촉구함.</li> </ul>
<p>1993. 9. 22</p> <p>韓完相 副總理겸 統一院長官 演說 (제12회 이산가 족의 날)</p>	<p style="text-align: center;">南北離散家族 제3국 相逢 推進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핵문제와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통일도 이루어지기 어려움.</li> <li>○ 남북은 하루빨리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실천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판문점에서, 그것도 안된다면 제3국에서라도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li> <li>○ 이산가족이 제3국을 통해 서신거래를 하고 가족상봉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북한이 적극 호응해 오기를 촉구함.</li> </ul>
<p>1993. 10. 2</p> <p>外務部 代辭人 論評</p>	<p style="text-align: center;">IAEA 總會의 對北決議案 支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총회의 핵사찰 수용촉구 대북결의안 채택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것임.</li> <li>○ 북한은 하루빨리 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평화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핵개발의혹을 해소할 것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9. 21</p> <p>南北高位級會談 北側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관련 「原則問題」 9. 30까지 立場表示 要求</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측이 진정으로 핵문제를 포함 북남사이 중대한 현안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제기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대화의 상대임을 보여주어야 함.</li> <li>○ 우리의 특사교환 제의에 성의있게 대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면서 우리측이 제기한 두가지 원칙적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명백한 태도를 표명할 수 있도록 9. 30까지 시간적 여유를 한번더 주려고 함.</li> <li>○ 우리측은 남측이 우리의 요구에 성의를 보이는데 따라 오는 10. 5에 특사교환을 위한 판문점 실무대표접촉에 나갈 것임.</li> </ul>
<p>1993. 9. 22</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NPT 脫退留保 撤回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사찰수용과 북남대화 재개가 제3단계 조-미 회담의 전제조건이 된다는니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조선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의 여론이 나돌고 있음.</li> <li>○ 미국이 계속 IAEA와의 협상과 북남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회담에 인위적 장애를 조성하려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취해온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li> </ul>
<p>1993. 10. 2</p> <p>政務院總理 강성 산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협의의 實務代表接觸 10. 5 開催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동안 쌍방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북과 남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최고위급의 특사교환 형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하게 되었음.</li> <li>○ 우리는 특사교환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그리고 남측이 우리가 제기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10. 5, 10:00 판문점 통일각에 3명의 실무대표를 내보낼</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0. 4</p> <p>南北高位級會談 수석대표 黃寅性 國務總理 對北 電通文</p>	<p>촉구함.</p> <p style="text-align: center;">特使交換관련 實務代表接觸 開催受諾</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실무대표접촉에서 특사교환과 관련한 절차문제들을 순조롭게 타결하고 조속 실현시킴으로써 핵문제의 해결과 중단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 등 남북간의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li> <li>○ 우리측은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대표접촉을 갖기 위해 10. 5 10:00 판문점 통일각에 3명의 대표와 4명의 수행원을 내보낼 것임.</li> <li>○ 우리측의 실무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대표 : 宋榮大(통일원 차관)</li> <li>대표 : 金一武(총리실 심의관)</li> <li>대표 : 張在龍(외무부 국장)</li> </ul> </li> </ul>
<p>1993. 10. 5</p> <p>特使交換 關聯 제1차 實務代表</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이 특사교환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핵문제를 협의 해결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만큼 실무절차를 순조롭게 타결하여 특사</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0. 3</p> <p>南北軍事共同委員會 북측위원장 김광진 談話</p>	<p>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에서는 실무대표접촉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박영수, 同서기국 부장들인 최승철, 최성익과 함께 4명의 수원이 나가게 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北韓의 生化學武器開發 관련보도 비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측이 핵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않을데 대한 요구를 내놓고 있는 때에 생화학무기 개발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우리공화국을 비방·중상하고 있음.</li> <li>○ 생화학무기개발이니 생화학무기 사용가능성이니 하는 남조선 통치배들의 모략소동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대화분위기를 흐리게 하며 나라의 평화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위협한 반공대결 정책으로써 이를 단호히 규탄함.</li> </ul>
<p>1993. 10. 4</p> <p>外交部 代辭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b>IAEA 總會의 「對北決議案」 採擇非難</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의 총회에서 우리에게 대한 결의대책 높음을 벌인것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국제적 압력을 노린 불순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이라고 간주하면서 그를 단호히 배격함.</li> <li>○ 우리 문제에 대해 결의가 채택된 것은 국제공동체가 요구하는 외피를 만들어내어 핵문제에 대한 저들의 직접적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기구와 서기국내 일부 서방세력들의 각본에 따라 꾸며진 것임.</li> <li>○ IAEA의 일부계층들은 자기의 부당한 행위로 하여 우리와의 협상을 파탄시키고 핵문제 해결의 길을 가로 막은데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li> </ul>
<p>1993. 10. 5</p> <p>特使交換 관련 제1차 實務代表</p>	<p style="text-align: center;"><b>主要 提議·主張 內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방 실무대표들은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절차들을 협의하고 이와 함께 특사교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문제</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接觸 (판문점 통일각)</p>	<p>교환이 조속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대표의 임무는 특사교환과 관련된 실무절차를 협의하는 것이며, 북측이 제기하는 2가지 문제는 특사교환시 협의될 수 있는 사항임.</li> <li>○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관련 「남북사이에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li> </ul> <p>&lt;특사의 임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당국자의 친서전달 및 제기된 문제 설명</li> <li>· 특사접촉을 통해 쌍방정상간의 의견일치점 확인 및 차이점 협의</li> </ul> <p>&lt;특사의 교환방법&gt;</p> <p>북측특사가 먼저 우리측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우리측이 북측 방문</p> <p>&lt;특사의 첫교환 시기 및 체류일정&gt;</p> <p>첫방문은 빠를수록 좋으며 체류기간은 4박 5일 정도</p>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接觸 (板門店 통일각)</p>	<p>들도 토의 해결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교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해서는 우선 「핵전쟁 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에 대한 명백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함.</li> <li>○ 특사의 級은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고위급으로 하며 비핵화 공동선언·북남합의서 이행문제, 전민족대단결 도모문제, 정상회담 실현문제 등을 협의키로 함.</li> <li>○ 특사의 교환방식, 시기, 체류 일정, 판문점 통과절차 등은 관례에 따라 정하도록 함.</li> </ul>
<p>1993. 10. 5</p> <p>外交部 副部長 송원호 제48차 유엔총회 演說 (뉴욕)</p>	<p style="text-align: center;">朝鮮半島의 核問題는 美·北韓 해결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문제이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함.</li> <li>○ 남조선당국자들은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고 국제공조체제를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IAEA 총회의 우리에게 대한 결의를 배격함.</li> </ul>
<p>1993. 10. 11</p> <p>原子力工業部長 최학근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IAEA와의 核問題 協商 중지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EA 제37차 정기총회에 전달된 9. 27부 유엔사무총장의 서한에는 국제공동체가 자기의 결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느니, 유엔안보리의 적극 개입이니 하면서 우리를 부당하게 끌고 들었음.</li> <li>○ 同 서한은 우리나라 국호를 「북조선」이라고 표기했는가 하면 발신인의 동의도 수표도 없는 날조된 서한임이 밝혀졌음.</li> <li>○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IAEA의 불공정성은 날을 따라 확대되</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0. 15</p> <p>特使交換 관련 제2차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이른바 핵전쟁연습을 실시한 적도 없고 실시하지도 않을 것이며, 북측이 회담에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경우 T/S훈련 문제는 신속적으로 검토할 것임.</li> <li>○ 국제공조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비핵화공동선언의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유엔과 IAEA의 회원국으로서 당연한 의무이행이며 이는 「평화해결 촉진체제」이며 「대화를 통한 해결체제」임.</li> <li>○ 북측이 특사의 임무와 관련 「비핵화공동선언 이행문제」등 5가지로 규정하려는 것은 쌍방 최고당국자의 대화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부적절함.</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0. 14</p> <p>北韓赤十字會 위 원장대리 이성호 對南電通文</p>	<p style="text-align: center;">未轉向 出所 左翼囚 김인서 · 함세환 送還要求</p> <p>고 있으며 서한 날조극까지 꾸며낸 것으로 하여 우리와 더이상 상 종할 자격도 체면도 없게 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반 사실은 조·미 회담을 통해서만 우리의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국제적십자사는 조선전쟁시기 전쟁포로들인 김인서 · 함세환으 로부터 복송요청을 제기 받았다는 편지를 우리 적십자회에 보내왔 음.</li> <li>○ 이들의 송환문제는 적십자일꾼들이 나서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 해 주어야 할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인정함.</li> <li>○ 나는 귀 적십자가가 김인서 · 함세환 노인들이 공화국 북반부로 조 속히 돌아오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희망함.</li> </ul>
<p>1993. 10. 15</p> <p>特使交換 관련 제2차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평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교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관건적 문제로서 「핵전쟁 연습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에 대한 분명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하며 이의 해결 없이는 회담이 순조로울 수 없음.</li> <li>○ 특사의 임무는 「비핵화공동선언 이행문제」등 5가지로 하되, 남측 안대로 할 경우 특사는 최고위급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이나 하게될 뿐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제반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갈수 없음.</li> <li>○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는 전적으로 미·북한간 접촉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북남 쌍방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할 것임.</li> </ul>
<p>1993. 10. 16</p> <p>外交部 代辯人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北韓核問題 國際的 制裁時 自衛措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당국자들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 제재를 운 운하는가 하면 남조선 당국도 이에 합세하여 나서고 있음.</li> <li>○ 이는 일본측이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저들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li> </ul>

韓 國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0. 25</p> <p>特使交換 관련 제3차 實務代表 接觸 (관문점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측은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북측이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함.</li> <li>○ 북측이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안)을 내놓고서도 부당한 요구조건을 되풀이 하는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특사교환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자아내고 있음.</li> <li>○ 북측은 특사교환을 하루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부당한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절차문제 토의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ul>
<p>1993. 10. 26</p> <p>韓完相 副總理겸 統一院長官 演說</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 · 평양 常駐代表部 設置提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 북한 관계개선 이전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서울 · 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등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함.</li> <li>○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통해 11월중에는 특사교환이 이루어져 핵문제 등이 타결되기를 기대함.</li> <li>○ 북한이 남북대화에 책임있고 성실하게 나올경우 '94 T/S훈련 중지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li> </ul>

北 韓	
出 處	提 議 內 容
<p>1993. 10. 20</p> <p>平壤市 學生委員 長 황호영 談話</p>	<p style="text-align: center;">京平 大學生足球大會 관련 實務接觸 수정제의</p> <p>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약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국제적 제재조치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해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조선의 「서총련」은 10. 12 평양-서울 대학생축구대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0. 17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 하였음.</li> <li>○ 우리는 동 실무접촉을 위해 10.25, 13:00 판문점에 대표단을 내보낼 것이며 남조선당국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길 바람.</li> </ul>
<p>1993. 10. 25</p> <p>特使交換 관련 제3차 實務代表 接觸 (板門店 통일각)</p>	<p style="text-align: center;">主要 提議 · 主張 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교환 절차문제를 규정한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의 級 : 최고위급이 임명하는 권위있고 책임있는 고위급</li> <li>- 특사의 임무 : 최고위급의 친서전달, 설명 및 위임에 의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문제」등 5개항 협의</li> <li>- 특사의 교환방식 : 남측특사의 先 방북후 윤번제로 실시</li> </ul> </li> <li>○ 북남간 특사교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측의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등에 대한 명백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함.</li> <li>○ 2가지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낙착짓고 실무절차 협의를 거쳐 11월중에는 특사교환을 실현시켜야 할 것임.</li> </ul>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比較  
第 3 卷  
〈1991. 4~1993. 10〉

---

1993年 11月 30日 發行

發行處：統一院 南北會談事務局

---

〈非 賣 品〉

